

#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25. 9.



#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25. 9.



#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이 기 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2025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이 영



# 요 약

## 1. 심층평가 개요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은 중소기업의 소재지, 기업 규모, 업종에 따라 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제도
  - 동 제도는 1992년 당시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은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최초 도입된 이후 감면대상 업종이 확대되면서 적용기한이 지속적으로 연장
  
- 본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약 2조 5,000억원(2023 신고연도 실적치 기준)이며, 2025년 말 적용기한이 도래할 예정으로 조세지출 의무심층평가 대상에 포함
  
- 이에 따라 본 심층평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효과적 운영방안을 제시하며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도 개요 및 현황) 제Ⅱ장에서는 동 제도 및 유사 제도의 개요, 변천 및 현황을 제시
  - (해외 주요국 사례) 제Ⅲ장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 대상 주요 조세지원 제도 및 세율 체계에 대해 논의
  - (타당성 분석) 제Ⅳ장에서는 동 제도 관련 정부지원의 필요성, 지원방식 및 대상의 적절성, 제도의 유사·중복성 등을 평가
  - (효과성 분석 및 고용영향평가) 제Ⅴ장에서는 동 제도의 정책목표 달성도 및 고용에 미친 영향을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
  - (형평성 분석) 제Ⅵ장에서는 본 제도에 의한 과세 형평성을 수평적 형평성을 중심으로 검토
  - (제도 개선 방안) 제Ⅶ장에서는 상기 분석내용을 토대로 본 제도에 대한 종합 평가를 수행하고, 효과적인 제도 운용방안에 대해 논의

## 2. 제도 개요 및 현황

### 가. 제도 개요 및 연혁

- (개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성장촉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업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소재지, 기업 규모, 업종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제도
  - (지원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48개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포괄
    -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규모, 독립성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의미
    - 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규모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의미
  - (감면 내용) 세액감면 규모는 감면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규모·소재지의 수도권 여부·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특정 요건 충족 시에는 추가감면 혜택을 적용
  - (중복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동일한 과세연도 또는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중복 적용을 배제
    - 동일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 혜택과 중복 적용이 배제되지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과는 중복 적용이 가능
    - 동일 사업장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주요 세액감면에 대해서 중복 적용을 허용하지 않음
- (연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1992년 ‘임시특별세액감면’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 감면 업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제조업, 농림어업, 광업, 축산업 등 총 48개 업종을 적용 대상으로 지원
  - 감면 규모는 도입 당시에는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감면율을 적용하였

지만, 이후에는 중소기업 규모, 소재지의 수도권 여부, 업종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

## 나. 제도 활용 현황

- 본 소절에서는 「조세지출예산서」와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조세지출 실적 및 제도 활용 현황 등을 제시
- 「2025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지출 규모는 2조 5,336억원으로 전체 조세지출 규모 69조 7,664억원 중 약 3.6%, 중소기업 조세지출 규모 3조 3,413억원 중 75.8%를 차지
  - 소득세와 법인세 각각의 조세지출 규모는 1조 3,738억원과 1조 1,159억원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한 실적이 유사한 수준
  - 또한 2011년 이후 동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
- 「국세통계연보」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신고 사업자 수는 대체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당 평균 수혜 규모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산고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수 모두 지속 증가
    -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2021년,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0년에 신고 사업자 수가 소폭 감소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추정
  - 기업당 평균 수혜 규모는 법인의 경우 500만원 내외, 개인은 100만원 초반 수준을 유지
    - 절대적 규모는 크지 않지만 본 제도 수혜자로 영세한 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제도에 의해 기업의 조세부담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 다음으로 중소기업이 수혜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제도의 활용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봄
- (법인사업자) 먼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기업 수 측면에서 세

액공제(42.94%)보다는 세액감면(57.06%)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본 제도는 중소기업이 가장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조세지원 중 하나인 것으로 확인

- 2023년 신고연도 기준 조세지출 제도 활용 중소기업 중 본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의 비중은 52.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순으로 나타남
- 수혜금액 측면에서는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6.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5.2%) 다음으로 본 제도의 활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
- 특히 본 제도와 함께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모두 본 제도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에 주목할 필요

□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영위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원 측면에서 세액감면(15.76%)보다는 세액공제(84.24%)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그중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3 신고연도 기준 조세지출 제도 활용 개인사업자 중 본 제도를 활용한 사업자의 비중은 11.60%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다음으로 높은 활용도를 보임
- 수혜금액 측면에서는 본 제도(28.08%),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44%),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12.20%) 순으로 수혜 비중이 높았음

□ 마지막으로 본 제도와 함께 중소기업만을 수혜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세지원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와 본 제도의 활용 현황을 비교

- 『국세통계연보』상 가장 최신 자료인 2023 신고연도를 기준으로 비교를 수행
  -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는 2021년 신고분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와 통합되었으므로 해석에 유의가 필요
- 기업 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본 제도의 활용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순

- 이에 따라 총 조세지출 규모 역시 본 제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순서로 큰 것으로 확인
  - 반면 기업당 평균 수혜 규모는 본 제도가 가장 작은 것으로 확인
- 종합하면 중소기업은 여러 조세지원제도 중 본 제도를 가장 활발히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본 제도가 기타 조세지원의 활용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
- 본 제도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적용 요건으로 인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가 가장 손쉽게 활용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음
  - 다만 기업당 평균 수혜금액은 R&D, 투자, 고용, 창업 등 기타 조세지원에 비해 작은 것으로 확인
  - 또한 본 제도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제도의 경우 대부분 본 제도와 중복 적용이 허용되는 점을 확인했으며, 이는 본 제도가 중복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 제도의 활용도를 저해할 수 있음을 함의

### 3. 해외 주요국 사례

#### 가. 중소기업 기준

-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주요 국가는 정부지원, 세제 감면, 조달참여 등의 정책 대상 식별을 위해 중소기업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 중국은 중소기업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의 경우 EU 위원회 규정을 준용
  - 조사 대상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종업원 수, 총자산 및 매출액 등의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구분
-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판정 시 활용되는 규모 기준으로 자산총액 및 매출액을 활용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종업원 수 기준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 미국, EU, 영국, 일본, 중국에서 매출액, 수입 등의 지표와 함께 종업원 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또한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은 업종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며, 미국을 제외한 조사 대상국에서 중소기업 기준 내에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각 국가의 규모 기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면 대체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범위가 주요국에 비해 넓게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종업원 수 기준을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산 및 매출액 등 기준을 국가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sup>1)</sup>
    - 우리나라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하, 매출액 업종별로 400억~1,500억원 이하 이면 중소기업에 해당
    - EU 중소기업 기준 권고를 준용하는 프랑스와 독일은 매출액이 약 794억원(5,000만유로) 이하 또는 대차대조표 합계가 약 683억원(4,300만유로) 이하이면서 직원 수가 250명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
      - 영국도 EU 기준에 근거한 중소기업 기준을 준용
    - 일본의 중소기업 기준은 업종에 따라 상이하나 자본금이 약 2,825억원(3억엔) 이하이거나 직원 수 300명 이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
    - 중국도 업종에 따라 상이하나 매출액 약 3,850억원 또는 총자산 약 1,540억원 미만, 근로자수 2,000명 미만일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

#### 나. 조세지원 제도 및 법인세율 체계

- 해외 주요국 중 일부는 특정 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가별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호주는 총매출 규모가 5천만달러 미만인 기업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소규모 기업에 대해 25%의 경감세율 적용
  - 벨기에에는 ① 연평균 직원 수가 50명 미만 ②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연간 순 매출액 1,125만유로 미만 ③ 총자산 600만유로 미만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인화된 세율 적용
  - 캐나다는 비상장기업으로서 캐나다 거주자가 주요 주주인 CCPC에 대해 중소

1) 환율은 2025년 6월 23일 기준 평균 환율(매매기준율) 적용(달러 1,381.54원, 파운드 1,854.58원, 유로 1,588.33원, 엔화 941.72원, 위안 192.53원)

기업 공제로서 9%의 경감세율 적용

- 프랑스는 매출액 1,000만유로 미만 소기업의 과세소득 42,500유로까지 15%의 경감세율 적용
- 일본은 자본금 1억엔 이하 소기업의 과세소득 800만엔 이하에 대해 15%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자본금 1억엔 이하 소기업의 직전 3년 연평균 소득이 15억엔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소득 800만엔 이하에 대해 19%의 경감세율을 적용
- 스페인은 순매출액 1000만유로 미만의 소기업, 100만유로 미만의 초소기업, 신설법인으로 구분해 경감된 법인세율 적용
- 포르투갈은 EU 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세소득의 5만유로까지는 16%,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경감된 법인세율 적용

□ 이러한 경감세율 적용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유사한 측면이 존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도 존재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업종을 열거하고 있긴 하지만, 폭넓은 중소기업에 대해 업종, 소재지, 기업 규모(소기업, 중기업 해당 여부) 등에 따라 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
- 반면 해외 주요국의 경감세율 제도는 업종, 소재지 등 구분 없이 특정 기업 규모 요건을 충족한 모든 기업에 대해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

□ 또한 주요국의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규모 기준을 원화로 환산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준과 비교하면, 대체로 주요국 경감세율 적용 범위가 좁은 것을 확인 가능

- 우리나라에서는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하이면서 업종별로 400억~1,500억원 이하의 매출액 상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으로 구분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수혜 대상에 포함 가능
- 반면 주요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범위의 기업에 대해 경감세율을 적용
  - 매출액 기준을 살펴보면, 호주 약 455억원 이하, 벨기에 174억원 이하, 프랑스·스페인 155억원 이하, 포르투갈 773억원 이하로 확인
  - 일본의 경우 자본금 약 962억원, 연평균 소득 1,443억원으로 경감세율 적용 대상 매출액 기준을 비교적 넓게 설정하고 있으나, 자산 규모 기준은 우리나라 수준을 큰 폭으로 하회

## 4. 타당성 평가

- 본 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타당성을 다음의 측면에서 평가
  - 정부 개입의 필요성
  - 지원 방식의 적절성
  - 지원 대상의 적절성
  - 타 제도와 유사·중복성
  
- 본 제도의 타당성 분석은 정부 개입의 필요성, 지원 방식 및 대상의 적절성, 기타 정부 지원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기준으로 수행
  
- (정부 개입 필요성)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은 부분적으로 인정된다고 평가
  - 중소기업은 시장실패에 더 취약할 수 있으며,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실질 납세협력비용이 대체로 큰 경향이 있으므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 (지원 방식의 적절성) 정부 개입 필요성에 근거하여 평가할 때, 본 제도의 지원 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시장실패: 긍정적 외부효과의 교정) 먼저 긍정적 외부효과를 생성하는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근거에 비추어 볼 때 본 제도의 지원 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정부의 개입 근거가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기업 행태를 사회적 최적 수준까지 제고하기 위함이라면 해당 행태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음
  - 본 제도는 긍정적 외부효과 관련 행태와 연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련 조세지원의 활용도 및 효과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측면도 존재
  
- (시장실패: 금융시장 정보 비대칭성의 교정) 다음으로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근거와 관련해서도 본 제도의 설계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금융시장 정보 불완전성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우 적자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업종과 지역 요건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본 제도의 설계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
- 금융시장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바탕으로 한 보증, 대출 등 금융지원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

□ (납세협력비용 완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감면하는 본 제도의 적절성이 일부 성립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조세행정 차원의 지원이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

- 납세협력을 위한 실질 비용이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큰 경향이 있으므로,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감면하는 본 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하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직접적으로 완화하는 기타 조치가 더욱 적절할 수 있음

□ (지원 대상의 적절성) 지원 대상의 적절성은 지원 대상기업의 규모 및 업종의 측면에서 논의하였으며 대체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중기업 지원의 적절성) 앞서 살펴본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논거, 본 제도의 지원 방식, 상대적으로 넓게 설정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정부 개입의 주요 논거인 금융시장의 불완전성 및 납세협력비용 문제의 경우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다소 완화된다는 특징이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주요국에 비해 중소기업 범위가 넓게 설정되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제도의 지원 대상인 중소기업 중 ‘중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판단

□ (지원 대상 업종의 적절성) 현행 업종 규정 방식은 구분 체계가 상이하나, 이는 정부 정책 의지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

- 48개 업종이 일관된 수준으로 구분되지 않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및 세분류, 세세분류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각 업종 분류 내에서도 별도로 제외 또는 포함되는 업종이 존재하는 등 제도의 복잡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다만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일부 사행성 업종 또는 고소득 전문직 업종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친환경 관련 업종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음
- (유사·중복성) 본 제도와 성격이 유사한 조세지출 및 예산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일부 조세지원과는 중복 적용을 허용
- 또한 본 제도는 일부 조세지원 제도를 제외하면 중복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업의 조세지원 중복수혜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오히려 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본 제도와 어떤 제도의 중복 적용을 허용할 것인지가 중요할 수 있음
- 현행 제도상 본 제도와 중복 적용이 허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조세지원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이 있음
  - 반면 본 제도와 중복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 제도의 경우 제도의 효과성과 활용도가 저해되는 측면 존재
- 본 제도와 중복수혜를 허용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하는 한편, 중복수혜를 허용하지 않으면 긍정적 기업 행태와 연계된 제도들의 효과성이 저해되는 측면

## 5. 효과성 분석 및 고용영향평가

- 본 장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가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재무성과, 투자, 생산성, 그리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본 조세특례 제도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으며, 산업별·지역별·규모별·시기별 이질성 분석을 수행함

-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분석 자료의 한계로 생산성 및 고용영향평가 분석과 규모별 이질성 분석이 생략됨
- 분석에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2016~2023년 법인세 신고자료와 2015~2022년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함
  - 해당 자료는 개별 기업정보(매출액, 자산, 업종 등)와 동 조세특례제도 및 기타 조세지원제도(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수혜 현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법인세 신고자료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자료와 결합하여 각 기업별 근로자 수 및 평균 소득을 반영, 고용영향평가를 함께 수행함
- 기초통계 분석 결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에서 본 조세특례 제도 수혜 기업과 비수혜기업 간 이질성이 확인됨
  - 법인사업자의 경우 분석 기간 본 조세특례 평균 수혜 횟수는 약 4.3회였으며, 수혜기업이 수입금액, 산출세액, 영업손익 등에서 더 높은 수치를 보임. 그러나 최근 3년(2020~2022년) 산출세액이 발생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보면, 비수혜기업이 오히려 재무성과나 투자, 고용 측면에서 우위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
  - 개인사업자의 경우 분석 기간 동안 본 조세특례 평균 수혜 횟수는 약 1.1회이며, 수혜 시 수입금액, 산출세액, 영업손익 등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비수혜 시 자산총계는 2.5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남. 최근 3년간 산출세액이 있는 기업만 보면 수혜기업이 수입금액과 산출세액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임
  - 즉 본 조세특례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과 산출세액이 필요하므로, 단순 비교 시 수혜기업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경향을 보임. 그러나 산출세액이 발생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보면 법인사업자는 규모가 작은 기업이, 개인사업자는 규모가 큰 기업이 제도를 더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효과 추정에는 2원 패널고정효과 모형과 누적 이중차분법(Stacked DID)을 활용함
  - 하지만 본 실증분석에서는 주요 설명변수인 조세특례제도의 수혜 여부는 외생적(exogenous)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내생성(endogeneity) 문제로 인한 편의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본 조세특례제도는 산출세액이 0보다 큰 기업들만 수혜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사이에 구조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또한 본 조세특례를 활용하려는 기업 또한 비수혜기업과 다른 행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를 완화하기 위해 표본을 산출세액이 0 초과이고 분석 기간 동안 본 조세특례제도 수혜 경험이 1회 이상 있는 기업으로 제한하고, 기업별 수혜 시기 차이를 활용해 효과를 식별함
  - 모형 추정 시 기업, 산업×연도, 지역×연도 고정효과를 통제하여 기업, 산업, 지역 내 이질성을 통제함
  - 추가적으로 수혜 시기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패널고정효과 모형 추정 시 수혜를 이미 받은 기업을 비교군으로 사용하는 ‘금지된 비교(forbidden comparison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Stacked DID 모형을 활용하고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간의 사전 공통 추세를 검증함
- (법인사업자) 본 제도는 중소기업의 재무성과, 투자 및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고용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수입금액·영업손익률 등 재무성과와 자산총계·연구개발비·노동생산성 등 투자·생산성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지 않음
  - 근로자 수 및 평균 임금과 같은 고용 관련 지표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음
  - 산업별, 지역별, 기업 규모별, 시기별 이질성 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였으며, 코로나19 시기 이전과 같은 일부 세부 표본에서 평균 임금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보이며 이질성을 갖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세부 표본 및 항목에서 일관된 긍정적인 효과는 나타나진 않음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도 수입금액, 영업손익률, 자산총계에 일관된 긍정적인 효과는 확인되지 않음
- 일부 패널고정효과 추정 결과에서 수입금액에 증가가 나타났으나, 이는 Stacked DID 추정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결과는 아니며 대부분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사전 추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산업별, 지역별, 시기별 이질성 분석을 추가로 수행한 결과, 본 조세특례 수혜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세부 표본에서 역시 나타나지 않음
- 다만 본 실증분석은 내생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해당 조세특례 제도의 수혜를 받은 기업들의 수혜 시기 차이를 이용하여 효과를 식별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혜 시기의 차이 역시 기업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생산성과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
  - 또한 표본을 산출세액이 0 초과이고 본 조세특례제도 수혜 경험이 있는 기업으로 한정하면서 소규모 기업의 효과가 배제될 수 있음
  - 따라서 본 실증분석을 통해 해당 제도가 기업의 재무성과, 투자 및 생산성, 고용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그 정확한 효과를 정밀하게 추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6. 형평성 평가

- 본 장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가 조세의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특히 수평적 형평성에 집중하여 평가
  - 본 제도는 기본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제도이며, 기업은 개인과 달리 그 자체로 소득재분배의 정책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직적 형평성이 아닌 수평적 형평성을 중심으로 검토
  -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은 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납세자가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 구체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제도의 형평성 효과를 평가
  - 먼저 제도 적용에 따른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실효세율을 수입금액, 업종, 지역 등에 따라 그룹화하여 비교
  - 다음으로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활용하여 제도 적용에 따른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을 직접적으로 평가

- 분석 자료는 제V장 효과성 분석 및 고용영향평가에서와 같이 국세청 미시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현재와 유사한 제도하에서 제도의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해 표본을 최근 3년으로 한정
  -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각각에 대해 별도의 분석을 수행
  
- 분석 결과 본 제도가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효세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본 제도가 수혜기업의 실효세율을 과도하게 낮춤으로써 비수혜기업과의 실효세율 격차를 확대하는 것을 확인
    - 특히 이러한 결과는 법인사업자에서 명확하게 나타남
    - 개인사업자 역시 대체로 실효세율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을 확인
  - 변동계수 분석을 통해 본 제도의 적용 후 수평적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에서 매우 뚜렷하게 관측

## 7. 결론 및 제도 개선 방안

-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제도의 일몰 연장 필요성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타당성, 효과성, 형평성 분석에서의 평가 결과가 긍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해외 주요국에서도 유사한 사례는 파악되지 않음
  
- 다만 본 제도는 현 시점 중소기업이 가장 활발히 활용하는 조세지원 제도로서 이들 기업의 조세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있다는 점은 고려될 필요
  - 기타 조세지원 확대와 연계하지 않고 본 제도 단독으로 폐지를 결정하면, 상당수 중소기업의 실질 조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
  - 단기적으로는 본 제도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되, 제도의 일부 개선을 검토
    - 평가 결과는 대체로 부정적이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타 보완 조치 없이 본 제도의 적용 기한을 단독으로 종료할 경우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에 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기업 행태와 본 제도의 혜택을 연계하거나 정책 대상자를 소기업으로 한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
  - 본 제도 개편 시 중소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이므로 제도의 근본적 개편 또는 폐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특히 본 제도의 성격을 고려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 기타 조세지원 및 법인세 세율 체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할 수 있음

### 가. 단기적 개선 방안

- (단기적 개편안) 본 제도의 감면 한도 설정 방식, 추가 감면 적용 대상 등의 조정을 검토
  - 고용인원과 본 제도의 한도를 연계하는 현행 방식은 실효성이 낮고 제도의 복잡성을 가중하므로 단일 감면한도 적용을 고려
    - 현행 감면한도는 1억원을 기본으로 하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감소인원 1인당 500만원을 감면한도에서 차감
  - 또한 10년 이상 동일 업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감면 적용 폐지를 검토
    - 해당 조항은 특정 업종을 영위하면서 중소기업 지위를 오래 유지한 기업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성장 및 자유로운 업종 전환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

### 나. 중장기적 개선 방안

- (중장기적 개편안 1) 중소기업의 R&D, 투자, 고용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본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기타 조세지원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제도를 개편
  - (개편안 예시 1) 본 제도를 ‘기본 감면 + 추가 감면 체계’로 개편하고 추가 감면은 R&D, 투자, 고용 실적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
    - 본 제도의 기존 감면율을 축소하되 직전 3년 대비 R&D, 투자, 고용 등 실적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감면을 적용
  - (개편안 예시 2) 또는 기존 수혜기업이 본 제도 대신 투자, 고용 관련 조세지

- 원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제도에서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 다만 이를 위해서는 본 제도뿐 아니라 투자 및 고용 관련 제도의 개편도 필요

□ (중장기적 개편안 2) 특정 기업 행태와 연계되지 않은 조세 혜택이 소기업에 한정되도록 조세지원 체계를 개편

- 중소기업 중 중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미약하며, 해외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범위가 넓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
  - 정부의 지원 근거인 시장실패와 납세협력 부담은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더 명확하므로 중기업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조세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
    - 중기업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조세지원보다는 R&D, 투자, 고용 등과 연계된 조세지원 제도를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적절
- 소기업에 대해서는 1) 본 제도를 유지하거나 2) 본 제도를 전면 폐지하되 법인세 경감세율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 가능
  - 본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은 조세지출 규모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며,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은 세수입 손실은 클 수 있으나 제도의 단순성 및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

# 목 차

I. 서론 .....	23
II. 제도 개요 및 현황 .....	27
1. 제도 개요 및 연혁 .....	29
가. 제도 개요 .....	29
나. 제도 연혁 .....	37
2. 제도 활용 현황 .....	42
III. 해외 주요국 사례 .....	57
1. 한국 및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 기준 .....	59
가. 한국 .....	59
나. 미국 .....	64
다. EU .....	68
라. 영국 .....	70
마. 프랑스 .....	72
바. 독일 .....	74
사. 일본 .....	74
아. 중국 .....	75
자. 요약 및 시사점 .....	77
2. 해외 주요국의 조세지원 제도 및 법인세율 체계 .....	80
가. 해외 주요국의 조세지원 제도 .....	80
나. 해외 주요국의 법인세율 체계 .....	106
IV. 타당성 분석 .....	119
1. 정부 개입의 필요성 .....	121

2. 지원 방식의 적절성 .....	127
3. 지원 대상의 적절성 .....	129
4. 타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	133
5. 타당성 분석 결과 요약 .....	137
<b>V. 효과성 분석 및 고용영향평가 .....</b>	<b>141</b>
1. 분석 자료 및 기초통계 분석 .....	143
가. 분석 자료 .....	143
나. 수혜·비수혜기업 기초통계 .....	145
2. 효과성 분석 및 고용영향평가 .....	155
가. 분석 방법 .....	155
나. 추정 결과 .....	159
3. 효과성 분석 및 고용영향평가 결과 요약 .....	188
<b>VI. 형평성 분석 .....</b>	<b>191</b>
1. 실효세율 변화 .....	193
가. 분석 개요 .....	193
나. 분석 결과 .....	194
2. 실효세율 변동계수 변화 .....	202
가. 분석 개요 .....	202
나. 분석 결과 .....	202
3. 형평성 분석 결과 요약 .....	204
<b>VII. 결론 및 제도 개선 방안 .....</b>	<b>205</b>
1. 종합 평가 .....	207
2. 향후 제도 개선 및 운영 방안 .....	209
가. 단기적 개선 방안 .....	209
나. 중장기적 개선 방안 .....	210
<b>참고문헌 .....</b>	<b>212</b>

## 표 목 차

<표 II-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및 소기업 주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	30
<표 II-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	32
<표 II-3>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 현황 .....	34
<표 II-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세액감면율 .....	35
<표 II-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복 적용 배제 적용 제도 .....	36
<표 II-6> 업종별 소기업 매출액 기준(2016년 개정) .....	38
<표 II-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감면 업종 변천 .....	39
<표 II-8>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 연혁 .....	40
<표 II-9>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세지출 규모 추이 .....	43
<표 II-10> 법인세 및 소득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고 현황 .....	44
<표 II-11> 세액감면 및 공제별 수혜기업 수와 수혜금액 비중: 법인세 .....	45
<표 II-12> 세액감면 및 공제별 수혜자 수와 수혜금액 비중: 종합소득세 .....	51
<표 II-13> 2014~2023년 주요 중소기업 대상 조세지원제도 활용기업 수 및 세액 감면·공제액 추이 .....	54
<표 II-14> 2014~2023년 주요 중소기업 대상 조세지원제도의 신고법인 및 신고사업자당 수혜금액 추이 .....	55
<표 III-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주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	60
<표 III-2> 「중소기업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 비교 .....	64
<표 III-3> 미국 중소기업 계열관계 적용에 대한 일반 원칙 및 내용 .....	65
<표 III-4> 미국 NAICS 산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	67
<표 III-5> EU 권고 중소기업 규모 기준 .....	70
<표 III-6> 「영국 회사법 2006」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기준 .....	72
<표 III-7> EU 권고에 따른 프랑스 중소기업 규모 기준 .....	73
<표 III-8> 독일 중소기업 규모 기준 .....	74
<표 III-9> 일본의 중소기업 및 소규모기업 범위 구분 .....	75

<표 III-10> 중국의 기업 집단 분류 기준 .....	76
<표 III-11> 주요국의 중소기업 기준 비교 .....	79
<표 III-12> 영국의 자본공제 가능 자산 및 불가 자산 .....	87
<표 III-13> 영국 연간투자공제(AIA)의 연도별 공제 한도 .....	87
<표 III-14> 영국의 자본공제제도 종류 및 주요 내용 .....	89
<표 III-15> 기업 집단별 투자세액공제 비율 비교 .....	93
<표 III-16> 중소기업 경영강화세제 대상설비별 세부 내용 .....	98
<표 III-17> 중소기업 투자촉진세제 대상설비별 세부 내용 .....	99
<표 III-18> 일본 임금인상촉진세제 공제율(현행) .....	101
<표 III-19> 주요국 연구개발 조세지원의 중소기업 우대 사항 .....	104
<표 III-20> 주요국 투자 관련 조세지원의 중소기업 우대 사항 .....	104
<표 III-21> 주요국 고용 관련 조세지원의 중소기업 우대 사항 .....	105
<표 III-22> OECD 회원국 법인세 최고세율(2025년 기준) .....	106
<표 III-23> 해외 주요국의 법인세율 체계(2025년 기준) .....	108
<표 III-24> 해외 주요국의 법인세율 체계(2025년 기준): 단일 세율체계 .....	108
<표 III-25> 해외 주요국의 법인세율 체계(2025년 기준): 2단계 세율체계 .....	109
<표 III-26> 프랑스의 중소기업 기준(EU 기준) .....	112
<표 III-27> 일본의 중소기업 및 소규모기업 범위 구분 .....	113
<표 III-28> 주요국의 법인세 경감세율 적용 기준 .....	116
<표 IV-1> 기업 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2022년 기준, 소상공인 포함) .....	125
<표 IV-2> 기업 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2022년 기준, 소상공인 제외) .....	125
<표 IV-3> 해외 주요국 중소기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 현황 비교 .....	126
<표 IV-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	130
<표 IV-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복 적용 배제 적용 제도 .....	135
<표 V-1> 법인사업자 분석 대상 기업의 기초통계량 .....	145
<표 V-2> 법인사업자 분석 대상 기업의 제도 수혜 내역 .....	146
<표 V-3> 2020~2022년 본 제도 수혜·비수혜 법인사업자 기초통계량 .....	148
<표 V-4> 2020~2022년 본 제도 수혜·비수혜 법인사업자 기초통계량(산출세액 > 0) ...	149
<표 V-5> 개인사업자 분석 대상 기업의 기초통계량 .....	150

<표 V-6> 개인사업자 분석 대상 기업의 제도 수혜 내역 .....	151
<표 V-7> 2020~2022년 본 제도 수혜·비수혜 개인사업자 기초통계량 .....	152
<표 V-8> 2020~2022년 본 제도 수혜·비수혜 개인사업자 기초통계량(산출세액 > 0) ..	154
<표 V-9> 법인사업자 패널고정효과 및 Stacked DID 추정 결과-재무성과 .....	160
<표 V-10> 법인사업자 패널고정효과 및 Stacked DID 추정 결과-투자 및 생산성 ..	163
<표 V-11> 법인사업자 패널고정효과 및 Stacked DID 추정 결과-고용영향평가 ...	165
<표 V-12> 법인사업자 산업별 패널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 .....	170
<표 V-13> 법인사업자 산업별 Stacked DID 추정 결과 .....	171
<표 V-14> 법인사업자 지역별 패널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 .....	172
<표 V-15> 법인사업자 지역별 Stacked DID 추정 결과 .....	173
<표 V-16> 법인사업자 기업 규모별 패널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 .....	174
<표 V-17> 법인사업자 기업 규모별 Stacked DID 추정 결과 .....	175
<표 V-18> 법인사업자 시기별 패널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 .....	176
<표 V-19> 법인사업자 시기별 Stacked DID 추정 결과 .....	177
<표 V-20> 개인사업자 패널고정효과 및 Stacked DID 추정 결과 .....	179
<표 V-21> 개인사업자 산업별 패널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 .....	182
<표 V-22> 개인사업자 산업별 패널고정효과 및 Stacked DID 모형 추정 결과 .....	183
<표 V-23> 개인사업자 지역별 패널고정효과 및 Stacked DID 모형 추정 결과 .....	185
<표 V-24> 개인사업자 시기별 패널고정효과 및 Stacked DID 모형 추정 결과 .....	187
<표 VI-1> 중특감면 수혜 법인 및 비수혜 법인 실효세율(수입금액 규모별) .....	195
<표 VI-2> 중특감면 수혜 개인 및 비수혜 개인 실효세율(수입금액 규모별) .....	196
<표 VI-3> 중특감면 수혜 법인 및 비수혜 법인 실효세율(업종별) .....	197
<표 VI-4> 중특감면 수혜 개인 및 비수혜 개인 실효세율(업종별) .....	198
<표 VI-5> 중특감면 수혜 법인 및 비수혜 법인 실효세율 (수입금액 규모 및 지역별) .....	200
<표 VI-6> 중특감면 수혜 개인 및 비수혜 개인 실효세율 (수입금액 규모 및 지역별) .....	201
<표 VI-7> 중특감면 제도 적용 전후 법인 실효세율의 변동계수 .....	203
<표 VI-8> 중특감면 제도 적용 전후 개인 실효세율의 변동계수 .....	203

## 그림 목 차

[그림 V-1] 법인사업자 Stacked DID 추정 결과 - 재무성과 .....	161
[그림 V-2] 법인사업자 Stacked DID 추정 결과 - 투자 및 생산성 .....	164
[그림 V-3] 법인사업자 Stacked DID 추정 결과 - 고용영향평가 .....	166
[그림 V-4] 개인사업자 Stacked DID 추정 결과 .....	180

# I. 서론





# I. 서론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은 중소기업의 소재지, 기업 규모, 업종에 따라 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제도
  - 동 제도는 1992년 당시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은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최초 도입된 이후 감면대상 업종이 확대되면서 적용기한이 지속적으로 연장
  
- 본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약 2조 5,000억원(2023 신고연도 실적치 기준)이며, 2025년 말 적용기한이 도래할 예정으로 조세지출 의무심층평가 대상에 포함
  - 조세특례제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당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제도 중 연평균 특례금액 300억원 이상인 제도에 대해서는 심층평가 수행이 의무화
  
- 이에 따라 본 심층평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효과적 운영방안을 제시
  - 「심층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타당성 분석, 효과성 분석, 고용영향 평가, 형평성 분석, 제도 개선 방안 분석 및 종합평가를 수행
  
-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도 개요 및 현황) 제Ⅱ장에서는 동 제도 및 유사제도의 개요, 변천 및 현황을 제시
  - (해외 주요국 사례) 제Ⅲ장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 대상 주요 조세지원 제도 및 세율 체계에 대해 논의
  - (타당성 분석) 제Ⅳ장에서는 동 제도 관련 정부지원의 필요성, 지원방식 및 대상의 적절성, 제도의 유사·중복성 등을 평가
  - (효과성 분석 및 고용영향평가) 제Ⅴ장에서는 동 제도의 정책목표 달성도 및 고용에 미친 영향을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

- (형평성 분석) 제VI장에서는 본 제도에 의한 과세 형평성을 수평적 형평성을 중심으로 검토
- (제도 개선 방안) 제VII장에서는 상기 분석 내용을 토대로 본 제도에 대한 종합 평가를 수행하고, 효과적인 제도 운용방안에 대해 논의

## Ⅱ. 제도 개요 및 현황





## Ⅱ. 제도 개요 및 현황

### 1. 제도 개요 및 연혁

#### 가. 제도 개요

- (개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성장촉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업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소재지, 기업 규모, 업종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제도
  -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의미
    - (규모 기준)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1]에 따른 기준 이내이며,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하인 기업
    - (독립성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거나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 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또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가 아닌 기업
      - 관계기업<sup>2)</sup>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sup>3)</sup>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1]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부동산 임대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거나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sup>4)</sup>은 제외

2) 관계기업은 외부감사대상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 집단을 의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에 따라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형식적 지배, 직접 지배, 간접지배 각각의 평균매출액을 산정

4)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②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③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업을 의미(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82&cntntsId=7748>, 검색일자: 2025. 3. 31.)

-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간주
- 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규모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의미

<표 II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및 소기업 주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주 업종		분류기호	중소기업	소기업
제조업	의복, 의복악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5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80억원 이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120억원 이하
	1차 금속 제조업	C24		80억원 이하
	전기장비 제조업	C28		120억원 이하
	가구 제조업	C32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광업		B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C10	1,0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담배 제조업	C12		80억원 이하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 제외)	C13		120억원 이하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제외)	C16		80억원 이하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20억원 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80억원 이하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C22		120억원 이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80억원 이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0억원 이하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80억원 이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20억원 이하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8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수도업		E36		
건설업		F	8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표 II -1>의 계속

주 업종		분류기호	중소기업	소기업
제조업	음료 제조업	C11	8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80억원 이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120억원 이하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80억원 이하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 제외)		E (E36 제외)		3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H		80억원 이하
정보통신업		J		5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C34	60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N (N76 제외)		30억원 이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0억원 이하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금융 및 보험업		K		80억원 이하
부동산업		L		30억원 이하
임대업		N76		3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10억원 이하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sup>1)</sup>		C30393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sup>1)</sup>		C31202		
항공기용 부품제조업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 <sup>1)</sup>		C31322		

주: 1) 해당 업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에 속하지만 별도의 평균 매출액을 적용

자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별표 3]

□ (지원 대상) 다음의 <표 II-2>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48개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포괄

○ 「조특법」에 열거된 48개 감면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관점에서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은 대분류 전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농업·임업 및 어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도 대부분의 중분류가 포함
  -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는 일부 중분류 또는 소분류가 감면 대상에 포함
  - 반면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은 대분류 전체가 감면 업종에서 제외
  - 교육 서비스업, 비알코올 음료점업·커피 전문점,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의 업종도 미포함
- 한편 일부 감면 업종은 개별법에 근거한 업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표 II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구분	감면 업종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
6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	건설업
8	도매 및 소매업
9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10	출판업
11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12	방송업
13	전기통신업
14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	정보서비스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16	연구개발업
17	광고업
18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19	포장 및 충전업
20	전문디자인업
2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표 II -2>의 계속

구분	감면 업종
2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23	엔지니어링사업
24	물류산업
2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
2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7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2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료업)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
2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희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업 제외)
30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31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32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33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3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3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36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38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9	사회복지 서비스업
40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
41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산업
42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
4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4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5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46	입업
47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48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국가법령정보시스템, <http://www.law.go.kr/>, 검색일자: 2025. 2. 20.

<참고> 한국표준산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산출물, 투입물의 특성, 생산 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 등에 따라 분류
  - 분류 구조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의 5단계로 구성

<표 II -3>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 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A 농업, 임업 및 어업	3	8	21	33
B 광업	4	7	10	11
C 제조업	25	85	182	480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	3	5	10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6	14	19
F 건설업	2	8	16	46
G 도매 및 소매업	3	20	62	186
H 운수 및 창고업	4	11	19	47
I 숙박 및 음식점업	2	4	11	30
J 정보통신업	6	12	26	45
K 금융 및 보험업	3	8	14	29
L 부동산업	1	2	4	12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	14	20	50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	11	22	32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	6	10	28
P 교육서비스	1	7	17	33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	6	9	25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	4	17	43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 서비스업	3	8	18	41
T 가구 내 고용활동, 자가소비 생산활동	2	3	3	3
U 국제 및 외국기관	1	1	1	2

자료: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2024

- (감면 내용) 세액감면 규모는 감면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규모·소재지의 수도권<sup>5)</sup> 여부·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특정 요건 충족 시에는 추가 감면 혜택을 적용

5)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의미하며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간주

- 소기업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을 경영하는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1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그 외 업종의 경우 수도권 내 20%, 수도권 외 30%의 감면율을 적용
  - 중기업은 수도권에서 일반 서적 출판업 등의 출판업을 경영하는 경우 1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은 5%, 그 외 업종은 15%의 감면율을 적용
  -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은 물류산업의 50%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
  - 감면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00만원씩을 제한 금액<sup>6)</sup>이며, 그 밖의 경우에는 1억원으로 설정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위의 기본 감면율에 10%의 추가 감면(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 비율) 혜택을 적용
  - ①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
  - ②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③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표 II -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세액감면율

기업 규모	사업장 소재지	감면 업종	감면율
소기업	수도권 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10%
		제조업 등 그 외 업종	20%
	수도권 외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10%
		제조업 등 그 외 업종	30%
중기업	수도권 내	출판업	10%
	수도권 외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5%
		제조업 등 그 외 업종	15%
		출판업	15%
추가공제	일종 요건 충족 시 위의 감면율에 10%의 추가감면율 적용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국가법령정보시스템, <http://www.law.go.kr/>, 검색일자: 2025. 3. 30.

□ (중복 적용) 본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동일한 과세연도 또는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표 III-5>와 같이 중복 적용 배제

○ 동일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의 세액

6) 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 감면한도는 0원으로 설정

공제 혜택과 중복 적용이 배제되지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과는 중복 적용이 가능

- 동일 사업장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주요 세액감면에 대해서 중복 적용을 허용하지 않음

〈표 II -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복 적용 배제 적용 제도

동일 과세연도에 대한 중복 적용 배제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복 적용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li> <li>•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li> <li>• 통합투자세액공제</li> <li>•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li> <l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li> <li>• 제3자물류비용세액공제</li> <li>•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li> <li>•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li> <li>•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li> <li>•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li> <li>• 금 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li> <li>•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li> <li>•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li> <li>•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li> <li>•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li> <li>•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li> <li>•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li> <li>•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li> <li>•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li> <li>•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li> <li>•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li> <li>•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li> <li>•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li> <li>•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li> <li>•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li> <li>•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이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li> <li>•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li> <li>•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li> <li>•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li> <li>•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li> </ul>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국가법령정보시스템, <http://www.law.go.kr/>, 검색일자: 2025. 7. 30.; 국세청, 「2024 중소기업 세제·세정지원제도」, 2024. 2.

## 나. 제도 연혁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1992년에 중소기업의 경영난 지원을 목적으로 ‘임시특별세액감면’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 감면 업종은 <표 II-7>과 같이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제조업, 농업, 광업, 축산업 등 총 48개 업종을 적용 대상으로 지원
  - 감면 규모는 도입 당시에는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감면율을 적용하였지만 이후에는 <표 II-8>과 같이 중소기업 규모, 소재지의 수도권 여부, 업종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
  
- 다음에서는 2010년 이후의 주요 제도 개정 사항을 소개
  - (2010년) 감면 업종에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 추가
    - 낮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업종을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으로 축소하고 자동차정비업과 관광사업은 제조업 등 기타업종으로 포괄
    - 이에 따라 자동차정비업, 관광사업의 수도권 내 소기업 감면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 밖의 경우 소기업은 10%에서 30%, 중기업은 5%에서 15%로 조정
  - (2011년) 감면 업종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추가
  - (2013년) 감면 업종에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일반 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 시 2012~2013년 발생하는 소득분에 한해 수도권 여부 상관없이 20%의 감면율 적용
  - (2014년) 적용 업종에 무형재산권 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추가
    - 기존 적용 업종 중에서는 물류산업에 도선업을 추가하고 지식기반산업에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추가
  - (2015년) 적용 업종에 영화관 운영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택임대관리업 추가

- (2016년) 적용 업종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 중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을 적용했던 소기업 판별 기준을 변경해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제외하고 매출액 기준을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

<표 II -6> 업종별 소기업 매출액 기준(2016년 개정)

업종	매출액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등	120억원
농업, 광업, 건설업 등	80억원
도·소매업, 출판업 등	50억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	10억원

자료: 국세청, 『2016년 개정세법해설』, 2016

- (2017년) 지원 업종에 의원·치과의원·한의원,7) 임업을 추가하고 장수 성실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항 추가
  - 성실중소기업은 ① 10년 이상 계속사업한 개인사업자 ②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 ③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의미
  - 또한 전체 차량의 50% 이상 전기차를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30% 감면해 주는 조항<sup>8)</sup>을 신설
- (2018년) 1억원의 감면 한도를 설정하고 직전 과세연도 대비 고용인원 감소 시 감소 인원 1인당 500만원씩 한도가 축소되도록 설계
  - 또한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이 허용되도록 변경
- (2019년) 세액감면 적용 업종에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운영하는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은 제외하고 자동차 대여업에 연료전지자동차 대여업 추가
- (2021년) 적용 업종에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임대업을 추가해 적용 업종을 제조업 등 48개 업종으로 확장

7)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

8)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3항

- 전체 차량의 50% 이상 전기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를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추가 조항은 삭제
- (2023년)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고 2022년 중 일반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 시 2023년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기업 20%, 중기업 수도권 외 15%, 중기업 수도권 내 10%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특례 신설
- (2024년) 감면 대상 업종을 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과 일치시키기 위해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을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명칭 변경
- (2025년) 수도권 출판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설해 중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일반 서적 출판업 등 출판업을 경영하는 경우 10%의 세액감면 적용

<표 II -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감면 업종 변천

개정연도	감면 업종
1993	• 제조업
1995	•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추가
1996	•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추가
2001	• 광업, 건설업, 어업, 운수업, 도매업, 소매업, 자동차정비업, 의료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추가
2002	•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축산업 추가
2003	• 과학및기술서비스업, 포장및충전업, 영화산업(상영업 제외), 공연산업(자영예술가 제외),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희음식점업, 외국인 전용유희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운영업 및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탁생산업 추가 • 부가통신업은 전기통신업, 방송업은 표준산업분류상 방송업으로 변경 • 의료업에서 개인의원 제외
2006	• 선박관리업, 광고업, 무역전시업, 분노처리업, 토양정화업 추가
2008	• 기존 엔지니어링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업으로 이루어진 지식기반산업에 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 기록매체출판업, 광고물작성업 추가
2009	•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던 중소기업 해당업종 명칭을 제9차 분류기준에 따라 재분류
2010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추가 • 방송업을 지식기반산업에 추가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변경에 따라 지식기반산업 업종의 명칭 변경
2011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 추가

<표 II -7>의 계속

개정연도	감면 업종
2013	• 사회복지서비스업 추가
2014	• 무형재산권 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 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추가 • 물류산업에 도선업을 추가하고 지식기반산업에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추가
2015	• 영화관 운영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택임대관리업 추가
2016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추가
2017	• 임업 및 의료업에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추가
2018	•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운영하는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은 제외 • 자동차 대여업에 연료전자자동차 대여업 추가
2021	•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자동차 임대업 추가
2024	• 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과 일치시키기 위해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을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변경
2025	• 일반 서적 출판업 등의 출판업 추가

자료: 국세청, 「개정세법해설」, 각 연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 -8>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 연혁

개정연도	감면 비율			
	구분	과세대상 소득금액	감면 비율	
1993	거주자 (소득세)	5천만원 이하	40%	
		5천만원 초과	20%	
	내국법인 (법인세)	1억원 이하	40%	
		1억원 초과	20%	
• 일몰기한 2003. 12. 31.				
1994	20%			
2001	기업 규모	업종	수도권 내	수도권 외
			소기업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제조업 등 기타업종
	중기업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제조업 등 기타업종	- -	10% 30%
		소기업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제조업 등 기타업종	10% 20%
2002	중기업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제조업 등 기타업종	- -	10% 30%
		지식기반산업	20%	30%

<표 II -8>의 계속

개정연도	감면 비율			
2003	소기업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	10%	10%
		제조업 등 기타업종	20%	30%
	중기업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	-	10%
		제조업 등 기타업종	-	30%
		지식기반산업	20%	30%
	2004	소기업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	5%
제조업 등 기타업종			10%	15%
중기업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	-	5%
		제조업 등 기타업종	-	15%
		지식기반산업	10%	15%
• 일몰연장 2005. 12. 31.(3년 연장)				
2005	소기업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	10%	10%
		제조업 등 기타업종	20%	30%
	중기업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	-	5%
		제조업 등 기타업종	-	15%
		지식기반산업	10%	15%
	2006	• 일몰 연장 2008. 12. 31.(3년 연장)		
2009	• 일몰 연장 2011. 12. 31.(3년 연장)			
2010	• 낮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업종을 도·소매업과 의료업으로 축소하고 자동차정비업과 관광사업은 제조업 등 기타업종으로 포괄			
	소기업	도·소매업, 의료업	10%	10%
		제조업 등 기타업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 포함)	20%	30%
	중기업	도·소매업, 의료업	-	5%
		제조업 등 기타업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 포함)	-	15%
		지식기반산업	10%	15%
2012	• 일몰 연장 2014. 12. 31.(3년 연장)			
2013	• 일반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 시 2012~2023년 발생 소득에 대해 20%			
2015	• 일몰 연장 2017. 12. 31.(3년 연장)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수 성실중소기업<sup>1)</sup>에 대해 감면율을 10%(1.1배) 확대 적용 신설</li> <li>•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전체 차량의 50% 이상 전기차를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30% 감면</li> </ul>			

<표 II -8>의 계속

개정연도	감면 비율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면한도 신설: 1억원으로 고용인원 감소 시 1인당 500만원씩 한도 축소</li> <li>일몰 연장 2020. 12. 31.(3년 연장)</li> </ul>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감면율은 물류산업의 50%로 설정</li> <li>일몰 연장 2022. 12. 31.(2년 연장)</li> </ul>			
2023	소기업	도·소매업, 의료업	10%	10%
		제조업 등 기타업종	20%	30%
	중기업	도·소매업, 의료업	-	5%
		제조업 등 기타업종	-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식기반사업에 대한 특례 폐지</li> <li>일반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2022년 중 전환 시 2023년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을 10%p 상향 조정</li> <li>일몰연장 2025. 12. 31.(3년 연장)</li> </ul>				
2025	소기업	도·소매업, 의료업	10%	10%
		제조업 등 기타업종	20%	30%
	중기업	도·소매업, 의료업	-	5%
		제조업 등 기타업종	-	15%
		출판업	10%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도권 출판업 영위 중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li> </ul>				

주: 1) 장수 성실중소기업은 ① 10년 이상 계속 사업한 개인사업자 ②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 ③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

자료: 국세청, 「개정세법해설」, 각 연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 제도 활용 현황

- 본 소절에서는 「조세지출예산서」와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조세지출 실적 및 제도 활용 현황 등을 제시
- 「2025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지출 규모는 2조 5,336억원으로 전체 조세지출 규모 69조 7,664억원 중 약 3.6%, 중소기업 조세지출 규모 3조 3,413억원 중 75.8%를 차지
  - 소득세와 법인세 각각의 조세지출 규모는 1조 3,738억원과 1조 1,159억원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한 실적이 유사한 수준
  - 2011년 이후 동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

- 조세지출 규모는 2011~2018년 기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후 2019~2021년에는 소폭 하락하였지만 2022~2023년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
- 다만 2024년에는 동 제도 조세지출 규모가 약 1,7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

<표 II -9>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세지출 규모 추이

(단위: 억원)

구분	소득세	법인세	합계
2011	4,924	6,029	10,953
2012	6,506	6,323	12,829
2013	6,384	6,256	12,640
2014	6,845	6,967	13,812
2015	9,011	7,079	16,090
2016	9,973	8,670	18,643
2017	10,492	10,111	20,603
2018	11,409	10,805	22,214
2019	10,885	9,535	20,420
2020	10,680	9,879	20,559
2021	9,995	9,534	19,528
2022	12,632	10,858	23,489
2023	13,738	11,598	25,336
2024(전망)	13,133	10,506	23,639
2025(전망)	13,998	11,002	25,000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국세통계연보」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신고 사업자 수는 대체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당 평균 수혜 규모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신고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수 모두 지속 증가
    -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2021년,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0년에 신고 사업자 수가 소폭 감소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추정
  - 기업당 평균 수혜 규모는 법인의 경우 500만원 내외, 개인은 100만원 초반 수준을 유지
    - 절대적 규모는 크지 않지만 본 제도 수혜자로 영세한 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제도에 의해 기업의 조세부담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표 II -10> 법인세 및 소득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고 현황

(단위: 개, 명, 백만원)

구분	신고 법인사업자 수	법인사업자 감면액	평균 수혜규모 (법인사업자)	신고 개인사업자 수	개인사업자 감면액	평균 수혜규모 (개인사업자)
2014	150,687	696,669	4.62	765,496	901,040	1.18
2015	159,784	759,247	4.75	827,485	997,228	1.21
2016	172,771	867,029	5.02	869,869	1,049,203	1.21
2017	189,384	1,011,138	5.34	925,458	1,140,906	1.23
2018	202,191	1,080,514	5.34	955,667	1,088,412	1.14
2019	209,112	953,514	4.56	978,291	1,067,950	1.09
2020	218,488	987,883	4.52	949,304	999,473	1.05
2021	210,282	953,354	4.53	1,054,908	1,263,184	1.20
2022	226,671	1,085,758	4.79	1,087,528	1,373,832	1.26
2023	231,807	1,159,784	5.00	1,096,239	1,313,035	1.20

주: 연도는 신고연도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8-3-8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 현황」 및 「국세통계연보 3-2-9 조세특례제한  
법상 종합소득세 세액감면 신고 현황」, 각 연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다음으로 중소기업이 수혜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제도의 활용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봄
  - 즉 중소기업이 수혜 가능한 모든 조세지출제도의 활용도를 제시
  - 제도별 활용 현황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구분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현황을 각각 살펴봄
  
- (법인사업자) 먼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기업 수 측면에서 세액공제(42.94%)보다는 세액감면(57.06%)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본 제도는 중소기업이 가장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조세지원 중 하나인 것으로 확인
  - 2023년 신고연도 기준 조세지출제도 활용 중소기업 중 본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 비중은 52.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순으로 나타남
  - 수혜금액 측면에서는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6.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5.2%) 다음으로 본 제도의 활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

- 특히 본 제도와 함께 중소기업 활용도가 높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모두 본 제도와 중복 적용 가능하다는 특징에 주목할 필요
  - 이는 기업들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요건이 가장 단순한 본 제도를 일차적으로 활용하려는 유인이 가장 강하고, 그 이후 본 제도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타 제도를 추가로 적용받는 행태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
  - 반면 투자가 기업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임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 활용기업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는 본 제도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이 배제된 것에 부분적으로 기인했을 것으로 추정

<표 II -11> 세액감면 및 공제별 수혜기업 수와 수혜금액 비중: 법인세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수혜기업 수(개)			수혜금액(백만원)		
	중소기업	일반기업	전체기업	중소기업	일반기업	전체기업
2023년 신고연도 (세액감면+세액공제)	439,341	14,235	453,576	5,567,414	10,409,894	15,977,308
	수혜기업 수 비중(%)			수혜금액 비중(%)		
	세액감면					
총 세액감면	57.06	0.96	55.30	28.86	2.14	11.45
총 최저한세 적용 제외 세액감면	1.86	0.83	1.83	3.02	2.10	2.4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0.73	0.00	0.70	1.30	0.00	0.45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0.02	0.02	0.02	0.05	0.08	0.07
지방이전 중소기업 감면	0.01	0.00	0.01	0.07	0.00	0.02
수도권 외 지역 이전 공장에 대한 감면	0.02	0.08	0.02	0.12	0.38	0.29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	0.02	0.05	0.02	0.28	0.55	0.45
영농조합법인 감면	0.50	0.17	0.49	0.32	0.00	0.11
영어조합법인 감면	0.11	0.00	0.10	0.07	0.00	0.02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0.14	0.10	0.14	0.15	0.01	0.06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감면	0.00	0.00	0.00	0.00	0.00	0.00

<표 II -11>의 계속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수혜기업 수(개)			수혜금액(백만원)		
	중소기업	일반기업	전체기업	중소기업	일반기업	전체기업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0.15	0.08	0.15	0.14	0.00	0.05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0.02	0.15	0.03	0.08	0.01	0.03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0.13	0.00	0.12	0.33	0.00	0.11
감염병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0.00	0.00	0.00	0.00	0.00	0.00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0.00	0.01	0.00	0.01	0.01	0.01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0.00	0.01	0.00	0.00	0.02	0.01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0.00	0.11	0.00	0.09	0.90	0.62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0.00	0.03	0.00	0.00	0.06	0.04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0.00	0.01	0.00	0.00	0.02	0.01
	수혜기업 수 비중(%)			수혜금액 비중(%)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	0.00	0.01	0.00	0.00	0.00	0.00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감면	0.00	0.01	0.00	0.00	0.07	0.04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0.00	0.00	0.00	0.00	0.00	0.00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0.00	0.00	0.00	0.01	0.00	0.00
기타[C]	0.00	0.00	0.00	0.00	0.00	0.00
총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감면	55.20	0.13	53.47	25.84	0.05	9.04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73	0.00	1.68	2.26	0.00	0.79
창업 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0.38	0.00	0.37	1.45	0.00	0.50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세액감면	0.00	0.00	0.00	0.00	0.00	0.00

<표 II -11>의 계속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수혜기업 수(개)			수혜금액(백만원)		
	중소기업	일반기업	전체기업	중소기업	일반기업	전체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52.76	0.00	51.11	20.83	0.00	7.26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0.00	0.01	0.00	0.01	0.00	0.00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0.00	0.00	0.00	0.00	0.00	0.00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0.00	0.00	0.00	0.01	0.00	0.00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면제	0.00	0.02	0.00	0.00	0.03	0.02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0.00	0.00	0.00	0.00	0.00	0.00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0.00	0.00	0.00	0.00	0.00	0.00
지방이전 중소기업 감면	0.08	0.00	0.08	0.95	0.00	0.33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감면	0.02	0.01	0.02	0.06	0.01	0.03
농업회사법인 감면 (농업소득외의 소득)	0.21	0.01	0.20	0.26	0.00	0.09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0.01	0.04	0.01	0.02	0.01	0.01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0.00	0.00	0.00	0.00	0.00	0.00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0.00	0.00	0.00	0.00	0.00	0.00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0.00	0.00	0.00	0.00	0.00	0.00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0.00	0.01	0.00	0.00	0.00	0.00
기타	0.00	0.03	0.00	0.00	0.00	0.00
	수혜기업 수 비중(%)			수혜금액 비중(%)		
<b>세액공제</b>						
총 세액공제	42.94	99.04	44.70	71.14	97.86	88.55
최저한세 적용제외 세액공제	12.55	17.07	12.69	29.71	48.58	42.00
외국납부세액공제	0.28	7.41	0.51	2.09	48.47	32.31
재해손실세액공제	0.01	0.00	0.01	0.03	0.00	0.01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9.43	0.00	9.13	26.68	0.00	9.30

<표 II -11>의 계속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수혜기업 수(개)			수혜금액(백만원)		
	중소기업	일반기업	전체기업	중소기업	일반기업	전체기업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0.05	0.00	0.05	0.48	0.00	0.17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0.00	0.00	0.00	0.06	0.00	0.02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0.26	2.55	0.33	0.18	0.10	0.13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51	7.03	2.66	0.21	0.01	0.08
기타[C]	0.00	0.08	0.01	0.00	0.00	0.00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	30.39	81.97	32.01	41.43	49.28	46.54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0.33	0.23	0.32	0.27	0.01	0.10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0.02	0.22	0.03	0.03	0.02	0.0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출연 세액공제	0.00	0.93	0.03	0.00	0.39	0.26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0.00	11.22	0.35	0.00	8.56	5.58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0.00	0.68	0.02	0.00	8.86	5.77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0.00	0.17	0.01	0.00	11.47	7.47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0.00	0.00	0.00	0.00	0.00	0.00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0.00	0.00	0.00	0.00	0.00	0.00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0.00	0.06	0.00	0.03	0.06	0.05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0.07	2.13	0.13	0.13	0.56	0.41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인수 세액공제	0.00	0.00	0.00	0.00	0.00	0.00
	수혜기업 수 비중(%)			수혜금액 비중(%)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0.14	0.06	0.13	0.20	0.01	0.07
일반 통합투자세액공제	2.02	12.11	2.34	7.15	6.10	6.47

<표 II -11>의 계속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수혜기업 수(개)			수혜금액(백만원)		
	중소기업	일반기업	전체기업	중소기업	일반기업	전체기업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 세액공제	0.01	0.11	0.01	0.05	0.01	0.02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 세액공제	0.00	0.08	0.00	0.01	7.13	4.65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투자 세액공제	0.01	0.23	0.01	0.01	0.06	0.04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0.21	0.51	0.21	0.24	0.29	0.27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0.02	0.23	0.03	0.22	0.11	0.15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0.01	0.09	0.01	0.01	0.00	0.00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0.01	0.20	0.01	0.02	0.06	0.04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0.07	0.91	0.10	0.16	0.71	0.52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0.00	0.04	0.00	0.01	0.01	0.01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	0.00	0.01	0.00	0.00	0.02	0.0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0.01	0.26	0.02	0.11	0.25	0.20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0.03	0.44	0.05	0.08	0.13	0.11
산업수요맞춤형고교등졸업자 복지 중소기업 세액공제	0.00	0.02	0.00	0.00	0.00	0.00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0.02	0.11	0.03	0.01	0.00	0.01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0.06	0.84	0.09	0.05	0.02	0.03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0.26	0.79	0.27	0.18	0.06	0.10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0.08	0.15	0.08	0.07	0.04	0.05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4.91	18.95	15.03	25.19	3.96	11.36
통합고용세액공제	0.00	0.01	0.00	0.00	0.00	0.00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0.07	1.03	0.10	0.18	0.10	0.13

<표 II -11>의 계속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수혜기업 수(개)			수혜금액(백만원)		
	중소기업	일반기업	전체기업	중소기업	일반기업	전체기업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0.01	0.01	0.01	0.00	0.00	0.00
	수혜기업 수 비중(%)			수혜금액 비중(%)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1.65	0.48	11.30	6.93	0.09	2.47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0.08	0.00	0.08	0.02	0.00	0.01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0.00	0.00	0.00	0.00	0.00	0.00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	0.17	28.15	1.05	0.00	0.00	0.00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세무법인)	0.10	0.14	0.10	0.05	0.00	0.02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0.00	0.05	0.00	0.00	0.00	0.00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0.00	0.00	0.00	0.00	0.00	0.00
대학 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0.00	0.00	0.00	0.00	0.00	0.00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 현장훈련수당세액공제	0.00	0.01	0.00	0.00	0.00	0.00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0.00	0.04	0.00	0.00	0.00	0.00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0.00	0.10	0.01	0.00	0.02	0.01
우수선화주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0.00	0.02	0.00	0.00	0.02	0.02
금사업자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0.01	0.15	0.01	0.01	0.03	0.02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	0.00	0.01	0.00	0.00	0.11	0.07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24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영위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원 측면에서 세액감면(15.76%) 보다는 세액공제(84.24%)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그중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3 신고연도 기준 조세지출제도 활용 개인사업자 중 본 제도를 활용한 사업자의 비중은 11.60%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다음으로 높은 활용도를 보임
  - 수혜금액 측면에서는 본 제도(28.08%),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44%),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12.20%) 순으로 수혜 비중이 높았음

<표 II -12> 세액감면 및 공제별 수혜자 수와 수혜금액 비중: 종합소득세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수혜인원		수혜금액	
	인원수	비중	수혜금액	비중
2023년 신고연도(세액감면+세액공제)	9,453,923	100.00	4,675,696	100.00
세액감면				
총 세액감면	1,490,264	15.76	2,244,060	47.99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78,076	0.83	570,240	12.20
창업 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884	0.01	13,812	0.3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1,096,239	11.60	1,313,035	28.08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2	0.00	68	0.00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	3,992	0.04	2,941	0.06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96,683	3.14	269,419	5.76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0	0.00	0	0.00
지방이전 중소기업 감면	449	0.00	19,503	0.42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감면	5	0.00	160	0.00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8	0.00	146	0.00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27	0.00	1,004	0.0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11,147	0.12	19,213	0.41
산림개발소득세액감면	2	0.00	0	0.00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0	0.00	0	0.00
기타	2,750	0.03	34,517	0.74
세액공제				
총 세액공제	7,963,659	84.24	2,431,636	52.01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790	0.01	1,911	0.04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0	0.00	0	0.00

<표 II -12>의 계속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수혜인원		수혜금액	
	인원수	비중	수혜금액	비중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1,681	0.12	100,651	2.15
연구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31	0.00	246	0.01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2	0.00	2	0.00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68	0.00	453	0.01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7	0.00	21	0.00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474	0.01	1,187	0.03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21	0.00	66	0.00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0	0.00	0	0.00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460	0.02	4,413	0.09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24	0.00	1,220	0.03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84,907	0.90	955,867	20.44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148	0.00	1,572	0.03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5,195	0.37	152,407	3.26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10만원 이하)	264,771	2.80	7,123	0.15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10만원 초과)	26,596	0.28	2,276	0.05
우리사주조합기부금세액공제	1,030	0.01	1,048	0.02
월세액 세액공제	206,849	2.19	97,641	2.09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6,866,739	72.63	145,454	3.11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19	0.00	20	0.00
성실사업자 의료비 세액공제	15,328	0.16	11,406	0.24
성실사업자 교육비 세액공제	35,591	0.38	25,755	0.55
성실사업자 월세 세액공제	350	0.00	264	0.01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230,110	2.43	250,947	5.37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18,210	0.19	41,651	0.89
기타	163,058	1.72	628,032	13.4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24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마지막으로 본 제도와 함께 중소기업만을 수혜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세지원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sup>9)</sup>과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sup>10)</sup>와 본 제도의 활용 현황을 비교
  - 『국세통계연보』상 가장 최신 자료인 2023 신고연도를 기준으로 비교를 수행
    -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는 2021년 신고분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와 통합되었으므로 해석에 유의가 필요
    - 다만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하여도 이하 제시된 결과는 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확인
  - 기업 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본 제도의 활용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순
    - 2023 신고연도 기준 신고 법인사업자 수는 본 제도 231,807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0,811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1,469개로 확인
    - 신고 개인사업자 수 역시 본 제도 1,096,239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78,076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790개로 본 제도의 활용도가 가장 높았음
  - 이에 따라 총 조세지출 규모 역시 본 제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순서로 큰 것으로 확인
  - 반면 기업당 평균 수혜 규모는 본 제도가 가장 작은 것으로 확인
    - 본 제도의 경우 수혜대상이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으로 비교적 넓게 설정된 데 비해, 타 제도의 경우 창업과 투자라는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

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0)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로 2021년 신고분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되었으며, 2020년과 20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을 허용

<표 II -13> 2014~2023년 주요 중소기업 대상 조세지원제도 활용기업 수 및 세액 감면·공제액 추이

(단위: 개, 명, 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신고기업	150,687	159,784	172,771	189,384	202,191	209,112	218,488	210,282	226,671	231,807
	법인사업자	765,496	827,485	869,869	925,458	955,667	978,291	949,304	1,054,908	1,087,528	1,096,239
	총계	916,183	987,269	1,042,640	1,114,842	1,157,858	1,187,403	1,167,792	1,265,190	1,314,199	1,328,046
감면액	법인사업자	6,967	7,592	8,670	10,111	10,805	9,535	9,879	9,534	10,858	11,598
	개인사업자	9,010	9,972	10,492	11,409	10,884	10,680	9,995	12,632	13,738	13,130
	총계	15,977	17,565	19,162	21,520	21,689	20,215	19,874	22,165	24,596	24,728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6조)	신고기업	3,940	4,348	4,804	5,090	5,628	6,293	7,454	8,553	10,080	10,811
	법인사업자	8,616	10,064	12,019	15,940	19,382	25,891	35,307	52,201	64,639	78,076
	총계	12,556	14,412	16,823	21,030	25,010	32,184	42,761	60,754	74,719	88,887
감면액	법인사업자	606	637	771	810	1,043	891	1,067	1,469	1,672	1,983
	개인사업자	520	534	645	937	1,025	1,405	2,167	3,395	4,841	5,702
	총계	611	642	1,416	1,747	2,068	2,296	3,234	4,864	6,512	7,685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5조)	신고기업	1,887	2,321	2,934	3,423	3,790	4,444	4,524	2,993	2,058	1,469
	법인사업자	-	-	3,622	4,605	5,845	6,729	2,671	1,463	1,072	790
	총계	1,887	2,321	6,556	8,028	9,635	11,173	7,195	4,456	3,130	2,259
감면액	법인사업자	276	332	411	496	522	790	807	413	369	161
	개인사업자	40	51	87	117	136	172	69	48	34	19
	총계	316	383	498	613	659	962	876	461	403	180

주: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는 2021년 신고분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되었으며, 2020년과 20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을 허용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8-3-2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 현황」, 「국세통계연보 8-3-8 법인세 세액감면 신고 현황」, 「국세통계연보 3-2-8 조세특별제한법상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신고 현황」, 「국세통계연보 3-2-9 조세특별제한법상 종합소득세 세액감면 신고 현황」 및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 -14〉 2014~2023년 주요 중소기업 대상 조세지원제도의 신고법인 및 신고사업자당 수혜금액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신고법인 당 수혜금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4.62	4.75	5.02	5.34	5.34	4.56	4.52	4.79	5.00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5.38	14.64	16.05	15.91	18.54	14.16	14.31	16.59	18.34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14.62	14.32	14.00	14.48	13.78	17.78	17.84	13.79	17.92
신고 사업자 당 수혜금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18	1.21	1.21	1.23	1.14	1.09	1.05	1.20	1.20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6.04	5.31	5.37	5.88	5.29	5.43	6.14	6.50	7.49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	-	2.42	2.54	2.33	2.55	2.60	3.31	3.18

주: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는 2021년 신고분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되었으며, 2020년과 20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을 허용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8-3-2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 현황」, 「국세통계연보 8-3-8 법인세 세액감면 신고 현황」, 「국세통계연보 3-2-8 조세특별세한법상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신고 현황」, 「국세통계연보 3-2-9 조세특별세한법상 종합소득세 세액감면 신고 현황」 및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종합하면 중소기업은 여러 조세지원제도 중 본 제도를 가장 활발히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본 제도가 기타 조세지원의 활용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
  - 본 제도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적용 요건으로 인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법인 사업자 및 개인사업자가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 다만 기업당 평균 수혜금액은 R&D, 투자, 고용, 창업 등 기타 조세지원에 비해 작은 것으로 확인
  - 또한 본 제도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제도의 경우 대부분 본 제도와 중복 적용이 허용되는 점을 확인했으며, 이는 본 제도가 중복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 제도의 활용도를 저해할 수 있음을 함의
    -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는 모두 본 제도와 중복 적용이 허용

### Ⅲ. 해외 주요국 사례





### Ⅲ. 해외 주요국 사례

#### 1. 한국 및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 기준

##### 가. 한국

- 우리나라 중소기업 범위 관련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제시
  - 다만 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서 별도로 규정
  - 따라서 다음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차례대로 살펴봄

##### 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을 의미
  - 규모 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중에서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규모 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중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가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한 경우

□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된 업종<sup>11)</sup>의 평균매출액<sup>12)</sup> 기준과 자산총액<sup>13)</sup>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주된 업종의 평균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내용을 준용하며 다음의 <표 III-1>과 같이 제시

○ 자산총액<sup>14)</sup> 기준은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함

- 자산총액은 직전 사업연도가 있는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분할·합병한 기업의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함
-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중소기업에서 배제

<표 III-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주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주업종		분류기호	중소기업	소기업
제조업	의복, 의복악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5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80억원 이하
	1차 금속 제조업	C24		120억원 이하
	전기장비 제조업	C28		
	가구 제조업	C32		
농업, 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광업		B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C10	1,0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담배 제조업	C12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 제외)	C13		120억원 이하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제외)	C1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11) 주된 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보고, 관계기업의 경우에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 평균매출액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간주

1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에 따라 산출

1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자산총액에 따라 산출

14)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계(자본총계+부채총계)를 의미

<표 III-1>의 계속

주업종		분류기호	중소기업	소기업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C22	1,0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120억원 이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8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20억원 이하
수도업		E36		80억원 이하
건설업		F		8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제조업	음료 제조업	C11	8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80억원 이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120억원 이하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80억원 이하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 제외)		E (E36 제외)		3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H		80억원 이하
정보통신업		J		5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C34	60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N (N76 제외)		30억원 이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0억원 이하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I		10억원 이하
금융 및 보험업		K		80억원 이하
부동산업		L	40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임대업		N76		3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10억원 이하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sup>1)</sup>		C30393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sup>1)</sup>		C31202		
항공기용 부품제조업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 <sup>1)</sup>		C31322		

주: 1) 해당 업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에 속하지만 별도의 평균 매출액을 적용

자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3]

- (독립성 기준<sup>15)</sup>) 다음의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되며,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규모 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sup>16)</sup>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는 기업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최대출자자가 아닌 기업
  - 관계기업<sup>17)</sup>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sup>18)</sup>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1]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독립성 기준은 주식 등의 출자관계로 인해 발생하므로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인 기업에만 적용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그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을 부여
  - 다만 다음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 제외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 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이 지난 경우
    - 중소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경우
    - 유예중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평균매출액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5) 독립성 기준은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효율적 분배와 합리적 지원을 위해 1995년 도입되었으며, 관계 기업제도는 2009년 법령에 반영되어 일정 기간의 시행유예를 거친 뒤 2011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의미

17) 관계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는 기업들의 집단을 의미하며, 이 경우 지배기업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기업이며 종속기업은 국내기업에 한해 적용(「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1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에 따라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형식적 지배, 직접 지배, 간접지배 각각의 평균매출액을 산정

## 2)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업종 포괄 범위, 주업종 판단 기준 등이 상이
  - 「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1]을 동일하게 적용
  - 반면 적용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모든 업종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나, 「조세특례제한법」은 부동산 임대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sup>19)</sup>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sup>20)</sup>도 중소기업에서 제외
  - 주된 업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은 평균매출액이 큰 업종, 「조세특례제한법」은 사업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간주
  
- (중소기업 유예기간)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그 다음 연도부터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은 7년, 그 외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
  -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으며,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 미적용
    - ①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②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③ 독립성 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sup>21)</sup>의

19)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되며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20)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②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③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업을 의미(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82&cntntsId=7748>, 검색일자: 2025. 3. 31.)

2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별표 2]는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간주

- 즉 중소기업 기준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5년이 아닌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

<표 III-2>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 비교

구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모든 업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임대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li> <li>•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제외</li> </ul>
주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균매출액이 큰 업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업종</li> </ul>
규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업종별 규모 기준에 따른 평균 매출액</li> <li>• 자산총액 5천억원 이하</li> </ul>	
독립성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시대상기업제한 기업집단 제외</li> <li>•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회사가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제외</li> <li>• 관계기업 간에 합산한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규모 기준을 초과하면 제외</li> </ul>	
유예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유 발생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유발생 과세연도의 그 다음 5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간주(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은 7년)</li> </ul>
유예기간 적용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li> <li>•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경우</li> <li>• 이미 유예를 적용받은 적 있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과의 합병</li> <li>•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li> <li>• 독립성 기준 미충족</li> <li>•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 후 2년 이내 중소기업 기준 초과</li> </ul>

자료: 「중소기업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나. 미국<sup>22)</sup>

- 미국의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SBA)」은 중소기업을 식량 및 섬유 생산, 목축 및 가축 사육, 양식업, 그리고 그 외 모든 농업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으로서 독립적으로 소유되고 운영되며, 해당 업종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 기업으로 정의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22)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MALL BUSINESS COMPLIANCE GUIDE: A GUIDE TO THE SBA'S SIZE STANDARDS AND AFFILIATION RULES」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체(business concern)의 정의를 충족해야 하며 기업체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을 의미
  - ① 영리 목적으로 조직 ② 미국 내 사업장 보유 ③ 미국 내에서 주로 영업하거나 미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
  - 또한 기업체는 개인사업자(individual proprietorship), 파트너십(partnership), 유한책임회사(LLC), 법인(corporation), 합작투자(joint venture), 협회(association), 신탁(trust), 협동조합(cooperative)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조직이 가능
- 독립성 기준(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은 주식투자에 의한 자본참여 등으로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계열관계(affiliation)에 있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계열에 대한 일반 원칙 8가지를 제시
  - ① 통제에 대한 권한 ② 계열성 판단 요소 ③ 통제의 성격 ④ 간접 통제 ⑤ 총체적 판단 기준 ⑥ 규모 산정 시 포함 범위 ⑦ SBIR, STTR에 대한 중소기업 기준 ⑧ 사업대출, 재난 대출, 보증채권보증 등 신청 시 중소기업 기준

<표 III-3> 미국 중소기업 계열관계 적용에 대한 일반 원칙 및 내용

유형	일반 원칙의 내용
통제에 대한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의 기업 또는 단체가 다른 기업을 통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또는 제3자(또는 제3자들)가 두 기업을 통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이들 기업은 서로 있는 것으로 간주</li> <li>• 실제로 통제가 행사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는 것 자체로 계열 관계가 성립</li> </ul>
계열성 판단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유권, 경영, 과거 관계 또는 연계성, 계약 관계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열 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li> </ul>
통제의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적(affirmative) 통제와 소극적(negative) 통제 모두 계열관계로 간주</li> <li>- 소극적 통제는 소수 주주가 기업의 정관, 이사회 규정, 또는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이사회 정족수(quorum)를 방해하거나, 이사회 또는 주주의 결정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경우 등을 의미</li> </ul>
간접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기업 또는 단체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계열 관계로 간주</li> </ul>
총체적 판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BA는 모든 정황(totality of the circumstances)을 고려하여 계열 관계 존재 여부를 판단하며, 단일 요건만으로는 계열성을 구성하지 않더라도 전체 정황을 통해 계열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 가능</li> </ul>
규모 산정 시 포함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규모를 산정할 때 SBA는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외 모든 계열사의 매출, 종업원 수 또는 기타 규모 측정 요소를 합산하며, 계열사가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포함</li> </ul>

<표 III-3>의 계속

유형	일반 원칙의 내용
SBIR, STTR	• SBA의 중소기업 혁신 연구(SBIR) 및 기술이전(STTR) 프로그램과 관련한 계열성 판단 기준은 §121.702에 명시
대출 기준	• SBA의 기업 대출(Business Loan), 재난 대출(Disaster Loan), 보증 채권(Surety Bond Guarantee) 프로그램 신청자에 대한 규모 기준 및 계열성 기준은 §121.301에 명시

자료: Code of Federal Regulations, 13 C.F.R. § 121.103(a): General Principles of Affiliation 바탕으로 저자 작성(<https://www.ecfr.gov/current/title-13/chapter-I/part-121/subpart-A/subject-group-ECFRd133f03f6d8398b/section-121.103>, 검색일자: 2025. 5. 7.)

- 해당 업종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not dominant)다는 것은 해당 업종 또는 산업에서 한 기업이 시장의 독점력을 가지지 않아야 함을 의미
  - 「중소기업법」은 산업 간 특성 차이를 반영해 규모 기준을 다양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북미산업분류체계(NAICS)<sup>23)</sup>에 의한 산업분류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규모 기준) 중소기업 규모 기준은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에서 설정하며, NAICS의 6자리 코드에 할당된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중소기업체(small business concern)로 인정
  -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연평균 수입(receipts) 또는 종업원 수(employees) 기준에 따라 구분되며 예외적으로 특정 금융기관에 한해 평균 자산 기준 등을 사용
    -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적용하는 연평균 수입 또는 종업원 수는 계열사 전체가 중소기업으로 간주되기 위해 허용되는 최대치를 의미
    - 연평균 수입은 가장 최근 5개 회계연도의 평균 수입으로 총소득에 판매된 상품의 원가(cost of goods sold)를 더해서 산출하며, 자본이득 및 손실·국내외 계열사 간 거래에 따른 수익·대리 수령금 등은 제외
    - 종업원 수는 직전 24개월 동안의 평균 종업원 수로, 종업원에는 정규직, 시간제, 임시직, 인력 파견 회사를 통해 고용된 근로자, 전문 인력 고용 조직을 통한

23) 북미산업분류시스템(North American Industrial Classification System, NAICS)은 미국 행정관리에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가 제정하고, 유지·개정할 책임을 갖고 있음. 비록 NAICS가 미국 내 모든 개별 업종에 대한 코드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은 자사의 사업 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코드를 찾을 수 있음. 또한 정부는 매 5년마다 NAICS 코드를 개정하므로 기업의 코드도 시간이 지나며 다소 변경될 수 있음.(『SMALL BUSINESS COMPLIANCE GUIDE: A GUIDE TO THE SBA'S SIZE STANDARDS AND AFFILIATION RULES』)

근로자, 인력 임대업체를 통한 고용 등의 외부 인력을 모두 포함

- 산업별 세부 기준을 살펴보면 연간 수입 기준으로 밀·콩·기타 곡물 재배업 등이 225만달러로 가장 낮고 병원, 승용차 렌트 및 임대업, 일부 보험업 등에는 가장 높은 기준인 4,700만달러를 적용
- 종업원 수 기준으로는 가구도매업 등 일부 도매업이 100명 이하로 가장 낮고 반도체 기계 제조업, 석탄 채굴업, 일부 제조업 등에 1,500명으로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

<표 III-4> 미국 NAICS 산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단위: 백만달러, 명)

업종	연간 수입	직원 수	자산
농업, 임업, 어업 및 사냥(11)	2.25~34.0	500(별채)	
채광, 채석, 석유 및 가스 추출업(21)	20.5~47.0	500~1,500	
유틸리티(22)	30.0~41.0	250~1,150	
건설업(23)	19.0~45.0		
제조업(31~33)		500~1,500	
도매업(42)		100~250	
소매업(44~45)	9.0~47.0	200명(신차 달러), 100명(연료 달러)	
운수 및 창고업(48~49)	9.0~47.0	550~1,500	
정보산업(51)	11.0~47.0	900~1,500	
금융 및 보험업(52)	15.0~47.0	1,500 (직접 손해보험사)	850 <sup>1)</sup>
부동산 및 임대업(53)	9.0~47.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54)	9.0~47.0	150~1,500	
기업 본사 및 지주회사 운영업(55)	38.5(은행지주회사 사무소) 45.5(기타지주회사 사무소)		
행정·지원, 폐기물관리, 개선서비스업(56)	8.5~47.0	1,000 (환경개선서비스)	
교육서비스업(61)	9.0~47.0		
의료 및 사회복지업(62)	9.0~47.0		
예술 및 오락업(71)	9.0~47.0		
음식 및 숙박서비스업(72)	9.0~47.0		
기타서비스업(81) <sup>2)</sup>	8.0~47.0		

주: 1) 금융 및 보험업의 자산은 상업은행, 저축기관, 신용협동조합, 기타 예금 중개업, 신용 카드 발급업이 해당되며, 자산은 전년도 4분기 재무제표에 보고된 자산 평균값

2) 기타서비스업에서 공공행정은 제외

자료: Code of Federal Regulation, 「PART 121-SMALL BUSINESS SIZE REGULATIONS」 바탕으로 저자 작성(<https://www.ecfr.gov/current/title-13/chapter-I/part-121>, 검색일자: 2025. 5. 9.)

- 중소기업청은 규모 기준 설정 시 산업 유형별 경쟁 정도, 평균 기업 규모, 창업 비용 및 시장 진입 장벽, 규모별 기업 분포 등 산업구조를 구성하는 경제적 특성을 고려<sup>24)</sup>
  - 이 외에도 기술 변화, 타 산업과의 경쟁, 산업 성장 추세, 소기업과 타 기업을 구분 짓는 산업 내 특수 요소, 중소기업청 프로그램의 목적 등도 함께 고려
  - 또한 특정 사업체가 해당 산업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점유율, 산업 내 주요 통제력 행사 가능 여부 등을 조사해 특정 사업체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않도록 보장
  - 특히 중소기업청은 최소 5년마다 수익, 순이익, 자산 등에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플레이션이 규모 기준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중소기업 기준 변경을 위한 제안을 발표
  
-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 자격을 요구하는 모든 중소기업청 및 연방 프로그램의 자격 판단 기준으로 활용
  -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전용 계약, 중소기업 혁신연구(SBIR) 프로그램, 중소기업 기술이전(STTR) 프로그램, 적격성 인증(COC) 프로그램, 여성 소유 중소기업(WOSB) 및 경제적 취약 여성 소유 중소기업(EDWOSB) 프로그램 등에 활용
    - 또한 중소기업청의 규모 기준은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 및 보조금 프로그램에도 적용
    - 식품의약국(FDA), 재향군인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등 여러 연방 기관에서도 중소기업 지위와 자격 요건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프로그램에도 동일한 SBA의 규모 규정이 적용

#### 다. EU<sup>25)</sup>

- EU 집행위원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위원회, 회원국, 유럽투자은행(EIB), 유럽투자기금(EIF) 등이 동일한 정의를 적용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고자 2003년 초소기업(Micro)·소기업(Small)·중기업(Medium) 정의에 대한 다음과 같은 권고를 채택

24) <https://www.law.cornell.edu/cfr/text/13/121.102>, 검색일자: 2025. 5. 7.

25) EU,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03H0361>, 검색일자: 2025. 5. 14.

- 유럽사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기업(enterprise)은 법적 형태와 무관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실체를 의미
    - 자영업자, 수공업 또는 기타 활동에 종사하는 가족기업, 정기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협회 등도 포함
  - 직원 수 기준은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며, 기업의 실제 규모·성과·경쟁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무 기준도 필요
    - 특히 유통업체의 경우 제조업보다 매출이 크므로 매출액 기준과 더불어 대차대조표 총액 기준을 병행하여 적용
  - 상한선은 최대한도를 의미하며 회원국, 유럽투자은행(EIB), 유럽투자기금(EIF) 등은 필요시 더 낮은 기준을 설정해 정책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
- (규모 기준) EU 집행위원회 권고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기준은 직원 수가 250명 미만이며 연간 매출액이 5천만유로 이하 또는 대차대조표 총액이 4천만유로 이하인 기업을 의미
- 세부적으로는 초소기업은 직원 수 10명 미만, 연간 매출액 또는 대차대조표 총액이 200만유로 이하인 기업을 의미
    - 소기업은 직원 수 50명 미만이면서 연간 매출액이 또는 연간 대차대조표 총액이 1천만유로 이하인 기업이며, 그 외의 기업을 중기업으로 간주
  - 직원 수는 해당 회계연도 전체 기간 동안 기업에서 전일제로 근무한 인원수를 대상으로 하여 연간 근로단위(AWU) 기준으로 계산
    - 1년 미만 근무자, 파트타임 근무자, 계절성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간 근로단위 기준으로 환산하여 직원 수 산출
    - 견습생, 직업훈련 계약을 체결한 학생,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의 직원은 직원 수에 미포함

<표 III-5> EU 권고 중소기업 규모 기준

기업 규모	직원 수	연간 매출액 또는 대차대조표 총액
초소기업(Micro)	10명 미만	매출액 200만유로 또는 대차대조표 합계 200만유로 이하
소기업(Small)	50명 미만	매출액 1,000만유로 또는 대차대조표 합계 1,000만유로 이하
중기업(Medium sized)	250명 미만	매출액 5,000만유로 또는 대차대조표 합계 4,300만유로 이하

자료: EU, 「Commission Recommendation of 6 May 2003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Text with EEA relevance) (notified under document number C(2003) 1422)」, OJ L 124, 2003. 5. 20., pp. 36-41.

- (독립성 기준) 중소기업 규모 기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파트너기업(partner enterprise) 또는 연결기업(linked enterprise)으로 분류되지 않는 독립기업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파트너기업은 기업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다른 기업의 자본 또는 의결권의 25%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의미
  - 연결기업은 다음의 관계가 존재하는 기업들을 의미
    -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조합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경우
    -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관리, 경영 또는 감독기구의 구성원 과반수를 임명 또는 해임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 한 기업이 계약이나 정관 또는 규약의 조항에 따라 다른 기업에 대해 지배적 영향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 경우
    - 한 기업이 다른 주주 또는 조합원과의 협약을 통해 다른 기업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파트너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의 지분 또는 의결권 비율에 따라 직원 수 및 회계자료를 비례적으로 합산하며 연결기업의 경우 100% 합산

## 라. 영국

- 영국 정부에서는 중소기업(SME)을 식별하기 위해 「조달법(The Procurement Act 2023)」의 section 123(1)에 명시되어 있는 지침을 사용<sup>26)</sup>
  - (규모 기준) 해당 지침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직원 수가 250명 미만이고 연간

매출액(Turnover)이 4,400만파운드 이하이거나 대차대조표 총액(Balance sheet total)이 3,800만파운드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간주

- 매출액은 기업이 정기적이고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해 발생시킨 연간 총수입(total annual income)에서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
  - 차감 항목에는 리베이트, 부가세 또는 기타 매출세, 자산 매각 이익, 배당금, 배당금, 이자 수입 등 비영업성 수익 등이 포함
- 대차대조표 총액은 기업의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을 합산한 총자산(total assets) 규모를 의미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
- 직원 수는 총 인원수(Headcount)가 아닌 정규직 기준으로 환산한 종업원 수로 산출(Full Time Equivalent, FTE)<sup>27)</sup>하며, 기업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 및 시간제 직원, 파견 인력, 소유 경영자 등이 포함
- (독립성 기준) 단일 기업이나 개인이 해당 기업의 자본이나 의결권의 25%를 초과 보유하지 않고 해당 기업도 타 기업의 자본 또는 의결권의 25%를 초과 보유하지 않은 경우 독립기업으로 간주
  - 연계기업(Linked) 또는 실질적 연결기업(Substantially connected)<sup>28)</sup>의 경우 별도의 기준으로 매출액, 직원 수 등을 계산해 중소기업 여부 평가
- 해당 중소기업 기준은 EU 지침에 근거한 법령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영국의 재무용어 체계 및 영국 화폐 가치에 맞춰 재정립

□ 영국 기업이 매년 기업등록청(Companies House)에 제출해야 하는 회계보고서에 대한 지침을 규정하고 있는 「영국 회사법 2006(Companies Act 2006)」에서는 중소기업의 다음과 같이 정의<sup>29)</sup>

26)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rocurement-act-2023-short-guides/supplementary-information-small-and-medium-sized-enterprises-definition-html#fn:2>, 검색일자: 2025. 5. 9.

27) 모든 근로시간을 정규직 기준 근로시간으로 나눈 비율로 직원 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주 40시간 근무가 정규직 기준인 경우 주 20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2명이라면 FTE는 1명

28) 연계기업은 단일 기업 또는 개인이 해당 기업의 25% 초과~50% 미만의 자본 또는 의결권을 보유하거나 해당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자본 또는 의결권을 25% 초과~50% 미만 보유한 경우를 의미하며, 실질적 연결 기업은 단일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기업의 자본 또는 의결권을 50% 초과 보유, 또는 해당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자본 또는 의결권을 50% 초과 보유한 경우를 의미

29)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life-of-a-company-annual-requirements/life-of-a-company-part-1-accounts#small-company>, 검색일자: 2025. 5. 12.

- 중소기업은 초소기업(Micro-entity), 소기업(Small companies), 중기업(Medium-sized company)으로 세분화
  - 초소기업은 연간 매출액 100만파운드 이하, 대차대조표 총액 50만파운드 이하, 평균 직원 수 10명 이하 중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 소기업은 연간 매출액 1,500만파운드 이하, 대차대조표 총액 750만파운드 이하, 평균 직원 수 50명 이하 중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 중기업은 연간 매출액 5,400만파운드 이하, 대차대조표 총액 2,700만파운드 이하, 평균 직원 수 250명 이하 중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 「영국 회사법 2006」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구분되지 않는 대기업(large)의 경우 전체 회계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필요
  - 초소기업과 소기업은 감사(audit)가 면제되고 초소기업의 경우 기업등록청에 제출해야 하는 이사보고서 및 손익계산서 제출도 면제

<표 III-6> 「영국 회사법 2006」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기준

기업 규모	매출액	대차대조표 총액	직원 수
초소기업(Micro)	100만파운드 이하	50만파운드 이하	10명 이하
소기업(Small)	1,500만파운드 이하	750만파운드 이하	50명 이하
중기업(Medium sized)	5,400만파운드 이하	2,700만파운드 이하	250명 이하

자료: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rocurement-act-2023-short-guides/supplementary-information-small-and-medium-sized-enterprises-definition-html#fn:2>, 검색일자: 2025. 5. 9.

- 영국의 연구개발 세액공제(R&D tax relief) 관련 중소기업 기준은 매출액 1억유로 이하, 대차대조표 총액 8,600만유로 이하, 직원 수 500명 이하 기준을 적용<sup>30)</sup>

#### 마. 프랑스

- 프랑스는 「중소기업진흥법(Loi n° 2005-882 du 2 août 2005 en faveur d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에서 중소기업 기준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규정((Règlement(CE) n° 70/2001, modifié par 364/2004)에 따라 정의한다고 규정<sup>31)</sup>

30) 영국 정부,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orporate-intangibles-research-and-development-manual/cird91900>, 검색일자: 2025. 5. 12.

31) 프랑스 정부,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00452052>, 검색일자: 2025. 5. 12.

- (규모 기준) EU 집행위원회 권고에 따른 규모 기준은 직원 수가 250명 미만이며 연간 매출액이 5천만유로 이하 또는 대차대조표 총액이 4천만유로 이하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간주
  - 세부적으로는 초소기업은 직원 수 10명 미만, 연간 매출액 또는 대차대조표 총액이 200만유로 이하인 기업을 의미
    - 소기업은 직원 수 50명 미만이면서 연간 매출액이 또는 연간 대차대조표 총액이 1천만유로 이하인 기업, 그 외의 기업은 중기업을 의미

〈표 III-7〉 EU 권고에 따른 프랑스 중소기업 규모 기준

기업 규모	직원 수	연간 매출액 또는 대차대조표 총액
초소기업(Micro)	10명 미만	매출액 200만유로 또는 대차대조표 합계 200만유로 이하
소기업(Small)	50명 미만	매출액 1,000만유로 또는 대차대조표 합계 1,000만유로 이하
중기업(Medium sized)	250명 미만	매출액 5,000만유로 또는 대차대조표 합계 4,300만유로 이하

자료: EU, 「Commission Recommendation of 6 May 2003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Text with EEA relevance) (notified under document number C(2003) 1422)」, OJ L 124, 2003. 5. 20., pp. 36-41.

- 직원 수는 해당 회계연도 전체 기간 동안 기업에서 전일제로 근무한 인원수를 대상으로 연간 근로단위(AWU) 기준으로 계산
  - 1년 미만 근무자, 파트타임 근무자, 계절성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간 근로단위 기준으로 환산하여 직원 수 산출
  - 견습생, 직업훈련 계약을 체결한 학생,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의 직원은 직원수에 미포함
- (독립성 기준) EU의 독립성 기준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규모 기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파트너기업(partner enterprise) 또는 연결기업(linked enterprise)으로 분류되지 않는 독립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바. 독일

- 독일의 연방통계청은 EU 권고(2003/361/EC)에 따라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을 정의
  - 규모 기준에서는 EU 권고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대차대조표 총액 기준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연간 매출액 기준만을 사용함

<표 III-8> 독일 중소기업 규모 기준

기업 규모	직원 수	연간 매출액
초소기업(Micro)	10명 미만	매출액 200만유로 이하
소기업(Small)	50명 미만	매출액 1,000만유로 이하
중기업(Medium sized)	250명 미만	매출액 5,000만유로 이하

자료: 독일 통계청, <https://www.destatis.de/DE/Themen/Branchen-Unternehmen/Unternehmen/Kleine-Unternehmen-Mittlere-Unternehmen/Glossar/kmu.html>, 검색일자: 2025. 7. 11.

## 사. 일본

- 일본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중소기업 범위 및 기본방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자’로 표기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는 기본적인 정책 대상을 규정한 것이며, 법률과 제도에 따라 범위가 상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中小企業者の範圍及び用語の定義)에 따르면, 중소기업자 범위를 회사 또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법」상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합동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 중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할 경우 중소기업으로 포함
  - 일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자 범위를 <표 III-9>와 같이 크게 네 가지 산업으로 나누어 정의
    - 제조업·건설업·운수업 및 기타, 도매업, 서비스업, 소매업으로 구분하여 자본 또는 투자규모(amount of capital or investment)와 정규직 직원 수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자로 규정
      - 정규직 직원은 2개월 이상 근무한 상시근로자(permanent employee) 또는 풀타임노동자(full-time worker)를 의미

- 일본의 소규모 기업자(小規模企業者)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5항에 따라 직원 수를 기준으로 판단
  - ① 정규직 직원 수가 20명 이하 개인이고, 도소매 및 서비스업을 제외한 공업 및 광업, 운송업에 속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거나 ② 정규직 직원 수가 5명 이하의 개인이고 도소매 및 서비스업에 속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소규모 기업자로 판단

〈표 III-9〉 일본의 중소기업 및 소규모기업 범위 구분

구분	중소기업		소규모기업
	자본금	직원 수	직원 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및 기타	3억엔 이하	300인 이하	20인 이하
도매업	1억엔 이하	100인 이하	5인 이하
서비스업	5천만엔 이하		
소매업		50인 이하	

자료: 일본, 「중소기업기본법」 참고해서 저자 작성

## 아. 중국

- 중국의 경우 중소기업을 「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 촉진법(中華人民共和國中小企業促進法)」 제2조에서 규정
  - 기업을 근로자 수, 매출액, 총자산 등을 기준으로 영세기업,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으로 구분
  - 업종 특성과 자산총액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중소기업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中小企業劃型標準規定)」을 따름<sup>32)</sup>
  - 업종의 경우 ‘국가표준 국민경제 업종분류’에 따라 9가지 업종으로 구분하며, 각 업종에 따라 근로자 수, 연간매출액, 자산총액 상한 등 기업 집단 분류 기준이 상이

32) 중국 재정부, 「关于印发中小企业划型标准规定的通知(工信部联企业〔2011〕300号)」, 2011,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44882&mid=a2020&board\\_id=18&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currentPage=1&pageCnt=10](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44882&mid=a2020&board_id=18&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currentPage=1&pageCnt=10), 검색일자: 2025. 3. 21.

<표 III-10> 중국의 기업 집단 분류 기준

구분	기준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영세기업
농림·목축 및 어업	매출액	2억위안 이상	500만~2억위안 미만	50만~500만위안 미만	50만위안 미만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300명~1,000명 미만	20명~300명 미만	20명 미만
공업	매출액	4억위안 이상	2,000만~ 4억위안 미만	300만~ 2,000만위안 미만	300만위안 미만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300명~1,000명 미만	20명~300명 미만	20명 미만
건설업	매출액	8억위안 이상	6,000만~8억위안 미만	300만~6,000만위안 미만	300만위안 미만
	총자산	8억위안 이상	5,000만~ 8억위안 미만	300만~ 5,000만 위안	300만위안 미만
도매업	매출액	4억위안 이상	5,000만~ 4억위안 미만	1,000만~ 5,000만위안 미만	1,000만위안 미만
	근로자 수	200명 이상	20명~200명 미만	5명~20명 미만	5명 미만
소매업	매출액	2억위안 이상	500만~2억위안 미만	100만~500만위안 미만	100만위안 미만
	근로자 수	300명 이상	50명~300명 미만	10명~30명 미만	10명 미만
교통 운수업	매출액	3억위안 이상	3,000만~3억위안 미만	200만~3,000만위안 미만	200만위안 미만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300명~1,000명 미만	20명~300명 미만	20명 미만
창고업	매출액	3억위안 이상	1,000만~3억위안 미만	100만~1,000만위안 미만	100만위안 미만
	근로자 수	200명 이상	100명~200명 미만	20명~100명 미만	20명 미만
우정업	매출액	3억위안 이상	2,000만~3억위안 미만	100만~2,000만위안 미만	100만위안 미만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300명~ 1,000명 미만	20명~300명 미만	20명 미만
숙박 및 요식업	매출액	1억위안 이상	2,000만~1억위안 미만	100만~2,000만위안 미만	100만위안 미만
	근로자 수	300명 이상	100명~300명 미만	10명~100명 미만	10명 미만
정보 통신업	매출액	10억위안 이상	1,000만~ 10억위안 미만	100만~1,000만위안 미만	100만위안 미만
	근로자 수	2,000명 이상	100명~2,000명 미만	10명~100명 미만	10명 미만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	매출액	1억위안 이상	1,000만~1억위안 미만	50만~1,000만위안 미만	50만위안 미만
	근로자 수	300명 이상	100명~300명 미만	10명~100명 미만	10명 미만

<표 III-10>의 계속

구분	기준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영세기업
부동산 개발업	매출액	20억위안 이상	1,000만~20억위안 미만	100만~1,000만위안 미만	100만위안 미만
	총자산	1억위안 이상	5,000만~1억위안 미만	2,000만~5,000만위안 미만	2,000만위안 미만
주택 및 부동산 관리업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300명~1,000명 미만	100명~300명 미만	100명 미만
	매출액	5,000만위안 이상	1,000만~ 5,000만위안 미만	500만~1,000만위안 미만	500만위안 미만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근로자 수	300명 이상	100명~300명 미만	10명~100명 미만	10명 미만
	매출액	12억위안 이상	8,000만~12억위안 미만	100만~8,000만위안 미만	100만위안 미만
기타	근로자 수	300명 이상	100명~300명 미만	10명~100명 미만	10명 미만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https://www.stats.gov.cn/english/Classifications%20methods/Classifications/200210/t20021016\\_72367.html](https://www.stats.gov.cn/english/Classifications%20methods/Classifications/200210/t20021016_72367.html);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44882&mid=a2020&board\\_id=18&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currentPage=1&pageCnt=10](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44882&mid=a2020&board_id=18&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currentPage=1&pageCnt=10), 검색일자: 2024. 3. 1.

- 조세우대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형영세기업<sup>33)</sup>이란 국가에서 규정한 제한업종 또는 금지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며,
  - ① 공업기업의 경우 각 사업연도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이 100만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자산총액이 30,00만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
  - ② 기타 기업의 경우 각 사업연도 과세대상소득금액이 100만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종업원 수가 8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자산총액이 1,000만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의미

#### 자. 요약 및 시사점

-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주요 국가는 정부지원, 세제 감면, 조달참여 등의 정책 대상 식별을 위해 중소기업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33) 유희림 외, 2019, p. 90.

-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 중국은 중소기업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의 경우 EU 위원회 규정을 준용
  - 조사 대상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종업원 수, 총자산 및 매출액 등의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구분
-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판정 시 활용되는 규모 기준으로 자산총액 및 매출액을 활용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종업원 수 기준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 미국, EU, 영국, 일본, 중국에서 매출액, 수입 등의 지표와 함께 종업원 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또한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은 업종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며, 미국을 제외한 조사 대상국에서 중소기업 기준 내에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으나 각 국가의 규모 기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면 대체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범위가 주요국에 비해 넓게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종업원 수 기준을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산 및 매출액 등 기준을 국가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sup>34)</sup>
    - 우리나라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하, 매출액 업종별로 400억~1,500억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에 해당
    - EU 중소기업 기준 권고를 준용하는 프랑스와 독일은 매출액이 약 794억(5,000만 유로) 이하 또는 대차대조표 합계가 약 683억원(4,300만유로) 이하이면서 직원 수가 250명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
      - 영국도 EU 기준에 근거한 중소기업 기준을 준용
    - 일본의 중소기업 기준은 업종에 따라 상이하나 자본금이 약 2,825억원(3억엔) 이하이거나 직원 수 300명 이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
    - 중국도 업종에 따라 상이하나 매출액 약 3,850억원 또는 총자산 약 1,540억원 미만, 근로자수 2,000명 미만일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

34) 환율은 2025년 6월 23일 기준 평균 환율(매매기준율) 적용(달러 1,381.54원, 파운드 1,854.58원, 유로 1,588.33원, 엔화 941.72원, 위안 192.53원)

〈표 III-11〉 주요국의 중소기업 기준 비교

구분	우리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근거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법」	· 「조달법」, 「회사법」	· 「중소기업진흥법」, EU 권고	· EU 권고	· 「중소기업기본법」	· 「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 촉진법」
업종별 기준	· 적용	· 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적용	· 적용
직원 수	· 미적용	· 업종별 100~1,500명 이하	· 250명 미만	· 250명 미만	· 250명 미만	· 업종별 50~300명 이하	· 업종별 20~2,000명 이하
자산	· 5천억원 이하	· 금융 및 보험업: 8억 5천만달러 이하	· 대차대조표 총액 3,800만(조달법), 2,700만(회사법) 파운드 미만	· 대차대조표 총액 4,300만유로 미만	· 자산 규정 미적용	· 업종별 자본금 5천만 ~3억엔 이하	· 건설업 8억위안, 부동산개발업 1억위 안 미만
매출	· 업종별 400~1,500억원 이하	· 업종별 평균 수입 225만~4,700만달러 이하	· 4,400만(조달법), 5,400만(회사법) 파운드 미만	· 5,000만유로 미만	· 5,000만유로 미만	· 매출 기준 미적용	· 업종별 500만~20억 위안 미만
원화 환산	· 매출액: 업종별 400~1,500억원 이하 · 자산: 5천억원 이하	· 평균수입: 업종별 약 31억~649억원 이하 · 자산 약 1조 1,743억 원 이하	· 매출액: 약 816억원 (조달법), 1,001억원 (회사법) 미만 · 대차대조표 총액: 약 705억원(조달법), 501억원(회사법) 미만	· 매출액: 약 794억원 미만 · 대차대조표 총액: 약 683억원 미만	· 매출액: 약 794억원 미만	· 자본금: 업종별 약 471억~2,825억원 이하	· 매출액: 약 10억~ 3,850억원 · 자산: 건설업 약 1,540억원, 부동산 개발업 192억원
소기업· 소규모	· 업종별 매출기준 하위 구간을 소기업으로 정의	· 구분하지 않음	· 「회사법」에서만 구분 : 매출액 1,500만파 운드 이하, 대차대조 표 총액 750만파운 드 이하, 직원 수 50명 이하 중 두 가지 기준 충족 기업	· 직원수 50명 미만, 매출액 또는 대차대 조표 합계 1,000만유로 이하 기업	· 직원수 50명 미만, 매출액 이하 1,000만 유로 이하 기업	· 업종별 직원수 5~ 20명 이하의 기업	· 업종별 매출 또는 총자산 기준 하위 구간을 소기업으로 정의

주: 환율은 2025년 6월 23일 기준 평균 환율(매매기준율) 적용(달러 1,381.54원, 파운드 1,854.58원, 유로 1,588.33원, 엔화 941.72원, 위안 192.53원)

자료: 국가별 정부 홈페이지 참조로 저자 작성

## 2. 해외 주요국의 조세지원 제도 및 법인세율 체계

### 가. 해외 주요국의 조세지원 제도

#### 1) 미국

- 미국은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액공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대부분의 공제제도는 규모 중립적으로 운영되며 중소기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
  - 법인세율은 기존 누진세율 체계가 2017년 이후 21%의 단일세율 체제로 개편되어 현재까지 유지
  
- 다음에서는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 투자 조세지원(감가상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논의

#### 가)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

- 미국의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① 일반연구세액공제(Regular Research Credit, RRC) ② 대체간편세액공제(Alternative Simplified Credit, ASC) ③ 에너지연구세액공제(Energy Research Credit, ERC) ④ 기초연구세액공제(Basic Research Credit, BRC)로 구성
  - 일반연구세액공제와 대체간편세액공제는 수혜 대상자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 적용 가능
    - 두 가지 공제방식 모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적격지출에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지만 일반공제는 고정기준을 적용하고 대체간편세액공제는 이동평균 기준을 적용
  - 에너지연구세액공제와 기초연구세액공제는 기초연구와 에너지연구에 투자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일반연구세액공제 또는 대체간편세액공제에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공제방식
  
- 일반연구세액공제는 기준금액(base amount)을 초과하는 적격연구비지출(Qualified

Research Expenditures, QREs)에 2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 1989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기준금액(base amount)은 이전 4년 동안의 평균 연간 총수입에 납세자의 고정비율을 곱해서 산출<sup>35)</sup>
  - 기존 기업(established firms)의 고정비율은 1983년 12월 31일 이후부터 1989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 동안의 총수입 대비 적격연구비지출의 비율
    - 기존 기업은 1984년부터 1988년까지의 과세연도 중 최소 3년 동안 총수입과 적격연구비지출이 발생한 기업을 의미
  -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적격연구비지출과 총수입이 발생한 기업 또는 1984년부터 1988년까지의 과세기간 중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총수입과 적격연구비지출이 발생한 기업은 별도의 방식으로 고정비율을 산출
  - 기준금액은 기업의 정상적인 연구비 투자수준 또는 기대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소 기준금액은 당해 연도 적격연구개발비의 50%
  - 고정비율은 최대 16%

□ 대체간편세액공제(Alternative Simplified Credit, ASC)는 직전 3년 평균의 50%를 초과하는 당해 연도 적격연구비지출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sup>36)</sup>

- 산출식은 (당해 연도 적격연구비지출 - 직전 3년 평균 적격연구비지출 × 50%) × 14%
- 직전 3년간 적격연구비지출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적격연구비지출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 기초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상업적 목적이 없는 과학적 지식진보를 위한 기초연구<sup>37)</sup>를 수행하는 적격기관에 적용

- 세액공제 규모는 적격기관 기본비용(qualified organization base period amount)을 초과하는 기초연구지불액(basic research payment)에 2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출
  - 적격기관 기본비용은 최소기초연구비용(minimum basic research amount)에 유지보수액(maintenance-of-effort amount)을 합산한 금액

35) IRS §41(c)(3)

36) IRS §41(c)(4)

37) IRS §41(e)(2)(A)

- 기초연구지불액은 해당 과세연도 동안 기업이 기초연구를 위해 적극적인 조직에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의미

- 특정에너지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공익을 위한 에너지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IRC §501(a)에 따라 과세가 면제된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s)에 지불하는 적격연구비의 20%를 세액공제<sup>38)</sup>
  - 대학(colleges, universities), 연방연구실(federal labs), 납세자가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의 과반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 소기업(small firms)에 지불하는 적격연구비에 대해서 청구
- 연구개발비 증가분이 있으나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려운 소규모 창업기업(Start-ups)의 경우 소득세 대신 급여세(Payroll withholding tax, PWHT)에서 환급 신청 가능
  - 소규모 창업기업은 과거 과세연도 기간이 5년 미만이고 당해 연도 총수입액이 500만달러 미만인 기업<sup>39)</sup>
  -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금액은 50만달러이며 급여세 중 사회보장세의 고용주부분에 한해서 적용
- 즉 미국은 연구개발 세액공제에 있어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지 않지만, 소규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환급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일부 우대

#### 나) 투자 관련 조세지원

- 미국은 민간의 투자 지원을 위해 Section 179 공제(Deduction)와 특별 감가상각공제(Special Depreciation Allowance), 수정 가속상각제도(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 MACRS)를 병행하여 운영<sup>40)</sup>
  - 공제순서는 Section 179 공제, 특별 감가상각 공제, MACRS로 한도에 따라 Section 179 공제 적용 후 잔여 기준가에 대해 특별 감가상각 공제, MACRS를 추가 적용

38) Tax foundation, "Reviewing the Federal Tax Treatment of Research & Development Expenses," 2021, p. 4.

39) <https://stip.oecd.org/innotax/incentives/USA1>의 Definition of young company 참조

40) 미국 IRS, [https://www.irs.gov/publications/p946#en\\_US\\_2024\\_publink1000107523](https://www.irs.gov/publications/p946#en_US_2024_publink1000107523), 검색일자: 2025. 7. 16.

- Section 179 공제는 사업 목적으로 구입한 적격자산에 대해 자산을 사용한 해에 전부 또는 일부를 비용 공제(deduction)하는 제도로 감가상각을 통해 점진적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대신 한 번에 비용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
  - (적격자산) 기계 및 장비 등의 유형의 개인 자산, 제조·생산·추출 등에 필수로 사용되는 자산, 연구시설 및 대량의 동질 상품 저장용 시설, 컴퓨터 소프트웨어, 적격 부동산 등으로 비교적 광범위하게 규정
  - (공제 한도) 일반적으로 적격자산의 취득 비용 전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금액 한도(Dollar Limits)와 사업소득 한도(Business Income Limit)를 적용
    - 금액 한도는 2024년 과세연도 기준 122만달러이며 122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한 여러 자산에 대해 자유롭게 나눠서 공제 가능하지만, 자산 총액이 305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큼 공제한도가 감소
      - 즉 연간 투자금액이 427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비용공제 혜택 수혜가 불가
    - 또한 금액 한도를 적용한 총공제액은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소득 한도로 인해 공제 불가능한 금액은 이월 가능
  - Section 179 공제는 규정상 대기업을 정책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지만 연간 투자금액이 증가할수록 비용처리 한도가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있어 영세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들을 일부 우대하는 구조<sup>41)</sup>
- 특별 감가상각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사용 개시된 적격자산의 비용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추가적인 공제
  - 자산을 사용 개시한 해에 MACRS에 따른 일반 감가상각 계산 전에 Section 179 공제 후 받을 수 있는 추가 공제
  - (적격자산 및 공제율) 재사용 및 재활용 적격자산(Qualified reuse and recycling property), 2017년 9월 27일 이후에 취득한 특정 적격자산, 열매 및 견과류가 열리는 특정 식물이 공제 가능 자산에 해당
    - 재사용 및 재활용 적격자산은 재사용 또는 재활용 가능한 자재를 수집·유통·재활용하는 데 전용으로 사용되는 장비와 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50%의 특별 감가상각공제 청구 가능
      - ① MACRS에 따라 감가상각<sup>42)</sup> ② 내용연수 5년 이상 ③ 2008년 8월 31일

41) 이상엽·김빛마로·홍우형·윤성만,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42) 대체 감가상각 제도(Alternative Depreciation System, ADS)로 감가상각 해야 하는 자산은 포함되지 않음.

이후 구매 및 최초 사용

- 2017년 9월 27일 이후 취득하여 2024년에 사용 개시한 자산에 대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 자산은 60%, 장기 생산 자산 및 일부 비상업용 항공기는 80%의 공제율을 적용
  - ① MACRS에 따라 감가상각되며 내용연수 20년 이하인 유형자산 ② IRC 제167(f)(1)조에 정의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③ 수도시설 자산 및 적격 영화·TV·연극 제작물 등
- 2024년에 심거나 접목한 열매 및 견과류 식물에 대해서는 60%의 특별 감가상각공제를 적용

- MACRS는 1986년 이후 사용 개시된 대부분의 사업 및 투자용 자산의 기준가를 회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감가상각제도로 일반 감가상각(General Depreciation System, GDS)과 대체 감가상각(Alternative Depreciation System, ADS)으로 구분
  - 일반 감가상각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되 다음과 같이 법률상 자산의 대체 감가상각이 의무화되어 있거나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대체 감가상각 적용
    - 특정 부동산 사업 법인이 보유한 비주거용 부동산 및 주거용 임대 부동산, 면세 용도의 부동산, 면세 채권 자금조달 자산, 무역 제한이나 차별적 행위 등으로 인해 대통령 행정명령이 발효 중인 국가에서 수입한 자산 등
  - 일반 및 대체 감가상각의 내용연수는 IRS 출판물 946의 부록 B의 Class Lives and Recovery Periods에서 표로 제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체 감가상각이 일반 감가상각보다 긴 내용연수 기간을 적용

#### 다) 고용 관련 조세지원

- 미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 관련 조세지원 제도로 장애인고용세액공제와 소규모 사업자 건강보험 세액공제 등을 운영
- 장애인고용세액공제(Disabled Access Credit, DAC)<sup>43)</sup>는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근로

43)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tax-benefits-for-businesses-who-have-employees-with-disabilities>, 검색일자: 2024. 5. 22.

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설, 장비, 서비스 등을 개선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

- (적격 대상) 전년도 매출 100만달러 이하 또는 전년도 정규직 직원이 30명 이하인 소규모 기업이 대상
- (적격 비용) 장애인을 위한 장비 또는 장치 구입 및 개조, 청각 장애인을 위한 오디오 자료, 시각 장애인을 위한 시각 자료 등과 관련된 250달러 초과분부터 10,250달러까지의 지출 비용
- (공제율 및 한도) 공제율은 적격 비용의 50%이며 최대 5,000달러까지 공제 가능

□ 소규모 사업자 건강보험 세액공제(Small Business Health Care Tax Credit)는 소기업 고용주가 정규직 근로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보험료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고용주가 부담하는 경우 고용주 부담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하는 제도

- (적격대상) 종업원 수가 25명 미만이고 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이 56,000달러 이하인 기업 중에서 SHOP Marketplace를 통해 인증된 건강보험에 가입 후 해당 보험에 대한 정규직 근로자 보험료의 최소 50% 이상을 고용주가 부담하고 있는 기업
- (공제율) 소기업 고용주는 납부한 보험료의 50%, 세금 면제 비영리 고용주의 경우 납부 보험료의 35%를 세액공제하며, 해당 세액공제는 연속된 2개의 과세연도 동안에만 혜택을 부여<sup>44)</sup>
-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 세금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경우 과세 이전 또는 이월(carry back or forward)이 가능하며, 고용주가 납부한 보험료 총액이 세액공제액보다 많은 경우 공제받지 못한 초과 금액은 사업비용으로 공제 가능

## 2) 영국

□ 영국은 연구개발 세액공제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 별도의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외 투자 관련 지원에서는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이 없는 것으로 파악

44) 예를 들어 2023년, 2024년 연속 두 해 받았으면 2025년에는 수령 불가

#### 가)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

- 영국은 민간의 혁신 활동 지원을 위해 기업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은 연구개발에 대한 공제(Corporation Tax Credit for Research&Development), 대기업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Credit, RDEC) 제도를 운영
  - 중소기업은 직원이 500명 이하이면서 매출이 1억유로 이하 또는 자산이 8,600만 유로 이하인 기업을 의미
  
- 대기업 연구개발비세액공제(RDEC)의 세액공제율은 2016년 도입 당시 11%에서 2023년 4월1일부터 20%로 확대되었으며, 공제 한도는 미적용
  - 세액공제율은 2015년 11%, 2018년 12%, 2020년 13%에서 2023년 20%로 상향 조정하는 추세
  
- 중소기업은 연구개발에 대해 총 186%의 소득공제 허용<sup>45)</sup>
  - 중소기업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모든 종업원에 대한 원천징수 및 국가보험부담금 납부금액을 한도로 포기 가능 손실(surrenderable loss)<sup>46)</sup>의 10%를 환급(refund) - 총지출에서 연구개발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상일 경우 포기 가능 손실의 14.5%까지 환급(refund) 허용

#### 나) 투자 관련 조세지원

- 영국은 투자에 대해 감가상각이나 세액공제보다는 자본적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sup>47)</sup>
  - 자본공제 대상은 기업이 사업목적으로 구입한 장치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표 III-12>의 설비 및 기계(plant and machinery)
  - 자본공제 종류는 연간투자공제(Annual investment Allowance, AIA), 감가상각 공제(Writing Down Allowances, WDA), 초년도 100% 공제(100% first-year allowances),

45) 영국 정부, <https://www.gov.uk/guidance/corporation-tax-research-and-development-tax-relief-for-small-and-medium-sized-enterprises>, 검색일자: 2025. 7. 16.

46) 포기 가능한 손실이란 공제되지 않은 사업결손금과 적격 연구개발비의 86% 중 작은 금액, [tps://www.ov.uk/hmrc-internal-manuals/corporate-intangibles-research-and-development-manual/cird90500](https://www.ov.uk/hmrc-internal-manuals/corporate-intangibles-research-and-development-manual/cird90500), 검색일자: 2024. 3. 28.

47) 영국 정부, <https://www.gov.uk/capital-allowances>, 검색일자: 2025. 7. 17.

슈퍼공제와 50% 특별 비율 첫째 비용 공제(The super-deduction and 50% special rate first-year allowance), 전액공제 및 50% 1년차 공제(Full expensing and 50% first-year allowance) 등이 있음

- 연간투자공제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

<표 III-12> 영국의 자본공제 가능 자산 및 불가 자산

자본공제 가능 자산(기계 및 설비)	자본공제 불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에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 전반</li> <li>- 설비와 기계의 철거비용</li> <li>- 건물의 통합기능(integral features): 엘리베이터, 에어컨, 급수·배수시스템, 전기 시스템 등</li> <li>- 고정설비: 불박이 주방, 욕실세트, 화재경보기 시스템 등</li> <li>- 기계 및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건물 개조 비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 자산</li> <li>- 건물의 상하수도 시스템</li> <li>- 토지 및 구조물(ex. 다리, 도로 부두 등)</li> <li>- 접대로 사용되는 자산(ex. 노래방기계, 요트 등) 다리, 도로, 부두 등의 구조물</li> </ul>

자료: 영국 정부, <https://www.gov.uk/capital-allowances/what-you-can-claim-on>, 검색일자: 2025. 7. 16.

- 일반적으로 일부 자산을 제외한 장비 및 기계 등에 대해서 100만파운드까지 공제가 가능한 연간투자공제를 적용
  - 법인,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등 모든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에 여러 자산을 구입한 경우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분배하여 공제 가능
  - 연간투자공제의 한도를 초과하였거나 사업용 차량,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소유하고 있었던 자산, 증여받은 자산 등의 공제 제외 대상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공제(WDA)를 적용

<표 III-13> 영국 연간투자공제(AIA)의 연도별 공제 한도

기간	공제한도
2019년 1월 1일~	100만파운드
2016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20만파운드
2014년 4월 1일~2015년 12월 31일	50만파운드
2013년 1월 1일~2014년 3월 31일	25만파운드
2012년 4월 1일~2012년 12월 31일	2만 5천파운드

자료: 영국 정부, <https://www.gov.uk/capital-allowances/annual-investment-allowance>, 검색일자: 2025. 7. 16.

- AIA를 적용할 수 없는 장비, 기계이거나 AIA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감가상각 공제를 활용하며, 감가상각 공제는 특정 자산의 가치 일부를 매년 일정 비율로 세전 이익에서 공제
  - 감가상각 공제는 공제 자산을 일반 자산군(Main pool)과 특별 자산군(Special rate pool)으로 구분하여 자산군에 따라 별도의 연간 공제율을 적용
    - 일반 자산군은 특수 자산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계 및 설비가 해당되며 18%의 공제율 적용
    - 특별 자산군은 건물의 통합기능, 내용연수 25년 이상 자산, 태양광 패널, 단열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차량 등이며 6%의 공제율 적용
  
- 새 제품인 특정 기계 및 장비에 대해서는 구매한 해에 전체 구매 비용에 대해서 초년도 100% 공제 청구 가능
  - 적용 대상은 전기 자동차 및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자동차, 가스 충전소용 기계 및 설비, 제로 배출 화물차량, 전기 자동차 충전소용 장비 등이며, 해당 자산의 전체 비용을 세전 이익에서 즉시 공제
  - 동일한 지출에 대해 AIA와 초년도 100% 공제는 동시 적용 불가
  
- 2021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구매한 새 제품의 특정 플랜트 및 기계류에 대해서는 슈퍼공제와 50% 특별 비율 첫해 비용 공제 청구 가능<sup>48)</sup>
  - 슈퍼공제는 감가상각 공제의 일반 자산군에 대해서 세전 이익에서 지출 비용의 최대 130%까지 공제
  - 50% 특별 비율 첫해 비용 공제는 감가상각 공제의 특별 자산군에 대해서 세전 이익에서 비용의 50%를 공제
    - 특별 자산군은 첫해에 50%의 비용 공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공제에 의해 매년 6%씩 공제
  - 두 공제는 법인(company)만 청구 가능하며 개인사업자 또는 파트너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2023년 4월 1일부터 구매한 새 제품의 특정 플랜트 및 기계류에 대해서는 전액공제 및 50% 1년차 공제 적용

48) 영국 정부, <https://www.gov.uk/capital-allowances/temporary-first-year-allowances>, 검색일자: 2025. 7. 16.

- 감가상각 공제의 일반 자산군은 전액 공제, 특별 자산군은 50% 1년차 공제를 적용
  - 특별 자산군은 첫해에 50%의 비용 공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공제에 의해 매년 6%씩 공제
- 법인만 청구 가능하며 개인사업자 또는 신탁(trust)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표 III-14> 영국의 자본공제제도 종류 및 주요 내용

구분	적용대상	공제 자산	공제율	공제한도
연간투자공제 (AIA)	- 개인, 법인 포함 모든 사업체	- 대부분의 장비 및 기계	- 한도 내에서 최대 100%	- 연 100만파운드
감가상각공제 (WDA)	- 개인, 법인 포함 모든 사업체	- 대부분의 자산	- 일반자산군 18% - 특수 자산군 6%	- 한도 없음
초년도 100% 공제	- 개인, 법인 포함 모든 사업체	- 친환경자동차 등	- 100%	- 한도 없음
슈퍼공제와 50% 특별비용 첫해 비용 공제	- 법인만 가능	- 2021. 4.~2023. 3. 구 매한 일반 자산군 및 특별 자산군	- 일반자산군 130% - 특수자산군 첫해 50%	- 한도 없음
전액 공제 및 50% 1년차 공제	- 법인만 가능	- 2023. 4. 이후 구매한 일반 자산군 및 특별 자산군	- 일반자산군 100% - 특수자산군 첫해 50%	- 한도 없음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 내용 바탕으로 저자 작성(<https://www.gov.uk/capital-allowances>, 검색일자: 2025. 7. 17.)

### 3) 프랑스

- 프랑스는 연구개발 지원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제도를 두고 있으며, 기타 투자 관련 지원에서도 규모가 작은 기업을 일부 우대
  - 중소기업 혁신세액공제를 통해 시제품 설계 및 신제품 시범 설비 지출 중소기업을 지원하며,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신생 혁신기업(JEI) 및 대학기업(JEU)에 대해서는 설립 첫 번째 회계연도에 법인세 100%를 공제
  - 그 외에도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수행 중소기업 세액공제, 녹색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중소기업에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

가)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

- 프랑스의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연구개발 세액공제(Crédit d'Impôt Recherche, CIR), 중소기업 혁신 세액공제(Crédit d'impôt Innovation, CII), 신생 혁신기업(JEI) 및 대학기업(JEU)에 대한 세액공제 및 사회보장비용 면제제도로 구성
  - 연구개발세액공제는 산업·상업·농업회사 중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에 비용을 지출한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sup>49)</sup>
  - 중소기업 혁신세액공제는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보완하는 제도로 시제품 설계 및 신제품 시범 설비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제도
  -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신생 혁신기업(JEI) 및 대학기업(JEU)에 대한 세액공제 및 사회보장비용 면제 제도는 다음의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 혜택과 사회보장부담금 감면 혜택 부여<sup>50)</sup>
    - 신생 혁신기업은 인수합병 및 회생기업이 아닌 창업에 의해 설립한 지 8년 미만인 중소기업 중 총지출의 최소 15%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
      - 중소기업은 직원이 250명 이하이면서 매출이 5천만유로 이하 또는 자산이 4,300만유로 이하인 기업을 의미
    - 신생 대학기업은 인수합병 및 회생기업이 아닌 창업에 의해 설립한 지 8년 미만인 중소기업 중 학생,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지 5년 미만인 자, 교육 또는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최소 10% 이상인 기업
    - 또한 해당 기업은 기존의 연구활동이나 연구의 확장 및 인수가 아닌 새로운 활동을 수행할 때 세제혜택 수혜 가능
- (연구개발세액공제) 연구개발세액공제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세액공제율은 기업이 위치한 지역과 연구개발비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프랑스 내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 1억유로 이하 지출에 대해서는 30%, 1억유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5%의 공제율 적용
    - 해외령(départements d'outre-mer, DOM)에 위치한 기업 투자 시 연구개발비 1억 유로 이하 지출은 50%, 1억유로 초과분은 5%의 공제율 적용
  - 세액공제는 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적용되며 공제금액이 납부해야 할 세

49) 프랑스 정부, 「연구개발 세액공제(Crédit d'Impôt Recherche, CIR)」, <https://entreprendre.service-public.fr/vosdroits/F23533>, 검색일자: 2025. 7. 18.

50) 프랑스 정부, <https://entreprendre.service-public.fr/vosdroits/F31188?lang=en>, 검색일자: 2025. 7. 18.

액보다 많은 경우 향후 3년간 이월 가능

- 3년 후에도 세액공제액이 남아 있는 경우 기업에 환급
- 설립 2년 이내의 신규 기업, 신생 혁신기업, 조정·보호절차 중인 기업, 법정관리·청산 중인 기업 등은 즉시 환급 요청 가능
- 공제 상한은 없으며 하도급 연구개발(Subcontracted R&D) 지출 비용의 경우 기업당 1천만유로까지만 연구개발비로 산입

□ (중소기업 혁신세액공제) 중소기업 혁신세액공제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sup>51)</sup>
  - 프랑스 내 30%, 해외령은 6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며, 코르시카 지역의 경우 직원이 50명 미만, 매출 또는 총자산이 1천만유로 미만의 소규모 중소기업은 40%, 그 외 중소기업은 35% 적용
- 세액공제는 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적용되며 공제금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향후 3년간 이월 가능
  - 3년 후에도 세액공제액이 남아 있는 경우 기업에 환급
  - 설립 2년 이내의 신규 기업, 신생 혁신기업, 조정·보호절차 중인 기업, 법정관리·청산 중인 기업 등은 즉시 환급 요청 가능
- 중소기업 혁신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은 40만유로를 초과할 수 없음
  - 즉 세액공제 한도는 40만유로에 기업이 적용받는 세액공제율을 곱한 금액

□ (신생 혁신기업 및 대학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사회보장비용 면제제도)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신생 혁신기업 및 대학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사회보장비용 면제 제도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설립 첫 번째 회계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0% 면제하고 두 번째 회계연도는 50% 면제
  - 본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 제도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설된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설 기업에는 미적용
- 7년간 소유 빌딩에 대한 재산세 및 토지부담금 면제, 사회보장기여금 및 가족수당 면제

51) 프랑스 정부, <https://entreprendre.service-public.fr/vosdroits/F35494>, 검색일자: 2025. 7. 18.

- 사회보장기여금 및 가족수당 면제는 직원의 월 급여가 7,951.12유로 미만이어야 하며 연간 총 면제 상한은 231,840유로
- 사회보장기여금 및 가족수당은 급여가 연구 엔지니어, 기술자,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자 등에게 지급되는 경우 면제 가능

#### 나) 투자 관련 조세지원

-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수행 중소기업 세액공제(Crédit d'impôt pour la rénovation énergétique des TPE/PME)<sup>52)</sup>는 중소기업이 자사 업무용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작업을 수행할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제도
  - (공제대상) 프랑스 소재 중소기업이 건축 완료 후 2년 이상 경과한 업무용 건물 개조 시 해당 비용에 대해 공제가 가능
  - (공제율)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사무실, 창고 등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지출 중 세전가격 기준 30%, 최대 25,000유로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
    - 세액공제액이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환급 가능
- 녹색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C3IV)는 2024년 세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에너지 전환에서 핵심적인 배터리, 풍력발전, 태양광 패널, 히트펌프의 4개 사업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녹색산업을 장려하는 제도<sup>53)</sup>
  - (공제대상) 프랑스 내 위치한 산업 또는 상업기업으로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발전기, 히트펌프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투자 지출을 하는 기업이 해당
  - (공제활동)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활동은 4개 분야 장비의 직접 생산, 장비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 핵심부품 생산, 핵심부품 생산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의 생산 및 재활용을 위한 유·무형 자산 관련 투자 활동
  - (공제율) 공제율은 기업 규모와 투자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일반 지역의 경우 소기업 40%, 중기업 30%, 일반기업 20%의 공제율 적용
    - AFR(Zone d'Aide à Finalité Régionale)은 지역 간 경제 격차 해소, 고용 창출,

52) <https://entreprendre.service-public.fr/vosdroits/F35585>, 검색일자: 2025. 7. 18.

53) 프랑스 정부, <https://www.economie.gouv.fr/entreprises/credit-impot-investissements-industrie-verte-C3IV#>, 검색일자: 2025. 7. 18.

- 산업 유치를 위해 EU의 국가보조금 규정에 따라 설정한 지역으로, 지원 규모에 따라 AFR A와 AFR C로 구분하고 A에 더 높은 공제율 적용
- 세액공제 한도는 기업당 최대 1억 5천만유로이며, AFR 지역에 대해서는 C지역 2억유로, A지역 3억 5천만유로로 상향된 공제 한도 적용

〈표 III-15〉 기업 집단별 투자세액공제 비율 비교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일반 지역	40%	30%	20%
AFR C 지역	45%	35%	25%
AFR A 지역	60%	50%	40%

자료: 프랑스 정부, <https://www.economie.gouv.fr/entreprises/credit-impot-investissements-industrie-verte-C3IV#>,  
검색일자: 2025. 7. 18.

#### 4) 독일

- 독일은 투자 관련 조세지원에서 일부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에서는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이 없는 것으로 파악
  - 독일은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주로 연구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조세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투자에 대해서는 가속상각 혜택을 부여<sup>54)</sup>

##### 가)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

- 독일은 2019년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세금 지원에 관한 법률인 연구 수당법 (FZuG)」이 통과됨에 따라 2020년부터 연구개발세액공제제도(Steuerliche Förderung von Forschung und Entwicklung, FuE)를 운영<sup>55)</sup>
  - 연구개발세액공제 공제율은 25%이며, 자체 연구개발과 달리 위탁연구는 위탁 계약 비용의 60%에 대해서 세액공제율을 적용
  - 공제한도는 최대 적격 연구개발비 200만유로에 공제율 25%를 적용해 50만유로가 한도로 설정되어 있지만, 2020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연구

54) Pwc, <https://taxsummaries.pwc.com/germany/corporate/tax-credits-and-incentives>, 검색일자: 2025. 7. 21.

55) 독일 경제부,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Web/DE/Themen/Steuern/Steuerliche\\_Themengebiete/Forschungszulage/forschungszulage.html](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Web/DE/Themen/Steuern/Steuerliche_Themengebiete/Forschungszulage/forschungszulage.html), 검색일자: 2025. 7. 21.

개발 지출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연구개발 지출 상향으로 한도를 100만 유로로 상향

- 공제금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다음 연도까지 이월 가능하고 다음 연도에도 세액공제액이 남아 있는 경우 기업에 즉시 환급<sup>56)</sup>
- 기업별로 세액공제 및 조세지원을 포함한 R&D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총액은 1,500만유로 초과 불가
-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율에 차등은 없지만, 공제 한도 및 기업별 정부 지원 혜택 상한을 설정하여 규모가 큰 기업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

#### 나) 투자 관련 조세지원

- 독일은 투자 지원을 위해 저가 자산(Geringwertige Wirtschaftsgüter, GWG)에 대해 즉시전액비용처리(Sofortabschreibung) 또는 공동감가상각을 허용<sup>57)</sup>
  - 즉시전액비용처리는 취득가액 또는 제조원가가 개별 자산당 8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산은 취득·제조·자산의 사업상 편입·사업 개시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전액을 사업비용(Betriebsausgabe)으로 공제 가능
  - 공동감가상각은 개별 자산당 250~1,000유로의 여러 자산에 대해 자산의 취득·제조·자산의 사업상 편입·사업 개시 연도에 일괄 계정(Sammelposten)으로 처리 가능
    - 일괄 계정은 해당 사업연도와 그 후 4개 사업연도 동안 매년 20%씩 손금으로 산입
- 또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연소득 20만유로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공제 및 특별감가상각(Investitionsabzugsbeträge und Sonderabschreibungen zur Förderung kleiner und mittlerer Betriebe) 제도를 운영
  - 투자공제는 미래에 취득 예정인 설비자산 예상 취득가액의 최대 50%를 비용 처리하도록 하는 선공제 개념의 제도
  - 취득 예정 설비자산은 실제로 취득 이후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국내 사업장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업목적에 의해 사용되거나 임대되어야 함

56) 독일 재무부 월간동향,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Monatsberichte/2020/04/Inhalte/Kapitel-3-Analysen/3-3-steuerliche-foerderung-forschung-entwicklung.html>, 검색일자: 2025. 7. 21.

57) [https://www.gesetze-im-internet.de/estg/\\_6.html](https://www.gesetze-im-internet.de/estg/_6.html), 검색일자: 2025. 7. 21.

- 공제 한도는 공제 회계연도 및 그 이전 3개 연도의 4개 회계연도를 합산해 1개 사업체당 20만유로를 초과할 수 없도록 설정
- 자산을 실제로 취득한 회계연도에는 공제를 통해 차감한 금액을 이익 증가 항목으로 복귀 처리한 후 취득가액의 나머지 50%를 일반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따라 비용 처리
  - 50%를 선공제한 금액이 공제 회계연도 이후 3개 회계연도 말까지 복귀 처리되지 않는 경우 공제는 소급 적용해 취소
- 특별감가상각을 통해 자산을 취득한 해 또는 4년간 분할하여 일반 감가상각 외에 추가로 최대 40%까지 특별 감가상각을 제공<sup>58)</sup>

## 5) 일본

- 일본은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 투자 관련 세액공제,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운영 중이며,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을 포함
  - 연구개발과 투자 지원을 위해 소규모 기업에만 적용되는 중소기업기술기반강화세제형 실험연구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경영강화세제, 중소기업 투자촉진세제 등을 운영
  - 또한 고용 지원을 위한 임금인상촉진세제에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혜택을 우대

### 가)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

- 일본의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실험연구비 총액을 기준으로 실험연구비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액에서 공제
  - 일반적인 실험연구비에 대한 실험연구비 세액공제제도와 특별실험연구비에 대한 특별실험연구비 세액공제제도로 구분
    - 특별실험연구비는 대학 등과 공동·위탁 연구한 실험연구비를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실험연구비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혜택을 부여
  - 실험연구비 세액공제는 적용 대상 법인이 중소기업 등인지 여부에 따라 다시

58) 중소기업이 10만유로 장비의 구입을 계획한 경우 투자공제를 통해 미리 5만 유로(50%) 공제 후 장비 취득 시점에 5만 유로를 다시 수익에 반영 한 후 특별감가상각으로 최대 4만유로 추가 공제

‘일반형’과 ‘중소기업기술기반강화세제형’으로 분류하며, 기업 규모 및 조건에 따라 둘 중 하나의 제도를 선택 적용

- 일반형 시험연구비와 중소기업기술기반강화세제형 시험연구비에 포함된 시험연구비는 특별시험연구비와 중복 적용 불가

□ (실험연구비 세액공제: 일반형) 일반형 실험연구비 세액공제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반형 공제율은 지출한 실험연구비 총액기준으로 1~14%이며, 증감실험연구비 비율의 12% 초과 여부에 따라 상이한 세액공제율 계산식을 적용<sup>59)</sup>
- 증감실험연구비는 아래와 같이 정의<sup>60)</sup>

$$\frac{(\text{해당 과세연도 실험연구비} - \text{과거 3년 이내 각 사업연도의 평균 실험연구비})}{\text{과거 3년 이내 각 사업연도의 평균 실험연구비}}$$

- 증감실험연구비 비율에 따라 공제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
  - (a) 증감실험연구비 비율 12% 초과:  $11.5\% + (\text{증감실험연구비 비율} - 12\%) \times 0.375$ , 최대 14%
  - (b) 증감실험연구비 비율 12% 미만:  $11.5\% - (12\% - \text{증감실험연구비 비율}) \times 0.25$ , 최소 1%
  - (c) 해당 과세연도가 설립연도이거나 비교 대상이 되는 기존 실험연구비가 0인 경우: 8.5%
- 매출 대비 실험연구비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위의 공제율에 공제할증율을 적용
- 세액공제 한도는 법인세액의 25%를 원칙으로 하되, 증감실험연구비 비율, 매출 대비 실험연구비 비율 등에 따라 증감된 한도를 적용
- 본 제도는 중소기업기술기반강화세제형 제도와 중복 적용 불가

□ (실험연구비 세액공제: 중소기업기술기반강화세제형) 중소기업기술기반강화세제형 실험연구비 세액공제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제율은 증감실험연구비 비율에 따라 12~17%를 적용

59) 일본 경제산업성 산업기술환경국, 「研究開発税制の概要と令和5年度税制改正について」, 2023.

60)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270.htm>, 검색일자: 2025. 7. 21.

- 본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인은 청색신고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자 또는 농업협동조합<sup>61)</sup>
    - 세부적으로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1억엔 이하인 법인,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없는 법인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00명 이하인 법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00명 이하인 개인사업주 등이 해당<sup>62)</sup>
  - 증감실험연구비 비율의 12% 초과 여부에 따라 상이한 세액공제율 산정방식을 적용
    - 증감실험연구비 비율 12% 초과:  $12\% + (\text{증감실험연구비 비율} - 12\%) \times 0.375$ , 최대 17%
    - 증감실험연구비 비율 12% 미만: 일괄 12%
    - 매출 대비 실험연구비 비율 10% 초과:  $\text{기존 공제율} + [\text{기존공제율} \times (\text{매출 대비 실험연구비 비율} - 10\%) \times 0.5]$ , 최대 17%
      - $(\text{매출 대비 실험연구비 비율} - 10\%) \times 0.5$ 의 상한은 10%
  - 세액공제 한도는 법인세액의 25%를 원칙으로 하지만 증감실험연구비 비율, 매출 대비 실험연구비 비율 등에 따라 차등 증감된 한도를 적용
- (특별실험연구비 세액공제) 특별실험연구비 세액공제는 공동연구·위탁연구에 적용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제율은 공동연구·위탁연구를 한 기관의 종류 등에 따라 차등 비율을 적용
    - 특별연구기관 등 또는 대학 등과의 공동·위탁연구에 지출한 실험연구비는 30%, 신사업개척사업자 등과의 공동·위탁연구에 지출한 실험연구비는 25%, 그 외 실험연구비는 20%
  - 세액공제 한도는 법인세액의 10%

나) 투자 관련 조세지원

- 일본은 소규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즉시상각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중소기업 경영강화세제(中小企業經營強化税制)를 운영

61) 일본 중소기업청, <https://www.chusho.meti.go.jp/zaimu/zeisei/kenyukaihatsu/index.html>, 검색일자: 2024. 3. 26

62) 다음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1억엔 이하라도 중소기업에 미해당 ① 대규모법인(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1억엔을 초과하는 법인, 자본 또는 출자를 갖지 않는 법인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00명 초과인 법인 또는 대법인(※)의 100%자법인 등)이 발행된 주식 또는 출자총수·총액의 1/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② 2개 이상의 대규모법인이 발행 완료주식 또는 출자총수·총액의 2/3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 (개요)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가 경영력향상계획을 작성·신청하고 이에 기반해 신규 설비 구입 시 즉시상각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sup>63)</sup>
- (적용 대상) 청색신고서를 제출하는 중소기업자 등이 2017년 4월부터 2027년 3월 까지 「중소기업 등 경영강화법」에 따라 인증된 경영력향상계획에 근거해 다음 <표 Ⅲ-16>의 대상설비를 신규 취득하고 지정 사업에 사용한 경우
  - 중소기업자 등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엔 이하인 법인,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고 상시 사용 종업원이 1,000명 이하인 법인, 상시 사용 종업원이 1,000명 이하인 개인사업자, 협동조합 등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 지정사업은 제조업, 건설업, 농업, 임업, 어업, 소매업, 요리업 및 기타 음식점업 등이 해당되며, 전기업, 수도업, 철도업, 항공운송업, 은행업, 오락업(영화업 제외) 등은 제외

<표 Ⅲ-16> 중소기업 경영강화세제 대상설비별 세부 내용

구분	생산성향상 설비 (A 유형)	수익력 강화 설비 (B 유형)	경영자원 집약화 설비(D 유형)	경영규모 확대 설비(E 유형)
적용 요건	- 기존 모델 대비 평균 1% 이상 생산성이 향상된 설비	- 투자 수익률(ROI)이 세후 5% 이상인 투자 계획에 포함된 설비	- 수정 ROA 또는 유형고정자산회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투자 계획 포함 설비	- 투자계획서 기준 매출 증가, 평균임금 상승, 자산 총계 증가 등에 해당
대상 설비	- 기계장치(160만엔 이상) - 공구(30만엔 이상) - 기구비품(30만엔 이상) - 건물부속설비(60만엔 이상) - 소프트웨어(70만엔 이상)			- 기계장치, 기구비품, 소프트웨어 등(총합계 1,000만엔 이상)
기타 요건	- 생산 등을 구성하는 설비일 것	- 국내에 대한 투자일 것 - 중고 자산 및 임대 자산은 제외		- 대상 설비는 도입일부터 60일 이내 취득 등 조건 충족 필요

자료: 일본 중소기업청, 「中小企業等経営強化法に基づく支援措置活用の手引き」, 2025. 7. 18.

- (지원내용) 신규 설비의 취득가액을 전액 즉시 상각하거나 취득가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적용
  -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3,000만엔을 초과하지 않는 법인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점가 진흥조합 등에는 10%의 세액공제율 적용

63) 일본 중소기업청, 「中小企業等経営強化法に基づく支援措置活用の手引き」, 2025. 7. 8.

- 세액공제 적용 한도는 「중소기업 투자촉진세제」와의 세액공제 합산액이 해당 사업연도 세전 법인세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액은 1년간 이월 가능

□ 중소기업 투자촉진세제(中小企業投資促進税制)는 별도의 인증 없이 중소기업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기계장치 등을 취득한 경우 특별상각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적용 대상) 청색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엔 이하 법인 등 중소기업자 등<sup>64)</sup>이 2027년 3월까지 기계장치 등의 대상설비를 취득한 경우
  -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3,000엔 이하의 법인은 특별상각, 세액공제 모두 가능 하지만, 3,000엔 초과 법인의 경우 특별상각만 가능
  - 지정사업은 제조업, 건설업, 농업, 임업, 어업, 수산 양식업, 광업, 도매업, 도로 화물 운송업, 창고업, 항만 운송업, 가스업, 소매업, 요리점업 및 기타 음식점업,<sup>65)</sup> 생활 관련 서비스업, 협동조합 등

<표 III-17> 중소기업 투자촉진세제 대상설비별 세부 내용

대상설비	내용
기계 및 장비	- 1대 또는 1기의 취득가격 160만엔 이상
측정 공구 및 검사공구	- 제품의 품질관리 향상 등에 도움이 되는 측정 공구 및 검사공구로 1대 또는 1기의 취득가격 120만엔 이상
소프트웨어	- 하나의 소프트웨어 취득가격이 70만엔 이상
화물 자동차	- 차량운반구 중 일정한 보통자동차로서,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 중 총중량 3.5t 이상
내항 선박	- 내항해운업용 선박 취득가액의 75%

자료: 일본 미야타니 정보시스템, <https://keiridripen.mjs.co.jp/171584/>, 검색일자: 2025. 7. 22.

- (지원내용) 개인사업주,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3,000엔 이하의 법인에는 취득 가액 30%의 특별상각 또는 7%의 세액공제 혜택 적용
  -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3,000엔 초과 법인은 30%의 특별상각 가능
  - 세액공제 적용 한도는 「중소기업 경영강화세제」와의 세액공제 합산액이 해당 사업연도 세전 법인세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액은 1년간 이월 가능

64) 중소기업자 등은 중소기업 경영강화세제의 중소기업자 등의 조건과 같되 경영능력 향상 계획은 미제출

65) 유흥업소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업종에 대해서는 생활위생동업조합의 조합원이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

#### 다) 고용 관련 조세지원

- 임금인상촉진세제(賃上げ促進税制)는 임금 인상과 인재 육성 추진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분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며,<sup>66)</sup> 특히 혜택 수준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 중소기업자 등이 2024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고 각 사업연도에 전년 대비 급여 등을 증가시킨 경우, 그 증가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 특히 동 제도에서는 기업을 중소, 중견, 일반기업으로 구분하고 요건 및 공제율을 차등
    - (중소기업) 자본금 또는 출자액이 1억엔 이하이거나 종업원이 1,000명 이하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 (공제율) 전년 대비 급여액이 1.5% 이상 증가할 경우 15% 세액공제, 2.5% 이상 증가할 경우 30%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추가로 교육 훈련비가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할 경우 10% 추가 공제, 일·가정 양립 및 여성 인력 지원 등에 5% 추가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45% 공제 혜택이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 5년 간 이월 공제가 가능
    - (중견기업) 청색신고서를 제출하는 종업원 수 2,000명 이하 기업이 대상
      - (공제율) 전년 대비 급여액보다 3% 이상 증가할 경우 10%, 4% 이상 증가할 경우 25%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추가로 교육 훈련비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경우 5% 추가 공제, 일·가정 양립 및 여성 인력 지원 등에 추가 5%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35% 공제 혜택이 가능
    - (일반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 해당
      - (공제율) 전년 대비 급여액이 3% 이상 증가할 경우 10%, 4% 이상 증가할 경우 15%, 5% 이상 증가할 경우 20%, 7% 이상 증가할 경우 25%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추가로 교육 훈련비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경우 5% 추가 공제, 일·가정 양립 및 여성 인력 지원 등에 추가 5%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35% 공제 혜택이 가능

66) 일본 중소기업청, <https://www.chusho.meti.go.jp/zaimu/zeisei/syotokukakudai.html>

<표 III-18> 일본 임금인상촉진세제 공제율(현행)

구분	필수 요건		추가 요건(1)		추가 요건(2)			
	급여 인상률	세액 공제율	교육 훈련비 인상률	추가 세액공제율	육아 및 여성 지원	추가 세액공제율		
중소기업	1.5% 이상	15%	5% 이상	10%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또는 여성활약 촉진 우수기업 인증	5%		
	2.5% 이상	30%						
중견기업	3% 이상	15%	10% 이상	5%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또는 여성활약 촉진 우수기업 인증	5%	
	4% 이상	25%						
일반기업	3% 이상	10%	10% 이상	5%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또는 여성활약 촉진 우수기업 인증	5%
	4% 이상	15%						
	5% 이상	20%						
	7% 이상	25%						

자료: 일본 재무성, 「令和6年度税制改正の大綱」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 6) 중국

### 가)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

- 중국은 민간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제도(super deducton, 研發費用加計扣除政策)를 운영
  - 「법인세법」은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제도를 통해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점만 명시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국가세무총국(國家稅務總局), 과학기술부(科學技術部) 등을 통해 수시로 공지
- 연구개발 추가공제는 연구개발 비용처리 방식과 자본화 방식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공제금액 상한은 설정하지 않음<sup>67)</sup>
  - 비용처리 방식에서 연구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계상해 실제 발생한 금액의 100%를 추가해 200%를 공제
  - 자본화 방식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입증돼 무형자산을 형성한 연구개발 비용의 경우 무형자산 비용의 200%를 상각<sup>68)</sup>

67) 중국 정부, [https://www.gov.cn/zhengce/2023-04/24/content\\_5752967.htm](https://www.gov.cn/zhengce/2023-04/24/content_5752967.htm), 검색일자: 2024. 4. 4.

68) 예를 들어 기업이 2022년 9월에 연구개발을 통해 무형자산을 형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제 가능한 무형자산 비용이 1,500만위안이고 10년에 걸쳐 상각하는 경우 2023년에 무형자산 비용의 200%를 세전 상각해 300만위안 상각 가능

- 2022년까지는 제조업, 비제조업, 과학기술형중소기업<sup>69)</sup>에 공제 규모를 차등 적용하였지만, 2023년 개정에 따라 업종 또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공제 규모를 동일하게 적용
  - 2022년에는 제조업과 과학기술형중소기업은 실제 발생 금액의 100%, 비제조업 및 과학기술형중소기업 외의 기업은 75%를 추가 공제하였으며,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175%를 공제
- 기업이 국내외 외부기관 또는 개인에게 연구개발을 위탁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80%만 위탁 당사자의 연구개발비로 산입

## 7) 요약 및 시사점

- 해외 주요국에서는 연구개발, 투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조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 관점에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연구개발 조세지원) 미국, 중국, 독일은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조세지원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반면, 프랑스, 일본은 공제율 등에서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
    - 프랑스는 모든 기업에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적용하되 중소기업의 시제품 설계 및 신제품 시범 설비 관련 비용에 한해 더 높은 공제율 적용
    - 일본은 중소기업에 중소기업기술기반강화세제형세액공제를 적용해 대기업의 일반 실험연구비 세액공제율(1~14%)보다 높은 공제율(12~17%)을 적용
  - (투자 조세지원) 투자 관련해서는 주요국 중 미국은 한도 설정을 통해 규모가 큰 기업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며, 독일, 프랑스, 일본은 혜택을 명시적으로 차등

69) 중국의 과학기술형중소기업(科技型中小企业)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 1)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에 등록된 민간 기업으로 총 직원수 500명 이하, 연간 판매수익 2억위안 이하, 총 자산 2억위안 이하인 기업 2)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가 국가가 규정한 금지·제한하는 범주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중대한 안전 및 품질사고, 과학 연구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기업 3) ① 과학기술 인력지표(20점 만점) ② 연구개발투자지표(50점 만점) ③ 과학기술성과지표(30점 만점)로 이루어진 중소기업의 기술기반 평가지표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획득한 기업(① 과학기술 인력지표는 기업의 총 직원수 대비 과학기술 인력수 비율에 따른 등급으로 구분 ② 연구개발 투자지표는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는 연구개발비가 총지출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평가 ③ 과학기술성과지표는 유효기간 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상품 또는 서비스 관련 지적재산권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등급 책정)

- 미국의 Section 179 공제는 연간 투자금액이 증가할수록 비용처리 한도가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있어 영세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을 우대하는 측면
  - 독일은 연소득 20만유로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공제 및 특별감가상각 제도를 운용
  - 프랑스는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수행 중소기업 세액공제, 녹색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통해 특정 분야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
  - 일본은 중소기업 경영강화세제와 중소기업 투자촉진세제를 통해 자본금 또는 출자금 1억엔 이하의 법인 등이 신규 설비 또는 기계설비 취득 시 세액 공제 또는 특별감가상각 혜택 부여
- (고용 조세지원) 고용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일본이 중소기업을 우대하여 지원
- 미국은 장애인고용세액공제와 소규모 사업자 건강보험 세액공제를 통해 중소기업 고용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을 제공
  - 일본은 임금인상촉진세제에서 기업 규모 및 급여 인상률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
- 특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와 유사한 제도는 파악되지 않음
- 일부 중소기업만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한 제도가 있으나, 해당 제도는 연구 개발, 투자, 고용 등 기업 행태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성격
-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해외 주요국은 일부 제도에서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측면이 있으나 그 정도는 우리나라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우리나라의 경우 R&D, 투자, 고용 관련 조세지원에서 중소, 중견, 일반기업으로 구분하여 혜택을 차등
  - 또한 본 연구의 평가 대상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와 같이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감면제도도 존재
  - 반면 해외 주요국에서는 한도 설정, 일부 중속기업에 대한 별도 제도 운용 등의 행태가 관측되나, 전반적으로 기업 규모 기준 조세지원 정책이 많지 않은 것으로 평가
  - 다만 일본의 경우 해외 주요국 중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조세지원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19> 주요국 연구개발 조세지원의 중소기업 우대 사항

구분	내용
미국	- 규모에 상관없이 세액공제제도 일괄 적용 - (환급) 소규모 창업기업 <sup>1)</sup> 에 한해 50만달러까지 환급
영국	- 영국은 중소기업은 연구개발에 대한 공제제도, 대기업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제도를 운영 - (공제 혜택) 중소기업은 소득공제 186%, 대기업은 세액공제 20% - (환급) 중소기업에 한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포기 가능 손실 <sup>2)</sup> 의 10% 환급 - (한도) 중소기업에는 프로젝트당 750만유로의 세금감면 한도를 적용하고 대기업은 한도 미적용
프랑스	- 모든 기업에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적용하되 중소기업의 시제품 설계 및 신제품 시범 설비 관련 비용은 중소기업 혁신세액공제 적용 - (한도) 제도별로 차등 적용 · 연구개발세액공제: 미적용 · 중소기업혁신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 한도 40만유로
독일	-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연구개발 세액공제 일괄 적용
일본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술기반강화세제형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일반 실험 연구비 세액공제(1~14%)보다 높은 공제율(12~17%)을 적용 - (한도) 제도별로 차등 적용 · 일반실험연구비세액공제: 법인세액의 20~40% · 중소기업기술기반강화세액공제: 법인세액의 25~35%
중국	-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연구개발추가공제 일괄 적용

주: 1) 소규모 창업기업: 과거 과세연도 기간이 5년 미만이고 당해 연도 총수입액이 500만달러 미만인 기업을 의미

2) 포기 가능한 손실이란 공제되지 않은 사업결손금과 적격 연구개발비의 186% 중 작은 금액

자료: 각국 정부 홈페이지 참고해서 저자 작성

<표 III-20> 주요국 투자 관련 조세지원의 중소기업 우대 사항

구분	내용
미국	-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제도 없음 - 다만 Section 179 공제는 규정상 대기업을 정책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지만 연간 투자금액이 증가할수록 비용처리 한도가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있어 영세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들을 일부 우대하는 구조
영국	-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제도 없음 - 세액공제보다는 자본공제방식으로 지원
프랑스	-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30%의 세액공제 적용 - 녹색산업투자세액공제는 기업 규모 및 지역에 따라 공제율 차등 적용 · 중소기업 40%, 중견기업 30%, 그 외: 20%

<표 III-20>의 계속

구분	내용
독일	- 자가 자산에 대해 즉시전액비용처리 또는 공동감가상각을 허용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연소득 20만유로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공제 및 특별감가상각 제도를 운영
일본	- 중소기업 경영강화세제: 경영능력향상계획 작성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설비 등의 취득 비용에 대해 100% 즉시 상각 또는 7% 세액공제 - 중소기업 투자촉진세제 · 자본금 또는 출자금 3,000만엔 이하 중소기업: 특별상각 30%, 세액공제 7% · 자본금 또는 출자금 3,000만엔 초과 중소기업: 특별상각 30%, 세액공제 미적용

자료: 각국 정부 홈페이지 참고해서 저자 작성

<표 III-21> 주요국 고용 관련 조세지원의 중소기업 우대 사항

구분	내용						
미국	- 장애인고용세액공제: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의 접근성 향상시설에 투자 시 50%의 세액공제 혜택 적용 - 소규모 사업자 건강보험 세액공제: 소기업 고용주가 정규직 근로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보험료의 일정 비율 이상 부담 시 세액공제 혜택 적용						
일본	- 임금인상촉진세제는 기업 규모 및 급여 인상률에 따라 세액공제율 차등 적용						
	구분	필수 요건		추가 요건(1)		추가 요건(2)	
		급여 인상률	세액 공제율	교육 훈련비 인상률	추가 세액공제율	육아 및 여성 지원	추가 세액공제율
	중소기업	1.5% 이상	15%	5% 이상	10%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또는 여성활약 촉진 우수기업 인증	5%
		2.5% 이상	30%				
	중견기업	3% 이상	15%	10% 이상	5%		
		4% 이상	25%				
	일반기업	3% 이상	10%	10% 이상	5%		
		4% 이상	15%				
		5% 이상	20%				
7% 이상		25%					

자료: 각국 정부 홈페이지 참고해서 저자 작성

## 나. 해외 주요국의 법인세율 체계

- 본 소절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법인세율 체계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혜택이 존재하는지 살펴봄
  - 본 연구의 평가 대상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업종, 소재지 중 비교적 간단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폭넓게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음
  - 따라서 본 제도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위해 해외 주요국의 세율 체계 및 소기업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

### 1) OECD 회원국 법인세율 체계

- (최고세율) 먼저 OECD 회원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표 III-22>에 제시
  - 2025년 기준 OECD 회원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콜롬비아가 35.0%로 가장 높고, 이어 호주, 코스타리카, 멕시코 30.0%, 뉴질랜드 28.0%, 칠레 27.0% 순
  - 법인세 최고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스위스 8.50%이며 다음으로 헝가리 9.0%, 아일랜드 12.5%, 독일 및 캐나다 15.0% 순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
  - 우리나라는 24%로 OECD 평균인 21.99%보다 높으며 OECD 회원국 중에서는 14번째로 높은 그룹에 속함

<표 III-22> OECD 회원국 법인세 최고세율(2025년 기준)

(단위: %)

순위	국가	법인세율	순위	국가	법인세율
1	콜롬비아	35.00	19	에스토니아	22.00
2	호주	30.00	19	그리스	22.00
2	코스타리카	30.00	19	노르웨이	22.00
2	멕시코	30.00	19	슬로베니아	22.00
5	뉴질랜드	28.00	24	체코	21.00
6	칠레	27.00	24	미국	21.00
7	네덜란드	25.80	26	스웨덴	20.60
8	벨기에	25.00	27	핀란드	20.00
8	프랑스	25.00	27	아이슬란드	20.00
8	스페인	25.00	27	라트비아	20.00

<표 III-22>의 계속

(단위: %)

순위	국가	법인세율	순위	국가	법인세율
8	터키	25.00	27	포르투갈	20.00
8	영국	25.00	31	폴란드	19.00
13	이탈리아	24.00	32	리투아니아	16.00
14	한국	24.00	32	룩셈부르크	16.00
14	슬로바키아	24.00	34	독일	15.00
16	일본	23.20	34	캐나다	15.00
17	오스트리아	23.00	36	아일랜드	12.50
17	이스라엘	23.00	37	헝가리	9.00
19	덴마크	22.00	38	스위스	8.50
OECD 법인세율 평균			21.99		

자료: OECD Stat, "Corporate income tax statutory and targeted small business rates," 검색일자: 2025. 7. 7.

- (법인세율 체계) 해외 주요국의 법인세율 체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단일세율 또는 2단계 세율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을 확인 가능
- 단일세율 체계는 미국,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채택
    - 이들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감세율 또는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의 차등 적용 없이 동일한 세율 적용
  - 2단계 세율체계를 적용 중인 국가는 소기업에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국가 그룹과 2단계 누진구조를 채택하는 그룹으로 구분 가능
    - 호주, 벨기에, 캐나다, 칠레, 프랑스, 일본 등은 소기업에 경감세율을 적용
    - 네덜란드, 홍콩, 영국 등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2단계 누진세율 적용
  - 3단계 세율 채택 국가 중에서 단일세율과 경감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조사 국가 중 룩셈부르크가 유일했으며, 슬로바키아, 아르헨티나는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없이 3단계 누진세율 적용
  - 우리나라는 조사국 중 유일하게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

<표 III-23> 해외 주요국의 법인세율 체계(2025년 기준)

세율체계		국가
단일세율		미국, 콜롬비아, 멕시코,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터키, 이탈리아, 이스라엘, 그리스,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2단계 세율	단일세율+경감 1단계 세율	호주, 칠레, 리투아니아, 폴란드, 스페인, 중국,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 포르투갈, 인도네시아, 일본
	2단계 누진세율	네덜란드, 홍콩, 영국
3단계 세율	단일세율+경감2단계 누진세율	룩셈부르크
	3단계 누진세율	슬로바키아, 아르헨티나
4단계 이상 세율	단일세율+경감4단계누진세율	코스타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4단계 누진세율	한국

자료: PWC, <https://taxsummaries.pwc.com/quick-charts/corporate-income-tax-cit-rates#anchor-U>, 검색일자: 2025. 7. 7.

<표 III-24> 해외 주요국의 법인세율 체계(2025년 기준): 단일 세율체계

(단위: %)

국가명	세율	국가명	세율
오스트리아	23.00	이스라엘	23.00
콜롬비아	35.00	이탈리아	24.00
체코	21.00	멕시코	30.00
덴마크	22.00	뉴질랜드	28.00
에스토니아	22.00	노르웨이	22.00
핀란드	20.00	슬로베니아	22.00
독일	15.00	스웨덴	20.60
그리스	22.00	스위스	8.50
헝가리	9.00	터키	25.00
아이슬란드	20.00	미국	21.00
아일랜드	12.50		

자료: OECD Stat, Corporate income tax statutory and targeted small business rates, 검색일자: 2025. 7. 7.; PWC, <https://taxsummaries.pwc.com/quick-charts/corporate-income-tax-cit-rates#anchor-U>, 검색일자: 2025. 7. 8.

〈표 III-25〉 해외 주요국의 법인세율 체계(2025년 기준): 2단계 세율체계

국가명	기업 규모	과세표준	세율(%)
호주	소기업	1단계 단일세율	25
	일반	1단계 단일세율	30
벨기에	소기업	100,000유로 미만 100,000유로 초과	20 25
	일반	1단계 단일세율	25
캐나다	내국인 소유 비상장기업 (CCPC)	(CAD) 500,000 미만 500,000 초과	9 15
	일반	1단계 단일세율	15
칠레	중소기업	1단계 단일세율	25 <sup>1)</sup>
	일반	1단계 단일세율	27
프랑스	소기업	(EUR) 42,500 미만 42,500 초과	15 25
	일반	1단계 단일세율	25
일본	소기업	(JPY) 800만 미만 800만 초과	15 또는 19 <sup>1)</sup> 23.2
	일반	1단계 단일세율	23.2
네덜란드	미 구분	200,000유로 미만 200,000유로 초과	19 25.8
폴란드	소규모기업	1단계 단일세율	9
	일반	1단계 단일세율	19
포르투갈 <sup>3)</sup>	중소기업	50,000유로 미만 50,000유로 초과	16 20
	일반	1단계 단일세율	20
스페인	소기업	1단계 단일 세율	24 또는 22 또는 21 <sup>2)</sup>
	일반	1단계 단일 세율	25
영국	미 구분	5만파운드 미만	19
		25만파운드 초과 <sup>3)</sup>	25

주: 1) 자본금 1억엔 이하 소기업의 직전 3년 연평균 과세소득이 15억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 소득 800만엔 이하에 대해 19%의 경감세율을 적용

2) 순매출 100만유로 미만인 초소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만유로까지 17%,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경감세율 적용

3) 과세소득 50,001~250,000파운드는 Marginal Relief 구간으로 공식에 따라 실질 세율이 19%에서 25%까지 완만히 상승하도록 세율을 조정해 적용

자료: 각국 정부 홈페이지 참고해 저자 작성

## 2) 소기업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 국가 사례

- 본 소절에서는 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
  - 중소기업에 대한 경감세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일정 부분 유사한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
  - 여기에서는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을 대상으로 경감세율 적용 기업의 범위, 세율 등 상세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

### 가) 호주

- 호주의 경우 소기업(small business)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각 법률에서 소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정의<sup>70)</sup>
  - 『소득세 평가법(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자는 총매출액이 1,000만호주달러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
    - 특정 항목에서는 1,000만호주달러 대신 5,000만호주달러의 기준 사용
  - 『2001 기업법(Corporations Act 2001)』 제45A조 제(2)항에서는 소기업(Small proprietary company)을 다음 중 최소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정의
    - 해당 기업과 관계기업(entities)의 해당 회계연도의 결합소득(consolidated revenue)이 2,500만호주 달러 미만<sup>71)</sup>
    - 해당 기업과 관계기업(entities)의 회계연도 말 현재 총자산의 가치(value of the consolidated gross assets)가 1,250만호주달러 미만
    - 해당 기업과 관계기업(entities)의 종업원 수가 회계연도 말 현재 50명 미만
  - 호주 통계청(ABS)은 소기업을 종업원 수가 20명 미만인 조직으로 정의
  - 호주 국세청(ATO)은 연간 매출액이 1,000만호주달러 미만인 사업체를 소기업으로 간주
  - 호주 증권 투자 위원회(ASIC)는 소규모 회사를 연간 매출액이 2,500만호주달러 미만이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이며 자산이 1,250만호주달러 미만인 회사로 정의<sup>72)</sup>

70) <https://asic.gov.au/for-business/small-business/#definition>, 검색일자: 2025. 4. 16.

71) 호주 기업법, [https://www5.austlii.edu.au/au/legis/cth/consol\\_act/ca2001172/s45a.html](https://www5.austlii.edu.au/au/legis/cth/consol_act/ca2001172/s45a.html), 검색일자: 2025. 4. 16.

- 호주 법인세 체계에서는 총매출 규모(Aggregated turnover threshold)가 5,000만호주 달러 미만이면서 다음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소규모 기업(Small business entity company)에 대해 25%의 경감세율을 적용<sup>72)</sup>
  - 해당 과세연도의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이 과세소득의 80% 이하를 차지해야 하며, 수동적 소득은 법인 배당금, 지적재산권 수익, 이자소득, 적격증권에서 발생한 이익 등을 의미

#### 나) 벨기에

- 벨기에의 기업 및 협회규정(Code for Companies and Associations, CSA)에 따르면 소규모 기업은 다음의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정의
  - ① 연평균 직원수가 50명 미만 ②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연간 순매출액이 1,125만유로 미만 ③ 연말 기준 총 자산 600만유로 미만
- 벨기에는 소기업의 과세소득 10만유로 이하에 대해 20%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며 기업 및 협회규정에 의한 소규모 기업 기준 외에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 기업은 최소 한 명의 관리자에게 연간 최소 4만 5천유로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스타트업의 경우 첫 4년 동안 해당 요건 면제
  - 주식의 최소 50% 이상은 한 명 이상의 개인이 소유해야 하며, 다른 회사가 해당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감면 혜택 적용 불가
  - 해당 기업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총 투자금액은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및 규제 부동산 회사와 같은 소위 투자회사는 감면 혜택 수혜 불가

#### 다) 캐나다

- 캐나다 혁신, 과학 및 경제발전부(ISED)에서는 기업 규모를 유급직원의 수에 따라서 정의
  - 소기업은 유급직원이 1~99명, 중기업은 100~499명, 대기업은 500명 이상인 기업을 의미

72) <https://sprintlaw.com.au/articles/definition-of-small-business/>

73) <https://www.ato.gov.au/tax-rates-and-codes/company-tax-rate-changes#Baserateentitycompanytaxrate1>, 검색일자: 2025. 4. 16.

- 캐나다 법인세 체계에서는 비상장기업으로서 캐나다 거주자가 주요 주주인 CCPC (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s)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공제(small business deduction)인 9%의 경감세율 적용
  - CCPC는 민간기업으로, 공공기업이나 비거주자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지배되는 기업은 CCPC로 인정하지 않음
    - 또한 비상장 기업으로서 주식이 공개적으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식을 창업자나 소수의 주주가 보유한 형태<sup>74)</sup>
  - 중소기업 공제의 과세표준은 사업 활동 소득,<sup>75)</sup> 과세소득, 사업 한도 중 적은 금액으로 50만달러까지는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15%의 세율 적용

라) 프랑스

- 프랑스의 경우 「중소기업진흥법」 제6조<sup>76)</sup>에서 기업 규모에 대한 정의를 <표 III-5>의 EU 기준(Annex I to Regulation(EC) No 70/2001)을 준용한다고 규정
  - EU에서는 종업원 수, 총자산 및 매출액, 독립성 기준으로 기업 규모를 구분하고 있으며, 네 가지 요건 중 독립성 기준과 종업원 수는 필수적인 지표이며 매출액과 총자산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sup>77)</sup>

<표 III-26> 프랑스의 중소기업 기준(EU 기준)

기업 규모	종업원수	매출액 또는 대차대조표 합계
영세기업 (Micro)	10명 미만	매출액 200만유로 또는 대차대조표 합계 200만유로 이하
소기업 (Small)	50명 미만	매출액 1,000만유로 또는 대차대조표 합계 1,000만유로 이하
중기업 (Medium sized)	250명 미만	매출액 5,000만유로 또는 대차대조표 합계 4,300만유로 이하

자료: European Commission,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smes/sme-definition\\_en](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smes/sme-definition_en), 2025. 4. 17.

74)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businesses/topics/corporations/type-corporation.html>, 검색 일자: 2025. 4. 17.

75) 사업 활동 소득(Active business income)은 일반적으로 사업 활동을 통해 획득한 소득으로 투자사업(specified investment business) 또는 개인 서비스 사업(personal services business)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미포함

76) Loi n° 2005-882 du 2 août 2005 en faveur d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00452052/>

77) 김빛마로 외, 2022, p. 63.

- 프랑스는 소기업에 한해 15%의 법인세 경감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위해 소기업은 다음의 조건 충족이 필요<sup>78)</sup>
  - 매출액이 1,000만유로 이하여야 하며, 기업의 자본이 외부 투자자나 다른 외부 주체에게 환급되지 않고 전액이 기업의 소유자에게 유지되며 해당 자본의 75% 이상이 개인에 의해 소유해야 함<sup>79)</sup>
  - 감면세율은 요건을 충족하는 소기업 과세소득의 42,500유로까지 적용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25%의 세율 적용

마) 일본

- 일본의 소규모 기업자(小規模企業者)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5항에 따라 직원 수를 기준으로 판단
  - ① 정규직 직원 수가 20명 이하 개인이고, 도소매 및 서비스업을 제외한 공업 및 광업, 운송업에 속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거나 ② 정규직 직원 수가 5명 이하의 개인이고 도소매 및 서비스업에 속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소규모 기업자로 판단

<표 III-27> 일본의 중소기업 및 소규모기업 범위 구분

구분	중소기업		소규모기업
	자본금	직원 수	직원 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및 기타	3억엔 이하	300인 이하	20인 이하
도매업	1억엔 이하	100인 이하	5인 이하
서비스업	5천만엔 이하		
소매업		50인 이하	

자료: 일본 「중소기업기본법」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일본의 「법인세법」 관련해서는 자본금 1억엔 이하의 소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감세율을 적용<sup>80)</sup>
  - 자본금 1억엔 이하 소기업의 과세소득 800만엔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15%의

78) 프랑스 재무부, <https://www.economie.gouv.fr/entreprises/impot-societes-IS>, 검색일자: 2025. 4. 17.

79) whose capital is entirely paid out and held at least 75% by individuals

80)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hojin/5759.htm>, 검색일자: 2025. 4. 17.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3.2%의 세율 적용

- 자본금 1억엔 이하 소기업의 직전 3년 연평균 소득이 15억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 800만엔 이하에 대해서는 19%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23.2%의 세율 적용

바) 스페인<sup>81)</sup>

- 스페인은 중소기업 정의 관련 유럽 위원회 규정 제651호/2014호를 준수하는 것으로 파악<sup>82)</sup>
- 스페인의 법인소득세 체계에 따르면 순매출액 1,000만유로 미만의 소기업, 100유로 미만의 초소기업, 신설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감세율을 적용
  -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에 24%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되 매년 1%p씩 세율을 인하해 최종적으로 2029년에 20%의 세율 적용
    - 초소기업은 과세소득 5만유로까지는 21%,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을 적용하되 향후 2년간 각각 2%p, 1%p씩 인하해 2027년에 5만유로까지 17%, 초과분은 20%의 세율 적용
    -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신규 설립 법인에 한해 과세소득이 최초로 발생하는 첫 번째 과세연도 및 그 다음 과세연도에 한해 15%의 경감세율 적용

사) 포르투갈

- 포르투갈은 2007년 11월 6일자 제372/2007호 법령(Decreto-Lei n.º 372/2007, de 6 de novembro)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권고안인 2003/361/CE를 준수한다고 규정<sup>83)</sup>
- 포르투갈의 「법인세법(Código do Imposto sobre o Rendimento das Pessoas Coletivas)」<sup>84)</sup>

81) 스페인 정부, [https://administracion.gob.es/pag\\_Home/Tu-espacio-europeo/derechos-obligaciones/empresas/impuestos/sociedades/info-general.html#-72f561ba39f6](https://administracion.gob.es/pag_Home/Tu-espacio-europeo/derechos-obligaciones/empresas/impuestos/sociedades/info-general.html#-72f561ba39f6), 검색일자: 2025. 7. 8.

82) 스페인 중소기업청, <https://ipyme.org/en-us/queespyme/Pages/concepto.aspx>, 검색일자: 2025. 7. 8.

83) 포르투갈 공식 정부 관부(Diário da República), <https://diariodarepublica.pt/dr/detalhe/decreto-lei/372-2007-629439>, 검색일자: 2025. 4. 18.

84) [http://bdjur.almedina.net/citem.php?field=item\\_id&value=1852291](http://bdjur.almedina.net/citem.php?field=item_id&value=1852291), 검색일자: 2025. 4. 18.

에 따르면 법인세 체계에서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의 기준은 2007년 11월 6일자 제372/2007호 법령의 중소기업의 기준을 준용한다고 규정

-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4년 기준 과세소득의 5만유로까지 17%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1%의 세율을 적용하고 2025년에는 각각의 세율을 1%p씩 인하

#### 아) 요약 및 시사점

- 해외 주요국 중 일부는 특정 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가별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호주는 총매출 규모가 5천만달러 미만인 기업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소규모 기업에 대해 25%의 경감세율 적용
  - 벨기에는 ① 연평균 직원 수가 50명 미만 ②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연간 순매출액 1,125만유로 미만 ③ 총 자산 600만유로 미만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10만유로 이하의 과세소득에 대해 20%의 인화된 세율 적용
  - 캐나다는 비상장기업으로서 캐나다 거주자가 주요 주주인 CCPC에 대해 중소기업 공제로서 9%의 경감세율 적용
  - 프랑스는 매출액 1,000만유로 미만 소기업의 과세소득 42,500유로까지 15%의 경감세율 적용
  - 일본은 자본금 1억엔 이하 소기업의 과세소득 800만엔 이하에 대해 15%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자본금 1억엔 이하 소기업의 직전 3년 연평균 소득이 15억엔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소득 800만엔 이하에 대해 19%의 경감세율을 적용
  - 스페인은 순매출액 1,000만유로 미만의 소기업, 100만유로 미만의 초소기업, 신설법인으로 구분해 경감된 법인세율 적용
    - 소기업은 24%, 초소기업은 과세소득 5만유로까지는 21%, 초과분은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신설법인은 과세소득 발생 첫 번째 과세연도 및 그 다음 과세연도에 대해 15%의 경감세율 적용
  - 포르투갈은 EU 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세소득의 5만유로까지는 16%,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경감된 법인세율 적용

- 이러한 경감세율 적용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유사한 측면이 존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도 존재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업종을 열거하고 있긴 하지만, 폭넓은 중소기업에 대해 업종, 소재지, 기업 규모(소기업, 중기업 해당 여부) 등에 따라 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
  - 반면 해외 주요국의 경감세율 제도는 업종, 소재지 등 구분 없이 특정 기업 규모 요건을 충족한 모든 기업에 대해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
  
- 또한 주요국의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규모 기준을 원화로 환산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준과 비교하면 대체로 주요국 경감세율 적용 범위가 좁은 것을 확인 가능
  - 우리나라에서는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하이면서 업종별로 400~1,500억원 이하의 매출액 상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으로 구분되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수혜 대상에 포함 가능
  - 반면 주요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범위의 기업에 대해 경감세율을 적용
    - 매출액 기준을 살펴보면, 호주 약 455억원 이하, 벨기에 174억원 이하, 프랑스·스페인 155억원 이하, 포르투갈 773억원 이하로 확인
    - 일본의 경우 자본금 약 962억원, 연평균 소득 1,443억원으로 경감세율 적용 대상 매출액 기준을 비교적 넓게 설정하고 있으나, 자산 규모 기준은 우리나라 수준을 큰 폭으로 하회

〈표 III-28〉 주요국의 법인세 경감세율 적용 기준

국가	법인세 경감세율 적용 기준	경감 법인세율	일반 법인세율
호주	- 총매출 규모가 5천만호주달러(약 455억원) 미만의 소기업	25%	30%
벨기에	- ① 연평균 직원수 50명 미만 ② 순 매출액 1,125만유로(약 174억원) 미만 ③ 총 자산 600만유로(약 93억원) 미만 중 두 가지 기준 충족 소기업	20% : 과세소득 10만유로(약 1.5억원) 이하	25%
캐나다	- CCPC	9% : 과세소득 50만달러(약 51억원) 이하	15%

<표 III-28>의 계속

국가	법인세 경감세율 적용 기준	경감 법인세율	일반 법인세율
프랑스	- 매출액 1,000만유로(약 155억원) 미만 소기업	15% : 과세소득 42,500유로 (약 6,500만원) 이하	25%
일본	- 자본금 1억엔(약 962억원) 이하 소기업 - 자본금 1억엔(약 962억원) 이하, 직전 3년 연평균 소득 15억엔(약 1,443억원) 초과 소 기업	15% : 과세소득 800만엔 (약 77억원) 이하 19% : 과세소득 800만엔 (약 77억원) 이하	23.2%
스페인	- 순매출액 1,000만유로(약 155억원) 미만 소 기업	24%	25%
포르투갈	- 직원수 250명 미만, 매출액 5,000만유로(약 773억원) 또는 대차대조표 합계 4,300만유로 (약 664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16% : 과세소득 5만유로 (약 7,700만원) 이하	20%

주: 환율은 각 통화의 2025년(2025년01월02일~2025년04월18일) 평균 매매기준 환율 사용(하나은행,  
<https://www.kebhana.com/cont/mall/mall15/mall1502/index.jsp>, 검색일자: 2025. 4. 18.)  
 자료: 각국 정부 홈페이지 바탕으로 저자 작성



## IV. 타당성 분석





## IV. 타당성 분석

- 본 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타당성을 다음의 측면에서 평가함<sup>85)</sup>
  - 정부 개입의 필요성
  - 지원 방식의 적절성
  - 지원 대상의 적절성
  - 타 제도와 유사·중복성

### 1. 정부 개입의 필요성

- 본 제도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광범위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즉 기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타당성을 갖는지를 평가
- 이에 따라 규모가 작은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전통적 근거를 기존 문헌 등을 통해 제시한 후 그 타당성을 평가
-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지지하는 논거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음
  - 1)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교정
  - 2)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세제상 불이익에 대한 보상
  - 3) 중소기업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85) 본 장은 동 제도에 대한 2022년 의무 심층평가 보고서(김빛마로 외, 2022)의 타당성 분석 구조 및 결과를 참고하여 작성함.

- (시장실패의 교정) 중소기업 조세지원과 관련된 시장실패는 크게 ①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ies) ② 금융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준재로 구분 가능
  
- (시장실패: 긍정적 외부효과) 첫째, 기업의 일부 행태는 경제 내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기업의 혁신, 투자 등의 행위는 그 행위를 하는 당사자에게 사적 이익을 가져올 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 외부효과를 불러올 수 있음
    - 예를 들어 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해당 기업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권리취득, 모방 등의 방법을 통해 기술을 부분적으로 습득할 수 있으므로 경제 전반에 걸쳐 생산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다만 긍정적 외부효과 발생이 비교적 명확한 혁신 활동과 달리, 기업의 투자, 고용 등의 행위에 의해서도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sup>86)</sup>
  - 이때 기업은 자신의 사적 이익만을 고려하여 혁신 활동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하게 공급되는 결과를 초래
    - 즉 사회 후생(social welfare)의 관점에서는 연구개발 결과물이 경제 내 다른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까지 고려하여 연구개발 지출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각 기업은 자신에 대한 이익만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지출이 과소하게 결정
  - 이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을 지원하여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기업 행태를 장려할 필요성이 있음
  
- (시장실패: 금융시장 정보 비대칭성) 둘째,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역선택(adverse selection) 등 비효율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는 특히 중소기업에서 두드러지므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는 타당한 것으로 평가

86) 이에 대한 논의는 이상엽·김빛마로·홍우형·윤성만(2018); 김빛마로·우석진·이동규(2019) 등을 참조 바람.

- 자금 공급자인 금융기관 입장에서 어떠한 기업이 높은 잠재성을 가졌는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아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즉 금융기관이 각 기업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해 실제로는 잠재성이 있는 건실한 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
  - 특히 금융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더 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중소기업은 대체로 정보공개 의무가 적고, 업력이 짧은 경우가 많아 자금 공급자(금융기관)가 참고할 수 있는 과거 이력이 부족하기 때문
  - 또한 이상엽 외(2018)는 중소기업은 자금조달 방식 중 대출의 비중이 매우 높으므로 자금의 공급자인 금융기관과 수요자인 기업 사이 정보 비대칭성을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
- 따라서 금융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
-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 다음으로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세제상 불이익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이러한 주장은 주로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과 관련하여 제기<sup>87)</sup>
- 실제로 다수의 기존 문헌에서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실질 납세협력비용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제시
- 납세협력비용 중 상당 부분이 고정비용(fixed cost)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세한 기업은 규모의 경제 및 분업에 의한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기 쉽지 않음 (Cleary et al., 2017<sup>88)</sup>)
    - 조세제도 이해를 위한 노력, 필요한 서류를 준비 및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납세협력을 위한 비용 중 큰 부분은 고정비용의 성격을 띠고 있음
  - Weichenrieder(2007) 역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납세협력비용이 높아지는 것은 모든 OECD 회원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측된다는 결과를 제시

87) 납세협력비용과 관련된 논의는 이상엽·김빛마로(2017) 제IV장을 참조함

88) Era Dabla-Norris, Florian Misch, Duncan Cleary, and Munawer Khwaja, "Tax Administration and Firm Performance: New Data and Evidence for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IMF Working Paper. 2017/95.

- 또한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Lignier and Evans 2012; Lignier et al., 2014), 금전적 비용과 시간 등 명시적 비용 이외에 심리적인 비용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연구도 존재(Woellner et al., 2001)
- 이러한 이유로 기존 연구에서는 규모가 작은 기업에 일정 부분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
  - OECD(1997)에서는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특정보고 및 정보공개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권고<sup>89)</sup>
  -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세지원 필요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Bergner et al.(2017) 역시 영세한 기업이 직면하는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들에게 일정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
- 추가로 소규모 법인이 과중한 납세협력 부담을 갖는 경우 경제적 효율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
  - Cleary et al.(2017)은 납세협력비용의 증가가 소규모 법인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용을 완화할 수 있는 조세행정의 개선이 이들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 시킨다고 주장
    - 납세협력비용이 과중할 경우 기업이 가용한 자원을 생산적 활동에 투입하지 못하므로 결과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이 하락할 수 있음
    -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영세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조치일 수 있음을 시사
- 따라서 중소기업의 납세협력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평가
- (중소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부문은 국민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조세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

89) OECD, "Small Businesses, Job Creation and Growth: Facts, Obstacles and Best Practices," 1997.

-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 대비 중소기업의 비중은 매우 높은 편으로 중소기업 부문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임을 확인 가능
  - 소상공인을 포함할 경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 숫자의 99.9%, 전체 종사자 숫자의 81.0%를 차지
  - 전체 모집단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하고 비중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숫자의 97.4%, 전체 종사자 숫자의 64.8%를 차지

<표 IV-1> 기업 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2022년 기준, 소상공인 포함)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A)	개수			비중		
		중소기업(B)	중소기업 외		중소기업(B/A)	대기업	
			소상공인(C)	(D)		소상공인(C/A)	(D/A)
사업체수	8,053,163	8,042,726	7,656,718	10,437	99.9	95.1	0.1
종사자수	23,410,899	18,956,294	10,740,812	4,454,605	81.0	45.9	19.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2024. 8.

<표 IV-2> 기업 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2022년 기준, 소상공인 제외)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A)	개수		비중	
		중소기업(B)	중소기업 외(C)	중소기업(B/A)	중소기업 외(C/A)
사업체수	396,445	386,008	10,437	97.4	2.6
종사자수	12,670,087	8,215,482	4,454,605	64.8	35.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2024. 8.

-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으로 확인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사업체 숫자 비중, 종사자 숫자 비중 모두 비교 대상 5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종사자 숫자 비중의 경우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아 고용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큰 것으로 파악
  - 다만 해당 통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모두 포함한 통계이며 국가별 중소기업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비교 결과는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

<표 IV-3> 해외 주요국 중소기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 현황 비교

(단위: 천개, 천명)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중소기업	비중(%)	중소기업	비중(%)
한국	8,042	99.9	18,956	81.0
일본	3,365	99.7	33,098	69.7
대만	1,674	98.9	9,167	79.5
미국	6,275	99.7	58,951	45.9
영국	5,491	99.8	16,639	52.2

주: 한국은 2019년, 일본은 2021년, 대만은 2023년, 미국은 2024년, 영국은 2024년 기준임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2024년 해외 주요국 중소기업 통계』, 2024. 12.

- 하지만 중소기업의 비중이 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극단적으로 중소기업의 비중은 크지만 이들 기업이 긍정적 외부효과를 전혀 생산하지 않거나 어떠한 시장실패도 성립하지 않는다면 원론적으로 이들에 대한 정부 개입 필요성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
  
- 일부에서는 중소기업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
  - 예를 들어 중소기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 다만 이는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이라는 행위를 수행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므로 여전히 중소기업 부문의 비중이 큰 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떨어짐
  
- 요약하면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시장실패의 교정 및 납세협력비용의 완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평가
  - 단 본 소절에서는 정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만 검토했음을 유의할 필요
  - 어떠한 방식으로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와 관련해서는 다음 소절에서 논의

## 2. 지원 방식의 적절성

- 본 소절에서는 앞 절에서 논의한 중소기업 지원 논리에 근거할 때 본 제도의 현재 지원 방식이 적절한지 검토
  
- (시장실패: 긍정적 외부효과의 교정) 먼저 긍정적 외부효과를 생성하는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근거에 비추어 볼 때 본 제도의 지원 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본 제도는 고용, 투자, 연구개발 등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의 행태와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업종과 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도록 설계
    - 제도의 감면 한도가 고용에 연계하여 변화하는 측면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본 제도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기대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유인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정부의 개입 근거가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기업 행태를 사회적 최적 수준까지 제고하기 위함이라면 해당 행태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이미 연구개발, 투자, 고용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조세지원제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
  - 본 제도는 긍정적 외부효과 관련 행태와 연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련 조세지원의 활용도 및 효과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측면도 존재
    - 본 제도는 중소기업이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본 제도와 중복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 조세지원의 활용도는 떨어질 수 있음
    - 예를 들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본 제도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므로, 본 제도로 인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한 투자증대 효과가 저해될 가능성
  
- (시장실패: 금융시장 정보 비대칭성의 교정) 다음으로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근거와 관련해서도 본 제도의 설계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본 제도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일정한 비율만큼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로서 수혜

기업들의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역할이 기대

- 하지만 금융시장 정보 불완전성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우 적자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업종과 지역 요건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본 제도의 설계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
  - 기본적으로 조세지원의 특성상 적자 상태에 있는 기업, 즉 납부할 세액이 존재하지 않는 기업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특징이 있음
  - 또한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자금조달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식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므로 본 제도가 금융시장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려움
- 금융시장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바탕으로 한 보증, 대출 등 금융지원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
  - 특히 금융지원의 경우 적자 상태에 있지만 잠재성이 높은 기업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

□ (납세협력비용 완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감면하는 본 제도의 적절성이 일부 성립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조세행정 차원의 지원이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

- 납세협력을 위한 실질 비용이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큰 경향이 있으므로,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감면하는 본 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하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보다 직접적 조치가 더욱 적절할 수 있음
  - 세무행정의 전산화, 세법 및 제도 단순화, 과세관청 차원의 세무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 요컨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은 부분적으로 인정되지만, 본 제도와 같은 지원 방식은 적절성은 대체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

### 3. 지원 대상의 적절성

- 다음으로 본 제도가 설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이 적절한 것인지 검토
  
-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일부 성립한다고 할지라도, 본 제도가 설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 존재
  - 긍정적 외부효과가 중소기업에 한정되어 발생하거나 더 많이 발생한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세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 하지만 중소기업이 혁신, 투자, 고용 측면에서 규모가 큰 기업에 비해 긍정적 인 효과를 더 많이 창출하는지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
    - Stock et al.(2002), Hong et al(2016) 등은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혁신적인 결과물을 더 많이 생산한다는 결과를 보고
    - 반면, Camison-Zornoza et al.(2004), Laforet(2008, 2009, 2013) 등은 상기 연구들과 반대의 결과를 제시
    - 고용과 관련해서는 Birch(1981, 1987)와 그 이후 발표된 여러 연구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고용을 창출하는 데 있어 비교우위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
    - 반면, ‘작은 기업’이 아니라 ‘새로운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다수 발표(Voulgaris et al., 2005, Haltiwanger et al., 2013)
  
- 또한 본 제도가 기본적으로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을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도 필요
  
- (중기업 지원의 적절성) 앞서 살펴본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논거, 본 제도의 지원 방식, 상대적으로 넓게 설정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범위(제Ⅲ장 논의 참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앞서 소개한 정부 개입의 주요 논거인 금융시장의 불완전성 및 납세협력비용 문제의 경우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다소 완화된다는 특징이 있음
    -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어려움은 주로 규모가 작은 신생기업에서 나타나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의 경우 금융시장 접근성이 개선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주요국에 비해 중소기업 범위가 넓게 설정되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제도의 지원 대상인 중소기업 중 ‘중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판단
  - 본 제도의 수혜 대상에는 업종에 따라 매출액 최대 1,500억원 수준의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이 포함
  -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R&D, 투자, 고용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 실제로 우리나라의 R&D, 투자, 고용 관련 조세지원은 기업 규모에 따라 혜택을 차등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가장 높은 수준의 혜택을 부여

□ 다음으로 본 제도의 수혜대상 업종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

- 본 제도의 감면 업종은 「조특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종을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
  -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 업종은 총 48개 열거되어 있으며, 업종 구분 수준은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로 서로 상이
  - 또한 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과 다른 업종도 일부 존재

〈표 IV-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구분	감면 업종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
6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	건설업
8	도매 및 소매업
9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10	출판업
11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표 IV-4>의 계속

구분	감면 업종
12	방송업
13	전기통신업
14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	정보서비스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16	연구개발업
17	광고업
18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19	포장 및 충전업
20	전문디자인업
2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2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23	엔지니어링사업
24	물류산업
2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
2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7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2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료업)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
2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희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업 제외)
30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31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32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33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3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3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36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38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9	사회복지 서비스업

<표 IV-4>의 계속

구분	감면 업종
40	무형재산권 임대업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
41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산업
42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
4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4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5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46	임업
47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48	자동차 임대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국가법령정보시스템, <http://www.law.go.kr/>, 검색일자: 2025. 2. 20.

- (감면 업종 구분체계) 현행 열거된 업종은 구분 수준이 상이하나, 이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투영된 결과로 판단
- 현재 규정상 48개 업종이 일관된 수준으로 열거되지 않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및 세분류, 세세분류 등이 혼재
    - 예를 들어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은 광범위하게 정의된 반면,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등 매우 세부적인 단위에서 열거된 업종도 존재
    - 또한 각 업종 분류 내에서 별도로 제외 또는 포함되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감면을 허용하는 경우도 존재
      - 예를 들어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중 자영예술가,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에서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정보서비스업에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은 제외
      - 또한 의료업 중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자동차 임대업 중 등록된 자동차의 50% 이상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자로 한정하여 감면을 허용

- 다만 이는 본 제도가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초 도입되었다는 점을 반영하는 동시에, 최근의 경제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투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유흥 또는 사행성 업종, 고소득 전문업종은 제외하고 친환경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을 허용하는 것은 지원 필요성 및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고려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결과
- 마지막으로 제도의 복잡성을 가중하면서 실효성이 낮은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고용인원과 본 제도의 한도를 연계하는 현행 방식은 실효성이 낮고 제도의 복잡성을 가중시키므로 단일 감면한도 적용을 고려
    - 현행 감면한도는 1억원을 기본으로 하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감소인원 1인당 500만원을 감면한도에서 차감
    - 본 제도에 대한 기업당 평균 수혜금액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수혜기업은 1억원 감면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으로 해당 조항으로 기업의 고용이 증가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
  - 또한 10년 이상 동일 업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감면 적용을 폐지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
    - 해당 조항은 특정 업종을 영위하면서 중소기업 지위를 오래 유지한 기업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성장 및 자유로운 업종 전환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측면

#### 4. 타 제도와 유사·중복성

- (기타 조세지원과의 유사·중복성) 본 제도와 성격이 유사한 조세특례 제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
  - 중소기업만을 수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일부 조세지원 제도가 존재하나, 본 제도와 같이 업종, 소재지 등 최소한 요건을 기준으로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는 파악되지 않음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본 제도와 유사성이 있으나 지원대상이

창업기업, 즉 신생 기업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음

- 또한 본 제도는 일부 조세지원 제도를 제외하면 중복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업의 조세지원 중복수혜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오히려 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본 제도와 어떤 제도의 중복 적용을 허용할 것인지가 중요할 수 있음
  - 현행 제도상 본 제도와 중복 적용이 허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조세지원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이 있음
    - 이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
  - 반면 본 제도와 중복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 제도의 경우 제도의 효과성과 활용도가 저해되는 측면 존재
    - 대표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본 제도와 중복 적용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제II장 논의를 참고)
  
- 본 제도와 중복 수혜를 허용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하는 한편, 중복 수혜를 허용하지 않으면 긍정적 기업 행태와 연계된 제도들의 효과성이 저해되는 측면
  
- 대안적으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이 명확한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만 본 제도와 중복 적용을 허용하고 기타 제도에 대해서는 중복을 불허하되, 본 제도에서 기타 제도로 수혜 행태를 변경하는 기업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연구개발 행위는 긍정적 외부성의 존재로 인해 정부 지원 필요성이 가장 큰 분야이므로 본 제도와 중복을 계속해서 허용하는 것을 고려 가능
  - 다만 고용의 경우 긍정적 외부성 존재 여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고 유연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비가역적 특성 또한 존재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고용에 대해서는 투자 관련 지원과 마찬가지로 본 제도

와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되, 제도 활용도가 급격히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 제도 수혜기업이 본 제도 대신 고용, 투자 등의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표 IV-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복 적용 배제 적용 제도

동일 과세연도에 대한 중복적용 배제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복적용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li> <li>•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li> <li>• 통합투자세액공제</li> <li>•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li> <l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li> <li>• 제3자물류비용세액공제</li> <li>•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li> <li>•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li> <li>•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li> <li>•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li> <li>• 금 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li> <li>•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li> <li>•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li> <li>•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li> <li>•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li> <li>•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li> <li>•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li> <li>•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li> <li>•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li> <li>•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li> <li>•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li> <li>•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li> <li>•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li> <li>•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li> <li>•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li> <li>•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이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li> <li>•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li> <li>•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li> <li>•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li> <li>•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li> </ul>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국가법령정보시스템, <http://www.law.go.kr/>, 검색일자: 2025. 7. 30.; 국세청, 『2024 중소기업 세제·세정지원제도』, 2024. 2.

- (예산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마지막으로 본 제도와 유사한 성격의 예산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
- 현재 업종 등 최소한의 요건으로 지원하는 예산 사업은 없으며, 코로나19 위기 당시 이루어진 소상공인 대상 보편적인 자금 지원이 가장 유사한 사례인 것으로 파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sup>90</sup>) 2019년 기준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지급
    -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에게는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 여부 상관없이 각각 200만원, 150만원 지급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sup>91</sup>) 2020년 기준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연매출이 저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의 지원금 지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 지급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sup>92</sup>) 매출액이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에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유형별로 100만~500만원의 지원금 지급
  - (희망회복자금<sup>93</sup>) 매출액이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에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유형별로 40만~2,000만원의 지원금 지급
    -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중 2020. 8. 16.~2021. 7. 6.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4억원 이상인 소기업에는 2,000만원의 지원금 지급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sup>94</sup>)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영업시간 제한은 없었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사업체당 100만원의 정액지원금 지급
  - (2차 방역지원금<sup>95</sup>)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에 사업체당 300만원의 정액지원금 지급

9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시행공고(1차)」, 2020. 9. 23 .

9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공고(1차)」, 2021. 1. 6.

9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공고(1차)」, 2021. 3. 29.

93) 중소벤처기업부,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1차)」, 2021. 8. 13.

94)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1차)」, 2021. 12. 23.

95)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시행공고」, 2022. 2. 22.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sup>96)</sup>)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연매출액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600만~1,000만원의 지원금 지급

## 5. 타당성 분석 결과 요약

- 본 제도의 타당성 분석은 정부 개입의 필요성, 지원방식 및 대상의 적절성, 기타 정부 지원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기준으로 수행
- (정부 개입 필요성)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은 부분적으로 인정된다고 평가
  - 중소기업은 시장실패에 더 취약할 수 있으며,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실질 납세 협력비용이 대체로 큰 경향이 있으므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 (지원 방식의 적절성) 본 제도의 지원 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시장실패: 긍정적 외부효과의 교정) 먼저 긍정적 외부효과를 생성하는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근거에 비추어 볼 때 본 제도의 지원 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정부의 개입 근거가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기업 행태를 사회적 최적 수준까지 제고하기 위함이라면, 해당 행태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음
  - 본 제도는 긍정적 외부효과 관련 행태와 연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련 조세지원의 활용도 및 효과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측면도 존재
- (시장실패: 금융시장 정보 비대칭성의 교정) 다음으로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근거와 관련해서도 본 제도의 설계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금융시장 정보 불완전성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우 적자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업종과 지역 요건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본 제도의 설계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

96)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 2022. 5. 30.

- 금융시장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바탕으로 한 보증, 대출 등 금융지원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
- (납세협력비용 완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감면하는 본 제도의 적절성이 일부 성립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조세행정 차원의 지원이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
  - 납세협력을 위한 실질 비용이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큰 경향이 있으므로,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감면하는 본 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하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직접적으로 완화하는 기타 조치가 더욱 적절할 수 있음
- (지원 대상의 적절성) 지원 대상의 적절성은 지원 대상 기업의 규모 및 업종의 측면에서 논의하였으며 대체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중기업 지원의 적절성) 앞서 살펴본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논거, 본 제도의 지원 방식, 상대적으로 넓게 설정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앞서 소개한 정부 개입의 주요 논거인 금융시장의 불완전성 및 납세협력비용 문제의 경우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다소 완화된다는 특징이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주요국에 비해 중소기업 범위가 넓게 설정되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제도의 지원 대상인 중소기업 중 ‘중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판단
- (지원 대상 업종의 적절성) 현행 업종 규정 방식은 구분 체계가 상이하나, 이는 정부 정책 의지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
  - 48개 업종이 일관된 수준으로 구분되지 않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및 세분류, 세세분류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각 업종 분류 내에서도 별도로 제외 또는 포함되는 업종이 존재하는 등 제도의 복잡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다만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일부 사행성 업종 또는 고소득 전문직 업종에 대

한 감면을 배제하고, 친환경 관련 업종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음

- (유사·중복성) 본 제도와 성격이 유사한 조세지출 및 예산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일부 조세지원과는 중복 적용을 허용
- 또한 본 제도는 일부 조세지원 제도를 제외하면 중복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업의 조세지원 중복 수혜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오히려 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본 제도와 어떤 제도의 중복 적용을 허용할 것인지가 중요할 수 있음
  - 현행 제도상 본 제도와 중복 적용이 허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조세지원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이 있음
  - 반면 본 제도와 중복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 제도의 경우 제도의 효과성과 활용도가 저해되는 측면 존재
- 본 제도와 중복 수혜를 허용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하는 한편, 중복 수혜를 허용하지 않으면 긍정적 기업 행태와 연계된 제도들의 효과성이 저해되는 측면
-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정부의 지원 필요성이 명확한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만 본 제도와 중복 적용을 허용하고 기타 제도에 대해서는 중복을 불허하되, 본 제도에서 기타 제도로 수혜 행태를 변경하는 기업에 대해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 연구개발 행위는 긍정적 외부성의 존재로 인해 정부 지원 필요성이 가장 큰 분야이므로 본 제도와 중복을 계속해서 허용하는 것을 고려 가능
  - 다만 고용의 경우 긍정적 외부성 존재 여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고 유연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비가역적 특성 또한 존재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고용에 대해서는 투자 관련 지원과 마찬가지로 본 제도와 중복 적용을 배제하되, 본 제도 대신 고용, 투자 등의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V. 효과성 분석 및 고용영향평가





## V. 효과성 분석 및 고용영향평가

- 본 장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가 중소기업의 재무성과, 투자 및 생산성, 그리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각각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함
    -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본 조세특례 제도가 중소기업의 재무성과, 투자 및 생산성,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으며, 산업별·지역별·규모별·시기별 이질성 분석을 수행함
    -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분석 자료의 한계로 생산성 및 고용영향평가 분석과 규모별 이질성 분석이 생략됨
  - 먼저 분석 대상 기업들의 기초통계를 분석하고, 계량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성과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함

### 1. 분석 자료 및 기초통계 분석

#### 가. 분석 자료

- 본 조세특례제도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한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신고 미시자료 및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미시자료를 활용
  - 해당 자료는 개별 기업정보(매출액, 자산, 업종 등)와 동 조세특례제도 및 기타 조세지원제도(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수혜 현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연도별로 동 제도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을 각각 일정 비율로 무작위 추출 후 추출된 사업자에 대한 분석 기간 전체 자료를 사용함
- 법인사업자 자료
  - (분석 기간) 귀속연도 기준 2016~2023년 연도별 (불균형) 패널미시자료

- (분석 대상) 영리 및 비영리 중소기업 법인 61,744개
  - 분석 대상 기업의 99%는 기타영리법인
  - 전체 분석 표본의 약 98%는 분석 기간 중 1회 이상 본 조세특례제도 수혜
- 업종, 기업 위치, 업력 등의 기업 특성에 대한 정보와 수입 금액, 자산총계, 영업손익, 산출세액, 연구비 등의 재무 정보를 포함함
- 고용 및 임금 관련 내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인세 신고자료를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자료와 연결 후 각 기업의 근로자 수 및 평균 소득 정보 이용함
- 실증분석에서는 다음의 종속변수를 고려함
  - 재무성과: 로그 수입금액, 영업손익률<sup>97)</sup>
  - 투자 및 생산성: 로그 자산총계, 로그 연구개발비, 로그 노동생산성<sup>98)</sup>
  - 고용영향: 로그 근로자 수, 로그 평균 임금
- 주요 설명변수로는 본 조세특례제도 수혜로 인한 세액 감면 여부를 사용하였으며 기타 조세지원제도 수혜 여부 또한 통제변수로 활용함

#### □ 개인사업자 자료

- (분석 기간) 귀속연도 기준 2015~2022년 연도별 (불균형) 패널미시자료
- (분석 대상)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53,178개
  - 전체 분석 표본의 약 29%는 분석 기간 중 본 조세특례 제도 1회 이상 수혜
- 업태명, 사업장, 업력 등의 기업 특성에 관한 정보와 수입금액, 산출세액, 자산총계, 영업손익 등의 재무변수를 포함함
  - 다만 수입금액과 산출세액을 제외한 기타 재무 변수는 일부 기업에만 관측치가 존재함
- 실증분석에서는 다음의 종속변수를 고려함
  - 로그 수입금액, 영업손익률, 자산총계
- 법인사업자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요 설명변수는 본 조세특례제도 수혜로 인한 세액 감면 여부이며 기타 조세지원제도 수혜 여부를 추가로 통제함

97) 영업손익률 = 영업손익/매출액

98) 노동생산성 = 수입금액/근로자수

## 나. 수혜·비수혜기업 기초통계

### 1) 법인사업자

□ <표 V-1>은 법인사업자 분석 대상 기업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냄

- 마지막 두 열은 각각 수혜·비수혜기업-연도의 표본의 기초통계량을 의미함
- 제조업, 건설업, 도매·소매업이 전체 표본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수혜 표본과 비수혜 표본 간 산업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음
- 본 조세특례제도의 수혜를 받은 경우, 수입금액, 산출세액, 영업손익이 평균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 제도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산출세액이 0보다 커야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매출 및 수익이 상대적으로 클 때 제도의 수혜를 받게 됨
- 다만 비수혜 시 자산총계나 연구개발비와 같은 투자 항목은 수혜 시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남

<표 V-1> 법인사업자 분석 대상 기업의 기초통계량

(단위: 백만원)

변수	전체				수혜	비수혜
	평균	중앙값	최솟값	최댓값	평균	평균
수입금액	3,232	1,555	0	414,780	3,315	3,002
자산총계	2,506	1,058	0	419,562	2,451	2,659
산출세액	33.48	6.90	0	15,497	37.34	22.67
영업손익	180.01	68.28	-76,519	67,147	224.88	54.40
연구개발비	19.68	0	0	24,044	18.47	23.07
근로자수	11.18	6	1	1,811	11.04	11.58
업력	9.42	7	0	75	9.24	9.94
산업						
농업·임업·어업	0.007	0	0	1	0.006	0.009
광업	0.001	0	0	1	0.001	0.001
제조업	0.305	0	0	1	0.309	0.295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	0.002	0	0	1	0.002	0.003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0.011	0	0	1	0.011	0.011
건설업	0.255	0	0	1	0.264	0.230

<표 V-1>의 계속

(단위: 백만원)

변수	전체				수혜	비수혜
	평균	중앙값	최솟값	최댓값	평균	평균
도매·소매업	0.272	0	0	1	0.278	0.255
운수·창고업	0.036	0	0	1	0.034	0.042
숙박·음식점업	0.001	0	0	1	0.000	0.002
정보통신업	0.042	0	0	1	0.038	0.055
금융·보험업	0.000	0	0	1	0.000	0.001
부동산업	0.003	0	0	1	0.002	0.007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0.040	0	0	1	0.035	0.053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0.018	0	0	1	0.014	0.027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0.001	0	0	1	0.001	0.002
교육 서비스업	0.001	0	0	1	0.001	0.001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0.002	0	0	1	0.001	0.003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0.004	0	0	1	0.003	0.005
표본 수	359,125				264,612	94,513

자료: 국세청 법인사업자 법인세 신고 미시자료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표 V-2>는 법인사업자 분석 대상 기업의 해당 기간 동안 동 제도 및 기타 제도의 평균 수혜 횟수와 수혜 시 평균 감면 금액을 나타냄

- 2016~2023년 동 제도의 평균 수혜 횟수는 약 4.5회이며 평균 감면 금액은 약 553만원
- 표본 기업들 중 대부분은 기타 제도에 대한 혜택을 활용하지 않았으나,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본 제도와 중복 적용이 허용되어 그중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남

<표 V-2> 법인사업자 분석 대상 기업의 제도 수혜 내역

(단위: 회, 만원)

제도	평균 수혜 횟수	평균 감면 금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4.286	553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 O)	0.028	1,634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 X)	0.003	3,636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0.022	1,113

<표 V-2>의 계속

(단위: 회, 만원)

제도	평균 수혜 횟수	평균 감면 금액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0.004	2,777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0.001	1,407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 O)	0.000	2,993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 X)	0.002	10,119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 O)	0.001	17,150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 X)	0.429	2,838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0.026	3,800
근로자복지증진 시설 투자세액공제	0.000	857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0.001	2,944
의약품 품질관리시설 투자세액공제	0.000	7,559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0.008	1,527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0.015	2,808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0.003	3,788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0.410	1,730

자료: 국세청 법인사업자 법인세 신고 미시자료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비교적 최근 기업들의 수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표 V-3>은 최근 3년간 (2020~2022년도<sup>99)</sup>) 수혜·비수혜기업들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냄
- ‘수혜기업’은 해당 기간 적어도 한 번 이상 수혜를 받은 기업들의 표본이며, ‘비수혜기업’은 한 번도 수혜를 받지 않은 기업들의 표본
  - 최근 3년간 1회 이상 동 제도 수혜기업의 평균 수혜 횟수는 1.83회
  - 최근 3년간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산업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음
  - 수입금액 측면에서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큰 차이는 없으나, 수혜기업은 평균적으로 산출세액과 영업손익이, 비수혜기업은 자산총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99) 해당 자료는 2016~2023년의 기업 정보를 포함하지만, 2023년 기업 자료는 다른 연도에 비해 표본 수가 적어 2020~2022년의 3개년 자료를 분석함.

<표 V-3> 2020~2022년 본 제도 수혜·비수혜 법인사업자 기초통계량

(단위: 백만원)

변수	1회 이상 수혜기업		비수혜기업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최근 3년간 수혜 횟수	1.83	0.78	0	0
수입금액	3,405	7,079	3,565	9,435
자산총계	2,720	6,691	3,274	9,790
산출세액	37.53	167.57	30.05	223.64
영업손익	201.99	752.8	46.72	1,202
연구개발비	29.80	154.85	29.44	206.84
근로자수	11.85	22.86	12.09	31.41
업력	10.27	7.64	11.83	7.83
산업				
농업·임업·어업	0.007	-	0.007	-
광업	0.001	-	0.001	-
제조업	0.307	-	0.304	-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	0.003	-	0.002	-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0.011	-	0.008	-
건설업	0.261	-	0.191	-
도매·소매업	0.268	-	0.288	-
운수·창고업	0.035	-	0.043	-
숙박·음식점업	0.001	-	0.003	-
정보통신업	0.043	-	0.050	-
금융·보험업	0.000	-	0.001	-
부동산업	0.002	-	0.010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0.040	-	0.050	-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0.015	-	0.031	-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0.001	-	0.003	-
교육 서비스업	0.000	-	0.002	-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0.001	-	0.004	-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0.003	-	0.005	-
표본 수	141,491		23,291	

자료: 국세청 법인사업자 법인세 신고 미시자료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음으로 산출세액이 0 이상인 기업만으로 한정하여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을 비교함

○ 세제 지원의 특성상 산출세액이 없는 기업은 본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

- <표 V-4>는 최근 3년간 산출세액이 0 이상인 기업에 한정하여 수혜·비수혜 기업의 기초통계량을 제시
- 산출세액이 0을 초과하는 기업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수혜기업의 수입금액, 자산, 영업손익, 근로자 수 등이 오히려 비수혜기업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이러한 차이는 본 조세특례제도의 효과뿐만 아니라 규모가 더 작고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이 본 제도를 더 활용하려는 경향에서 기인했을 수 있음

<표 V-4> 2020~2022년 본 제도 수혜·비수혜 법인사업자 기초통계량(산출세액 > 0)

(단위: 백만원)

변수	1회 이상 수혜기업		비수혜기업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최근 3년간 수혜 횟수	1.92	0.80	0	0
수입금액	3,693	7,401	7,850	15,560
자산총계	2,919	6,961	5,928	14,591
산출세액	43.72	178.61	96.39	389.54
영업손익	246.02	803.79	470.98	1,725
연구개발비	21.56	165.73	57.96	253.99
근로자수	11.25	23.14	17.88	34.60
업력	10.31	7.64	11.91	7.85
산업(KSIC 표준산업분류)				
농업·임업·어업	0.007	-	0.004	-
광업	0.001	-	0.000	-
제조업	0.319	-	0.313	-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	0.003	-	0.002	-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0.012	-	0.009	-
건설업	0.252	-	0.130	-
도매·소매업	0.276	-	0.367	-
운수·창고업	0.033	-	0.040	-
숙박·음식점업	0.000	-	0.003	-
정보통신업	0.040	-	0.039	-
금융·보험업	0.000	-	0.003	-
부동산업	0.002	-	0.008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0.036	-	0.043	-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0.012	-	0.022	-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0.001	-	0.005	-
교육 서비스업	0.000	-	0.003	-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0.001	-	0.001	-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0.003	-	0.008	-
표본 수	111,533		6,073	

주: 2021~2023년 동안 산출세액이 0 이상인 기업만을 고려함  
 자료: 국세청 법인사업자 법인세 신고 미시자료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 개인사업자

- <표 V-5>는 개인사업자 분석 대상 기업의 기초통계량을 제시함
  - 마지막 두 열은 본 제도 수혜 여부에 따른 기업-연도 표본(수혜·비수혜)을 나타냄
  - 개인사업자의 평균 수입금액은 약 2억원 정도로, 법인사업자 분석 대상 기업보다 수입금액, 자산, 영업손익 등의 규모가 작음
  - 자산총계, 영업손익에 대한 정보는 전체 개인사업자 기업 표본의 약 27%에서만 관측됨
  -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본 조세특례의 수혜를 받은 경우 수입금액, 산출세액, 영업손익 등이 평균적으로 더 높지만 자산의 경우는 수혜를 받지 않을 때 더 높게 나타남
  - 수혜기업들은 주로 제조업, 도매·소매업, 건설업, 운수·창고업에 속하며, 비수혜 기업들은 본 조세특례 제도가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업이나 숙박·음식점업에 속함

<표 V-5> 개인사업자 분석 대상 기업의 기초통계량

(단위: 백만원)

변수	전체				수혜	비수혜
	평균	중앙값	최솟값	최댓값	평균	평균
수입금액	183.32	46.42	0	99,969	482.38	104.45
자산총계	489.87	69.16	0	58,234	231.24	663.31
산출세액	7.93	0.51	0	22,276	11.26	7.05
영업손익	59.19	30.47	-11,425	12,740	64	55.97
업력	11.29	11	0	71	14.92	10.34
산업(KSIC 표준산업분류)						
농업·임업·어업	0.011	0	0	1	0.009	0.011
광업	0.000	0	0	1	0.000	0.000
제조업	0.072	0	0	1	0.218	0.033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	0.008	0	0	1	0.008	0.007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0.001	0	0	1	0.004	0.000
건설업	0.052	0	0	1	0.162	0.023
도매·소매업	0.168	0	0	1	0.400	0.107
운수·창고업	0.112	0	0	1	0.149	0.102
숙박·음식점업	0.116	0	0	1	0.004	0.146
정보통신업	0.002	0	0	1	0.003	0.002

<표 V-5>의 계속

(단위: 백만원)

변수	전체				수혜	비수혜
	평균	중앙값	최솟값	최댓값	평균	평균
금융·보험업	0.004	0	0	1	0.000	0.005
부동산업	0.375	0	0	1	0.020	0.468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0.020	0	0	1	0.005	0.020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0.011	0	0	1	0.007	0.011
교육 서비스업	0.008	0	0	1	0.001	0.008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0.015	0	0	1	0.003	0.015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0.017	0	0	1	0.000	0.017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 서비스업	0.025	0	0	1	0.006	0.025
가구 내 고용활동·기타 자가소비	0.000	0	0	1	0.000	0.000
표본 수	자산총계	76,343			30,645	45,698
	영업손익	76,810			30,770	46,040
	그 외	273,931			57,173	216,758

자료: 국세청 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 미시자료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표 V-6>은 개인사업자 분석 대상 기업의 분석 기간 동안 본 조세특례제도 및 기타 제도 평균 수혜 횟수와 평균 감면금액을 나타냄
  - 2015~2022년 동 제도의 평균 수혜 횟수는 약 1.1회이며 평균 감면금액은 약 142만원
  - 표본 기업들 중 대부분은 기타 제도에 대한 혜택을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V-6> 개인사업자 분석 대상 기업의 제도 수혜 내역

(단위: 회, 만원)

제도	평균 수혜 횟수	평균 감면금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075	14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0.005	742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0.007	1,906
통합투자세액공제	0.003	1,184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0.002	290
특정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0.000	241
통합고용세액공제	0.003	949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0.019	1,460

<표 V-6>의 계속

(단위: 회, 만원)

제도	평균 수혜 횟수	평균 감면금액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0.011	468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0.000	100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0.000	8,521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0.001	958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0.000	1,199

자료: 국세청 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 미시자료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표 V-7>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본 조세특례 제도를 한 번 이상 수혜 받은 적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표본을 구분한 기초통계량을 나타냄
- 최근 3년간 본 제도의 수혜를 받은 적 있는 기업들의 평균 수혜 횟수는 약 1.6회
  - 전체 분석 기간 표본의 기초통계량과 비슷하게 수입금액이나 산출세액, 영업손익에서 수혜기업들이 평균적으로 더 높은 값을 보이지만 자산총계는 비수혜 기업에서 더 높게 나타남

<표 V-7> 2020~2022년 본 제도 수혜·비수혜 개인사업자 기초통계량

(단위: 백만원)

변수	1회 이상 수혜기업		비수혜기업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최근 3년간 수혜 횟수	1.56	0.73	0	0
수입금액	431.94	1488	99.82	694.38
자산총계	243.47	769.80	723.15	1,740
산출세액	11.08	100.02	7.89	107.22
영업손익	63.07	164.40	57.71	202.10
업력	16.07	11.19	11.74	122.19
산업(KSIC 표준산업분류)				
농업·임업·어업	0.010	-	0.011	-
광업	0.001	-	0.000	-
제조업	0.200	-	0.027	-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	0.019	-	0.010	-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0.004	-	0.000	-
건설업	0.163	-	0.016	-

<표 V-7>의 계속

(단위: 백만원)

변수	1회 이상 수혜기업		비수혜기업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도매·소매업	0.374	-	0.092	-
운수·창고업	0.180	-	0.095	-
숙박·음식점업	0.005	-	0.141	-
정보통신업	0.003	-	0.002	-
금융·보험업	0.000	-	0.005	-
부동산업	0.019	-	0.509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0.005	-	0.020	-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0.008	-	0.010	-
교육 서비스업	0.001	-	0.007	-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0.003	-	0.015	-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0.001	-	0.016	-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 서비스업	0.006	-	0.024	-
가구 내 고용활동·기타 자가소비	0.000	-	0.000	-
표본 수	자산총계	11,146	16,183	
	영업손익	11,198	16,290	
	그 외	22,852	77,525	

자료: 국세청 법인사업자 법인세 신고 미시자료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개인사업자 역시 산출세액이 0보다 큰 경우에만 해당 조세특례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표 V-8>은 최근 3년간 산출세액이 0을 초과한 기업에 한정하여 기초통계량을 제시함
  - 추가적으로 <표 V-8>에서는 대다수의 비수혜기업 표본이 속한 금융 및 보건업, 부동산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본 조세특례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업종에 속한 비수혜기업은 제외함
  - 이 경우에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규모 격차는 <표 V-7>에서보다 적고, 수입 금액, 산출세액에 있어서는 수혜기업의 평균 규모가 더 크지만 자산총계, 영업손익은 비수혜기업에서 평균적으로 더 크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표 V-4>에서 법인사업자 비수혜기업의 평균적인 규모가 수혜기업보다 더 큰 것과 대비되는데, 이는 본 조세특례제도의 영향과 더불어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더 작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에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려는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음

<표 V-8> 2020~2022년 본 제도 수혜·비수혜 개인사업자 기초통계량(산출세액 > 0)

(단위: 백만원)

변수	1회 이상 수혜기업		비수혜기업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최근 3년간 수혜 횟수	1.57	0.73	0	0
수입금액	448.59	1,542	220.62	1,261
자산총계	232.91	765.50	320.08	1,760
산출세액	11.54	104.06	9.84	169.77
영업손익	65.25	168.91	73.87	280.10
업력	16.19	11.23	13.09	10.43
산업(KSIC 표준산업분류)				
농업·임업·어업	0.009	-	0.008	-
광업	0.001	-	0.000	-
제조업	0.206	-	0.048	-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	0.018	-	0.018	-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0.004	-	0.001	-
건설업	0.161	-	0.029	-
도매·소매업	0.387	-	0.161	-
운수·창고업	0.188	-	0.223	-
숙박·음식점업	0.005	-	0.332	-
정보통신업	0.003	-	0.005	-
금융·보험업	0.000	-	0.000	-
부동산업	0.001	-	0.003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0.005	-	0.050	-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0.008	-	0.025	-
교육 서비스업	0.001	-	0.014	-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0.003	-	0.053	-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0.001	-	0.030	-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 서비스업	0.000	-	0.000	-
가구 내 고용활동·기타 자가소비	0.000	-	0.000	-
표본 수	자산총계	10,407	6,071	
	영업손익	10,456	6,136	
	그 외	20,864	20,345	

주: 2021~2023년 동안 산출세액이 0 이상인 기업만을 고려하였으며, 업태명 기준으로 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금융 및 보건업, 부동산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함  
 자료: 국세청 법인사업자 법인세 신고 미시자료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 효과성 분석 및 고용영향평가

### 가. 분석 방법

- 본 연구에서는 기업들의 조세특례 수혜 내역을 바탕으로,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간의 성과 및 고용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본 제도의 효과를 식별하고자 함
  - 제도의 효과성 추정은 외생적인 제도의 변화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거나 분석 기간 충분한 제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활용할 수 없음
  - 따라서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간 차이를 이용하여 효과를 추정함
  
- 하지만 제도의 수혜 여부를 직접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추정 시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제도는 산출세액이 발생할 때에만 수혜가 가능함
    -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출이나 수익이 많이 발생하여 산출세액이 커질 때 동 제도의 수혜를 받는 경향성이 나타남(김빛마로 외, 2022)
    - 이를 고려하지 않을 시 본 제도와 성과 사이에 양(+)의 추정편향이 나타날 수 있음
  - 또한 본 제도 수혜 여부는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기업과 활용하지 않는 기업 간 연구자가 관측할 수 없는 이질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 예를 들어 생산성이 낮은/높은 기업일수록 다양한 수혜 제도를 활용하려는 경향성이 있을 수 있음<sup>100)</sup>
    - 이는 <표 V-4>나 <표 V-8>의 수혜·비수혜기업 간 기초통계량 차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간 내생적인 이질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를 고려하지 않을 시에는 본 제도와 성과 사이에 추정편향이 나타날 수 있음

100) 높거나 낮은 생산성과 보조금 수혜 여부에 대한 상관성은 선행연구에서 모두 관측된 바 있음. 재무적으로 제약이 많은 생산성이 낮은 기업일수록 본 제도와 같은 보조금의 수혜를 받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며(Branstetter et al., 2023), 반대로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음(Takahashi and Hashimoto, 2022)

- 따라서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생성 완화 방안을 고려함
  - 분석 기간 동안 일정 이상의 산출세액을 나타내는 기업으로만 표본을 한정하여 첫 번째 문제를 완화하여 분석 진행
    - 구체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 연도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기업들만 표본으로 사용하였으며,<sup>101)</sup>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아 매 연도 산출세액이 발생하는 기업들만을 표본으로 사용함
  - 표본을 분석 기간 동안 한 번 이상 본 조세특례 제도의 수혜를 받은 기업으로 한정하고 수혜 시점의 차이만을 이용하여 효과를 추정함으로써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간의 이질성을 완화함
  - 위의 한정된 표본을 이용하여 2원 패널고정효과 모형과 누적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효과를 추정함
    - 산업×연도와 지역×연도 고정효과를 고려하여 산업과 지역의 선형 추세를 통한 제한 패널고정효과 모델 추정
    - 추가적으로 누적 이중차분법(Stacked Difference-in-Differences, 이하 Stacked DID)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사전 공통 추세를 검증함
  
- 다만 위의 방법으로 앞서 언급한 내생성이 완전히 통제되지 않을 수 있음
  - 위 두 방법론 모두 수혜 시점의 차이를 이용하여 효과를 추정하는데, 수혜 시점의 차이 또한 시간에 따라 변하는 기업의 생산성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음
  - 이 경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산성이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기업들이 본 제도를 활용하려는 경향에 의해 추정 편향이 여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요함
  - 또한 표본을 산출세액이 0보다 크고 본 제도 수혜를 적어도 한 번 이상 받은 기업으로 제한함으로써 표본 선택 편향 문제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에 대한 효과는 배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101) 김빛마로·조희평·윤성만(2022)은 중소기업의 산출세액이 증가할수록 동 제도를 수혜받을 확률이 증가하다가 500만원을 기점으로 해당 증가세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함.

□ 먼저 다음의 2원 패널고정효과 모형 고려

$$y_{it+1} = \alpha + \beta D_{it} + \sum_k \lambda^k S_{it}^k + \eta_i + \theta_t W_i + \epsilon_{it} \quad \text{식 (1)}$$

- $y_{it+1}$ : 종속변수는 기업  $i$ 의  $t+1$ 년도 재무성과 및 고용 관련 변수
  -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다음의 종속변수 사용
    - 재무성과로는 로그 수입 금액, 영업손익률을 사용함
    - 투자 및 생산성 지표로는 로그 자산총계, 로그 연구개발비, 로그 노동생산성을 사용함
    - 고용영향평가를 위해서는 로그 상시근로자 수 및 로그 평균 임금을 사용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 로그 수입금액, 영업손익률, 로그 자산총계를 사용함
  - 동 제도 수혜로 인한 효과는 수혜 다음 연도에 나타난다고 가정함
- $D_{it}$ : 본고의 주요 설명변수인 기업  $i$ 의  $t$ 년도 동 제도 수혜 여부 더미
- $S_{it}^k$ : 기업  $i$ 의  $t$ 년도 기타 유사제도 수혜 여부 더미
  - 이 변수들은 <표 V-2>와 <표 V-6>에 나타난 제도들을 각각 나타냄
- $\eta_i$ : 기업 고정효과
- $\theta_t W_i$ : 시간 고정효과  $\theta_t$ 는 산업, 지역과 같은 시간 불변하는 기업 특성  $W_i$ 와 교호하여 산업과 지역 내 존재하는 시간에 따른 이질적인 효과를 통제
- $\epsilon_{it}$ : 개별적 충격

□ 하지만 위와 같이 수혜 시점에 차이가 있을 때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는 것의 문제점은 최근 연구들에서 다수 지적된 바 있음(de Chaisemartin and D’Haultfoeuille, 2020; Goodman-Bacon, 2021; Callaway and Sant’Anna, 2021)

- 수혜(처치) 시점에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면 이미 처치를 받은 집단이 아직 처치를 받지 않은 집단의 비교 대상(통제군)으로 사용될 수 있어 일명 ‘금지된 비교(forbidden comparisons)’<sup>102)</sup>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구조는 시간에 따라 이질적인 처치 효과가 존재할 경우 추정치에 편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Stacked DID 방법론 사용 (Cengiz et al., 2019; Wing et al., 2024)

102) de Chaisemartin and D’Haultfoeuille(2020)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Goodman-Bacon(2021), Callaway and Sant’Anna(2021), Cengiz et al.(2019), Wing et al.(2024) 등에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론이 제시됨.

- Stacked DID는 수혜(처치) 시점이 다른 집단(cohort)별로 데이터를 각각 구성한 뒤, 이를 하나의 분석 프레임에 병합(stack)하여 전체 효과를 추정하는 방식
  - 본 연구에서는 각 시점별 수혜집단의 처치 시점을 기준으로 처치 전 2기, 처치 후 2기의 분석 윈도우(window)를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처치를 받지 않은 개체만을 통제군으로 사용하여 비교
    - 예를 들어 2019년 수혜집단(cohort)에서 처치 그룹은 2016~2018년에는 수혜를 받지 않았지만 2019~2020년에는 수혜를 받은 기업들이며 통제 그룹은 2016~2020년 사이에 수혜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기업
    - 그리고 이 각각 기준 연도 수혜집단(cohort)별로 구성된 데이터를 병합한 후에 이 병합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적용함
  - 이 방법은 비교 시점을 통일하고, 이미 수혜(처치)를 받은 집단을 통제군에서 배제함으로써 고정효과 모형이 유발할 수 있는 비교군 오염 문제를 회피할 수 있음
  - 또한 처치 전후의 2기를 고려함으로써 수혜를 받은 기업들의 수혜 이전 추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혜 2년 중첩 시 나타나는 효과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위 방법론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Stacked DID 모형 고려

$$y_{jt+1} = \alpha + \sum_{\tau=-1}^2 \delta_{\tau} \cdot I_{\tau} + \sum_{\tau=-1}^2 \beta_{\tau} \cdot I_{\tau} \cdot D_j + \sum_k \lambda^k S_{jt}^k + \eta_j + \theta_t W_j + \epsilon_{jt} \quad \text{식 (2)}$$

- $j$ : 집단(cohort) 단위로 구분된 기업을 식별하는 지표
- $I_{\tau}$ : 분석 윈도우(window) 내 시점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tau = -1, 0, 1, 2$
- $D_j$ : 수혜(처치) 기업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 나머지 변수들은 식 (1)에서 설명된 것과 동일함

## 나. 추정 결과

### 1) 법인사업자에 미치는 효과

#### 가) 기준 분석

##### (1) 재무성과

- <표 0V-9>는 식 (1)과 식 (2)를 추정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수혜 여부가 중소기업의 수익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음
  - 패널 A, B는 종속변수로 각각 로그 수입금액과 영업손익률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나타냄
  - (1), (2)열은 2원 패널고정효과 모형, (3)열은 Stacked DID 추정 결과를 나타냄
  - (1)열과 (2)열의 패널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에서 주요 설명변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수혜 여부 더미변수 ( $D_{it}$ )
  - (3)열의 Stacked DID 추정 결과에서  $I_t$ ,  $\tau=-1,1,2$ 는 본 제도 수혜를 받은 기업의 수혜 2기 전, 수혜 받은 시점, 수혜 1기 이후 시점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며, 이에 따라  $I_{-1}$ ·중특감면수혜( $D_j$ )의 추정 계수는 본 제도 수혜를 받은 그룹의 수혜 이전 추세를 나타내고  $I_1$ ·중특감면수혜( $D_j$ )와  $I_2$ ·중특감면수혜( $D_j$ )의 추정 계수는 수혜 이후 효과를 나타냄<sup>103)</sup>
  - 모든 열에서 기업, 산업×연도, 지역×연도 고정효과를 통제했으며, (2)열과 (3)열에서는 타 제도 수혜 여부( $S_{it}^k$ )를 통제함
  - 분석 기간 중 한 번이라도 수혜를 받았으며, 매 연도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기업만 표본으로 사용
  - [그림 V-1]은 <표 V-9>의 (3)열 Stacked DID 추정 결과를 시점별로 제시한 사건분석(event-study) 형태의 그래프임

103) 수혜 시점 1년 전의 추세  $I_0$ ·중특감면수혜( $D_j$ )은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추정시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변수  $I_{-1}$ ·중특감면수혜 ( $D_j$ ) 중특감면수혜,  $I_1$ ·중특감면수혜( $D_j$ ),  $I_2$ ·중특감면수혜( $D_j$ )의 계수는 수혜 시점 1년 전에 비교한 효과를 의미함.

<표 V-9> 법인사업자 패널고정효과 및 Stacked DID 추정 결과 - 재무성과

	패널고정효과		Stacked DID
	(1)	(2)	(3)
<b>패널A: 로그 수입금액</b>			
중특감면수혜( $D_{it}$ )	-0.0243*** (0.0056)	-0.0210*** (0.0060)	
$I_{-1}$ · 중특감면수혜( $D_j$ )			-0.0138 (0.0154)
$I_1$ · 중특감면수혜( $D_j$ )			0.0110 (0.0156)
$I_2$ · 중특감면수혜( $D_j$ )			-0.0224 (0.0234)
<b>패널B: 영업손익률</b>			
중특감면수혜( $D_{it}$ )	-0.2252 (0.2147)	-0.1135 (0.1155)	
$I_{-1}$ · 중특감면수혜( $D_j$ )			-0.0138* (0.0075)
$I_1$ · 중특감면수혜( $D_j$ )			0.0059* (0.0031)
$I_2$ · 중특감면수혜( $D_j$ )			-0.0010 (0.0045)
타 제도 수혜여부( $S_{it}^k$ ) 통제		Y	Y
기업 고정효과	Y	Y	Y
산업×시간 고정효과	Y	Y	Y
지역×시간 고정효과	Y	Y	Y
N	75,178	75,178	9,312

주: 1.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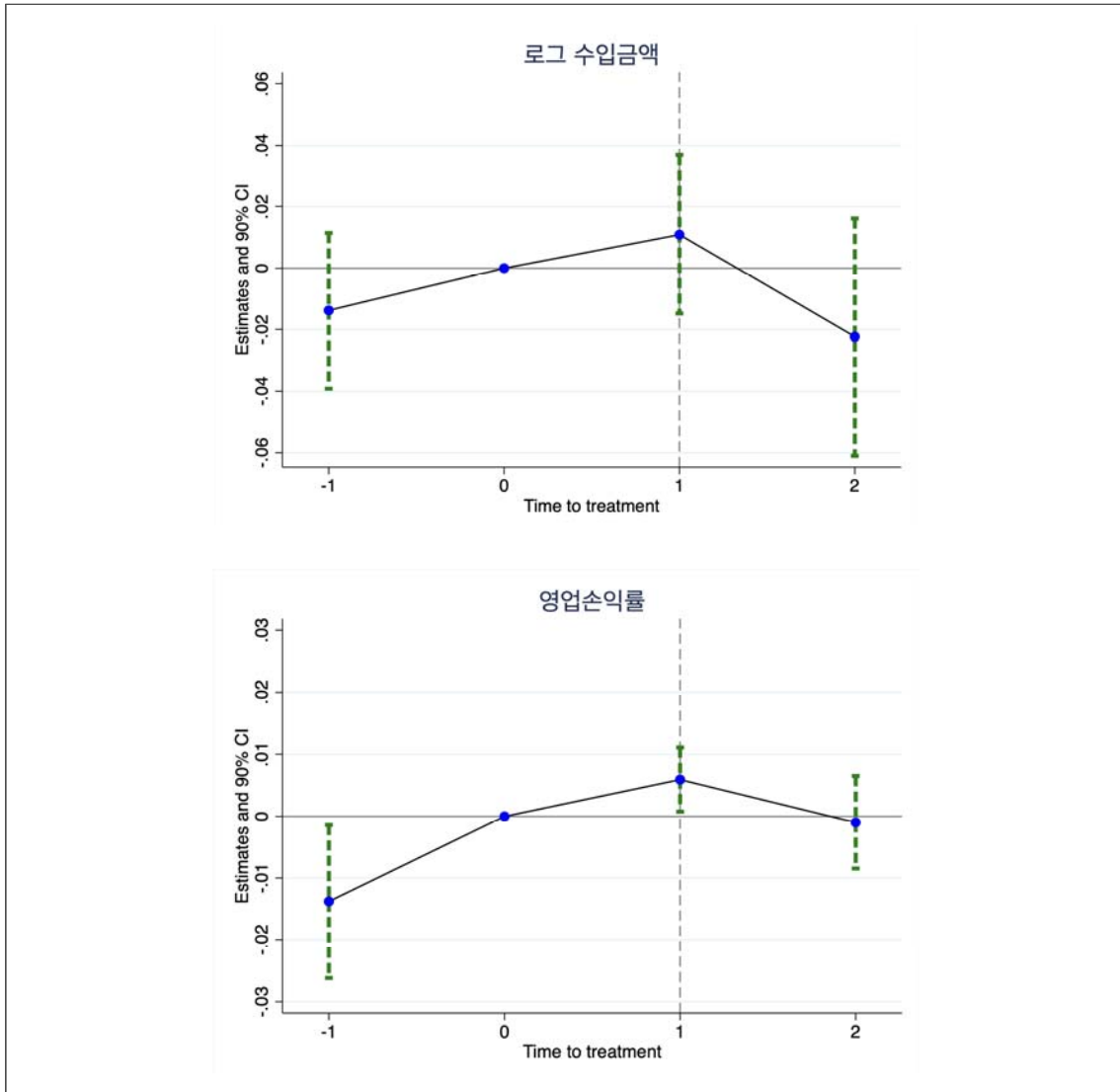
2. 기업 수준으로 군집한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 사용함

3. 분석 기간 중 한 번이라도 동 제도 수혜를 받은 기업만 표본으로 사용함

4. 분석 기간 중 매 연도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기업만 표본으로 사용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V-1] 법인사업자 Stacked DID 추정 결과 - 재무성과



자료: 저자 작성

- <표 V-9>의 추정 결과에 의하면 본 조세특례제도는 법인사업자의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패널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 본 제도의 수혜로 인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2% 정도의 수입금액 감소가 나타났으며 영업손익률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Stacked DID 모형 추정 결과에서는 수입금액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음. 영업손익률에서 1회 수혜 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나타나긴 하지만 수혜 이전 시점부터 증가 추세를 보여 사전 추세의 평행성(parallel pre-trend)

가정을 위반하기 때문에 수혜에 효과가 있다고 결론 내리기 어려움

- 또한 Stacked DID 추정 결과, 제도 첫 수혜 시점뿐만 아니라 두 번째 수혜 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다만 수혜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으나 효과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는 확인되며, 이러한 이질적인 효과는 2원 패널고정효과 추정 시 오염된 비교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다만 Stacked DID를 사용한 경우, 표본의 숫자가 패널고정효과를 사용했을 때 보다 적어 표준오차가 크게 나타나 통계적 유의성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추정 계수 자체가 수혜 이후에 이전 추이와 다르게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2회 수혜 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따라서 본 조세특례제도의 수혜가 법인사업자 기업의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 내리기 어려움

## (2) 투자 및 생산성

- <표 V-10>은 동일한 추정을 수행하여 동 제도 수혜 여부가 중소기업의 투자 행태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V-2]는 Stacked DID 추정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음
  - 패널 A, B, C의 종속변수는 각각 로그 자산총계, 로그 연구개발비, 로그 노동생산성을 나타냄
  - 패널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에서는 자산총계, 연구개발비, 노동생산성에 각각 약 -3%, -13%, -1% 정도의 유의한 음(-)의 효과가 발견됨
  - Stacked DID 모형에서는 위 항목에서의 본 조세특례 효과 추정 계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남.
  - 따라서 본 제도의 수혜는 기업의 투자 및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됨

<표 V-10> 법인사업자 패널고정효과 및 Stacked DID 추정 결과 - 투자 및 생산성

	패널고정효과		Stacked DID
	(1)	(2)	(3)
패널A: 로그 자산총계			
중특감면수혜( $D_{it}$ )	-0.0258*** (0.0048)	-0.0250*** (0.0049)	
$I_{-1}$ · 중특감면수혜( $D_j$ )			0.0011 (0.0124)
$I_1$ · 중특감면수혜( $D_j$ )			-0.0145 (0.0137)
$I_2$ · 중특감면수혜( $D_j$ )			-0.0239 (0.0197)
패널B: 로그 연구개발비			
중특감면수혜( $D_{it}$ )	-0.1448** (0.0625)	-0.1304** (0.0625)	
$I_{-1}$ · 중특감면수혜( $D_j$ )			0.1678 (0.1905)
$I_1$ · 중특감면수혜( $D_j$ )			0.1225 (0.2060)
$I_2$ · 중특감면수혜( $D_j$ )			0.0380 (0.2918)
패널C: 로그 노동생산성			
중특감면수혜( $D_{it}$ )	-0.0108* (0.0058)	-0.0132** (0.0062)	
$I_{-1}$ · 중특감면수혜( $D_j$ )			-0.0178 (0.0191)
$I_1$ · 중특감면수혜( $D_j$ )			0.0097 (0.0195)
$I_2$ · 중특감면수혜( $D_j$ )			-0.0024 (0.0260)
타 제도 수혜여부( $S_{it}^k$ ) 통제		Y	Y
기업 고정효과	Y	Y	Y
산업×시간 고정효과	Y	Y	Y
지역×시간 고정효과	Y	Y	Y
N	75,178	75,178	9,312

주: 1.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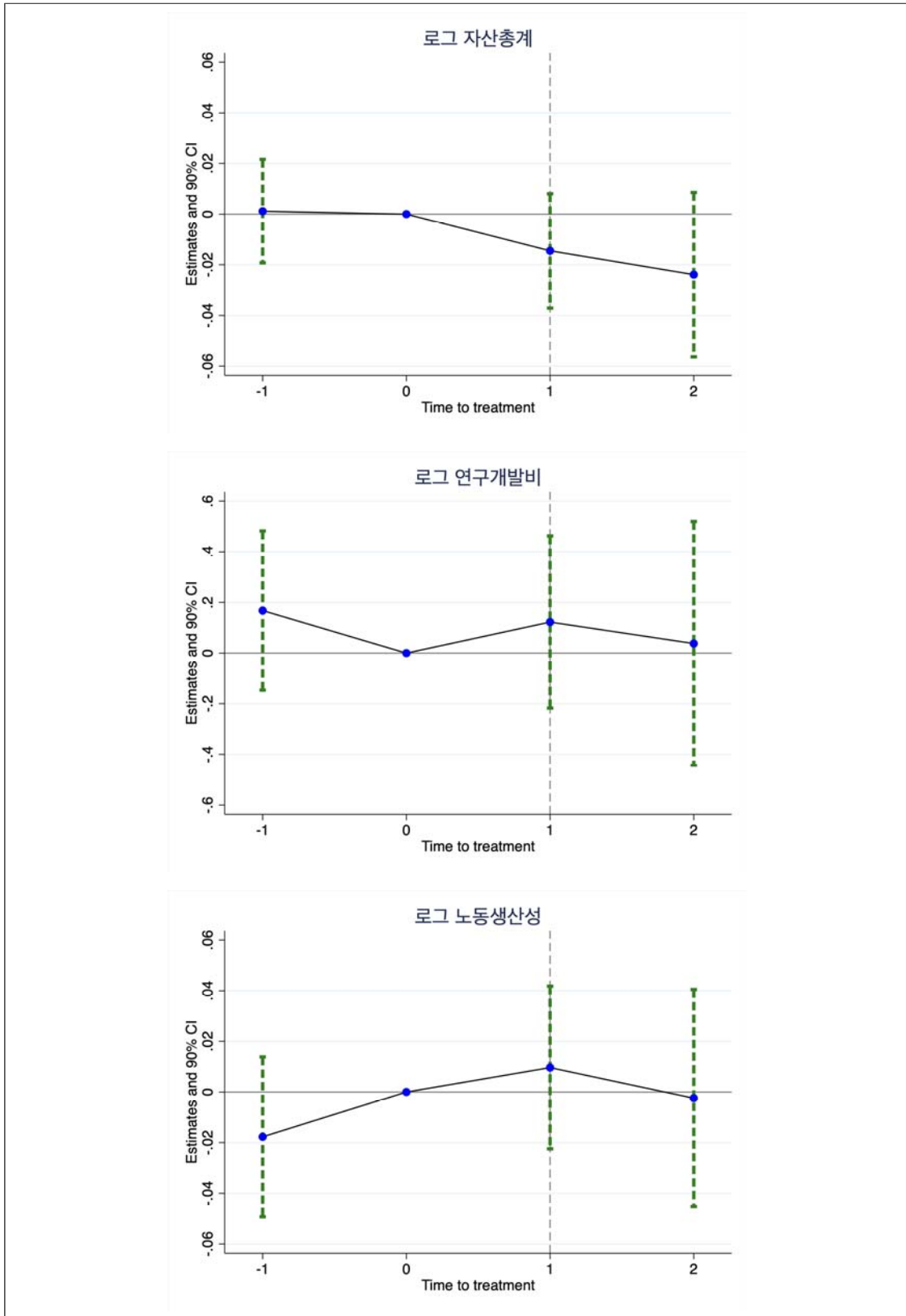
2. 기업 수준으로 군집한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 사용함

3. 분석 기간 중 한 번이라도 동 제도 수혜를 받은 기업만 표본으로 사용함

4. 분석 기간 중 매 연도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기업만 표본으로 사용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V-2] 법인사업자 Stacked DID 추정 결과 - 투자 및 생산성



자료: 저자 작성

(3) 고용영향평가

- <표 V-11>은 동일한 추정을 수행하여 본 조세특례 제도 수혜 여부가 중소기업의 고용 행태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V-3]은 Stacked DID 추정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음
- 패널 A, B의 종속변수는 각각 로그 근로자 수와 로그 평균 임금
  - 패널고정효과 모형과 Stacked DID 모형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음
  - Stacked DID 추정 결과에 따르면 수혜 이후 로그 평균 임금의 추정 계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수혜 이전부터 유의한 증가 추세가 존재해 공통 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음. 따라서 이를 본 제도의 효과로 해석하기 어려움
  - 따라서 본 제도의 수혜는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표 V-11> 법인사업자 패널고정효과 및 Stacked DID 추정 결과 - 고용영향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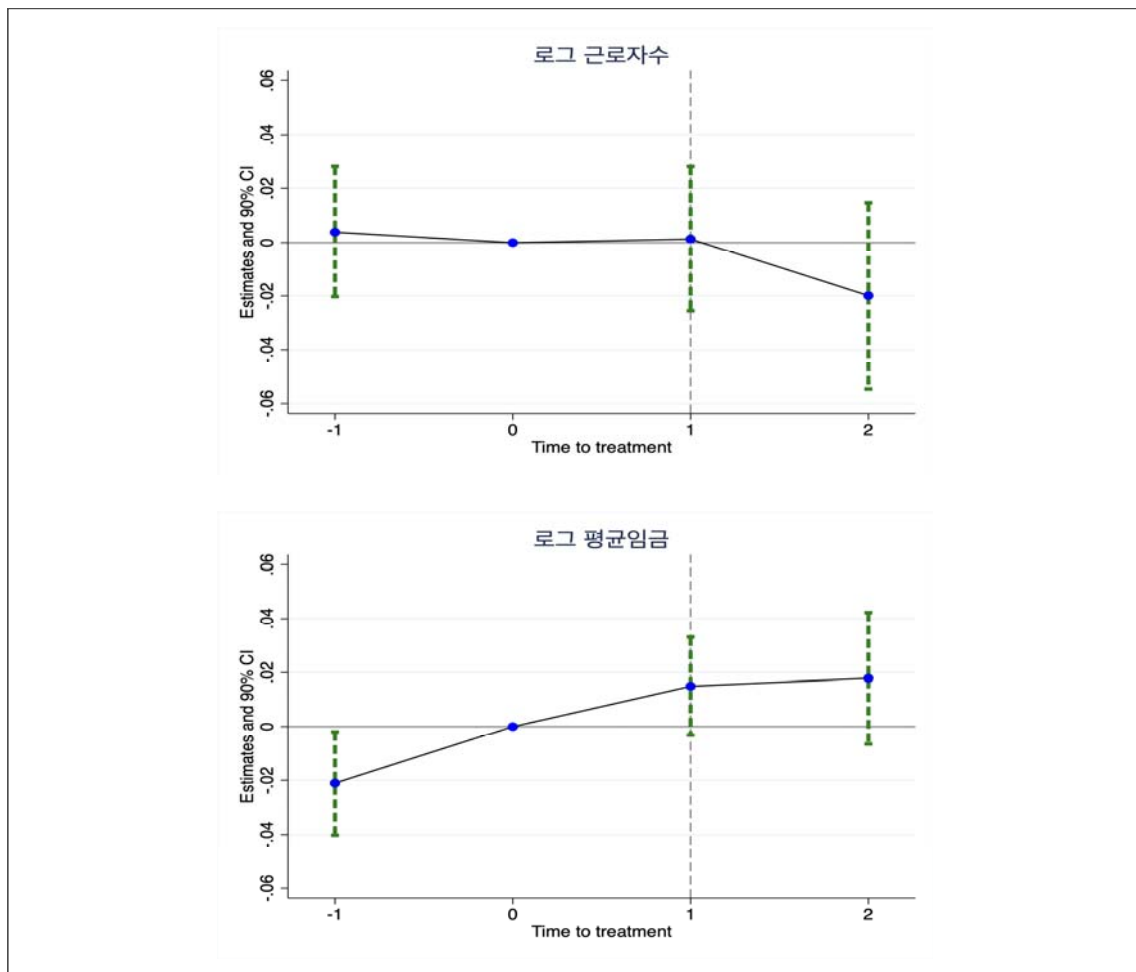
	패널고정효과		Stacked DID
	(1)	(2)	(3)
<b>패널A: 로그 근로자 수</b>			
중특감면수혜( $D_{it}$ )	-0.0136*** (0.0051)	-0.0078 (0.0052)	
$I_{-1} \cdot$ 중특감면수혜( $D_j$ )			0.0039 (0.0147)
$I_1 \cdot$ 중특감면수혜( $D_j$ )			0.0013 (0.0162)
$I_2 \cdot$ 중특감면수혜( $D_j$ )			-0.0199 (0.0211)
<b>패널B: 로그 평균 임금</b>			
중특감면수혜( $D_{it}$ )	0.0003 (0.0035)	-0.0020 (0.0037)	
$I_{-1} \cdot$ 중특감면수혜( $D_j$ )			-0.0211* (0.0116)
$I_1 \cdot$ 중특감면수혜( $D_j$ )			0.0150 (0.0110)
$I_2 \cdot$ 중특감면수혜( $D_j$ )			0.0179 (0.0148)

<표 V-11>의 계속

	패널고정효과		Stacked DID
	(1)	(2)	(3)
타 제도 수혜여부( $S_{it}^k$ ) 통제		Y	Y
기업 고정효과	Y	Y	Y
산업×시간 고정효과	Y	Y	Y
지역×시간 고정효과	Y	Y	Y
N	75,178	75,178	9,312

주: 1.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2. 기업 수준으로 군집한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 사용함  
 3. 분석 기간 중 한 번이라도 동 제도 수혜를 받은 기업만 표본으로 사용함  
 4. 분석 기간 중 매 연도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기업만 표본으로 사용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V-3] 법인사업자 Stacked DID 추정 결과-고용영향평가



자료: 저자 작성

- <표 V-9>, <표 V-10>, <표 V-11>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조세특례의 수혜는 중소기업들의 재무성과, 투자 및 생산성 증가에 기여했다고 결론 내리기 어려우며 고용 행태에도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업들의 본 제도 수혜 시점 차이가 기업의 시간에 따라 변하는 생산성과 관련이 되어있다면 음(-)의 추정 편향을 일으켰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위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음

## 나) 이질성 분석

### (1) 산업별 효과

- 본 제도의 효과는 산업별로 이질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표 V-12>에서는 표본 수가 1,000개 이상인 산업별로 표본을 나누어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나타냄
  - 모든 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는 관찰되지 않음
  - 일부 산업에서는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산업에서 본 조세특례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음
- <표 V-13>은 산업별 Stacked DID 모형 추정 결과를 나타내는데, 결과는 패널고정효과에서와 유사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는 대부분 관측되지 않음
  - 다만 산업별 추정의 경우 일부 산업에서는 관측치가 충분히 많지 않으며 특히 연구개발비 같은 변수는 중소기업 특성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일부 이상치에 의해 크게 변동되거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표 V-13>에 도·소매업에서 본 조세특례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효과는 약 62%로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 추측됨

### (2) 지역별 효과

- 본 조세특례 제도는 감면율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등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수도권·비수도권 간 효과의 이질성이 존재할 수 있음

- <표 V-14>와 <표 V-15>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표본을 나누어 패널고정효과 모형과 Stacked DID 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나타냄
  - 패널고정효과에서는 대체로 수도권에서는 음(-)의 효과, 비수도권에서는 수입 금액과 근로자 수에서 일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결과는 Stacked DID의 추정 결과에서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비수도권에서 수입 금액과 영업손익률에서 수혜 이후 양(+)의 효과가 나타나지만, 수혜 전부터 상승 추세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기 본 조세 특례 제도의 효과라고 보기는 어려움
  - 또한 Stacked DID 추정 결과에서는 수도권에서 수혜 이전 시점의 트렌드와 다르게 수혜 이후 약 2.8% 정도의 평균임금의 상승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는 평균임금 등에서 일부 이질적으로 본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만 모든 추정 방법에서 일관되게 관측되지는 않기 때문에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3) 기업 규모별 효과

- 본 조세특례 제도는 소기업과 중기업에 차등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 규모 간 효과의 이질성이 존재할 수 있음. 특히 소기업에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효과 또한 다를 수 있음
  
- 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표 V-16>과 <표 V-17>은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표본을 나누어 패널고정효과 모형과 Stacked DID 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나타냄
  - 패널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에서 소기업과 중기업 모두 본 조세특례 제도 수혜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 Stacked DID 모형 추정 결과에서 일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가 나타나긴 하지만 이는 수혜 이전 시점 트렌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혜 이후에 수혜 이전의 트렌드와 다른 양(+)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음

- 따라서 중소기업과 소기업에서 이질적인 본 제도의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두 집단 모두 긍정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4) 시기별 효과

- 본 효과성 평가의 분석 기간은 2016년부터 2023년을 포함하지만, 2019년 이후부터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기업들이 조세특례 수혜에 다른 행태 변화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표 V-19>와 <표 V-20>에서는 2019년 이전과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2019년 이후로 표본을 나누어 이질성 분석을 수행함
- <표 V-19>는 패널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를 나타내는데, 대부분의 종속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거나 유의하지 않은 음(-)의 효과가 나타나지만 2019년 이전 평균 임금과 2019년 이후 근로자 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각각 1.5%, 1.1%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
- <표 V-20>의 Stacked DID 추정 결과에서 역시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거나 유의하지 않은 음(-)의 효과가 나타나지만, 2019년 이전 평균임금에서는 패널고정효과 모형에서와 유사하게 본 조세특례제도의 수혜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 3.4% 정도의 상승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두 모형 추정 모두에서 일관적으로 발견되는 효과로, 코로나19 이전 본 조세특례는 고용, 특히 평균임금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따라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재무성과나 투자 및 생산성에서 본 조세특례의 긍정적인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평균임금에는 코로나19 이전 시기에 일부 본 조세특례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

〈표 V-12〉 법인사업자 산업별 패널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

산업	종속변수							N	
	재무성과			투자 및 생산성			고용영향평가		
	수입금액	영업손익률	자산총계	연구개발비	노동생산성	근로자수	평균임금		
제조업	0.0063 (0.0084)	0.0039 (0.0026)	-0.0103 (0.0071)	-0.2772** (0.1226)	0.0010 (0.0090)	0.0052 (0.0081)	0.0075 (0.0047)	29,883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	-0.0038 (0.0323)	0.0098 (0.0084)	-0.0252 (0.0406)	0.3893 (0.2970)	0.0201 (0.0435)	-0.0240 (0.0324)	0.0338 (0.0346)	1,097	
건설업	0.0002 (0.0192)	-0.0016 (0.0031)	-0.0081 (0.0120)	-0.0767 (0.1350)	0.0130 (0.0182)	-0.0128 (0.0126)	0.0034 (0.0090)	14,045	
도매 및 소매업	-0.0601*** (0.0104)	-0.0023 (0.0015)	-0.0514*** (0.0092)	-0.0008 (0.0790)	-0.0314*** (0.0109)	-0.0287*** (0.0090)	-0.0100 (0.0080)	21,493	
운수 및 창고업	-0.0918** (0.0317)	0.0015 (0.0055)	-0.0198 (0.0317)	0.1599 (0.1398)	-0.0598 (0.0374)	-0.0320 (0.0348)	-0.0209 (0.0240)	2,065	
정보통신업	0.0185 (0.0341)	0.0131 (0.0144)	-0.0008 (0.0303)	-0.0972 (0.4003)	0.0087 (0.0349)	0.0098 (0.0326)	-0.0019 (0.0206)	2,36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0314 (0.0284)	0.0028 (0.0062)	-0.0116 (0.0310)	0.0892 (0.4117)	-0.0007 (0.0227)	-0.0308 (0.0244)	-0.0079 (0.0200)	2,178	

주: 1.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2. 기업 수준으로 군집한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 사용함

3. 분석 기간 중 한 번이라도 동 제도 수혜를 받은 기업만 표본으로 사용함

4. 분석 기간 중 매 연도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기업만 표본으로 사용함

5. 타 제도 수혜 여부, t년도 기타 재무 변수, 기업/산업×시간/지역×시간 고정효과가 통제 변수로 사용됨

자료: 저자 작성

〈표 V-13〉 법인사업자 산업별 Stacked DID 추정 결과

산업	재무성과				투자 및 생산성			고용영향평가		N
	수입금액	영업손익률	자산총계	연구개발비	노동생산성	근로자수	평균임금	종속변수		
제조업	$I_{-1} \cdot$ 증특감면수혜( $D_j$ )	-0.0306 (0.0220)	-0.0047 (0.0042)	-0.0033 (0.0186)	0.2867 (0.3612)	-0.0463* (0.0275)	0.0158 (0.0219)	-0.0362** (0.0149)	4,031	
	$I_1 \cdot$ 증특감면수혜( $D_j$ )	0.0080 (0.0246)	0.0070 (0.0051)	-0.0120 (0.0202)	-0.1434 (0.3855)	0.0322 (0.0296)	-0.0242 (0.0246)	0.0149 (0.0146)		
	$I_2 \cdot$ 증특감면수혜( $D_j$ )	-0.0458 (0.0332)	0.0103 (0.0073)	-0.0130 (0.0282)	-0.4190 (0.5736)	-0.0135 (0.0342)	-0.0322 (0.0314)	0.0132 (0.0185)		
건설업	$I_{-1} \cdot$ 증특감면수혜( $D_j$ )	0.0230 (0.0609)	-0.0133 (0.0089)	0.0245 (0.0402)	0.6161 (0.5187)	0.0291 (0.0639)	-0.0061 (0.0433)	-0.0023 (0.0356)	1,141	
	$I_1 \cdot$ 증특감면수혜( $D_j$ )	0.0723 (0.0737)	0.0113 (0.0107)	-0.0253 (0.0446)	0.0820 (0.3870)	0.0384 (0.0778)	0.0339 (0.0430)	0.0035 (0.0378)		
	$I_2 \cdot$ 증특감면수혜( $D_j$ )	0.1298 (0.1034)	0.0085 (0.0139)	-0.0415 (0.0612)	0.0442 (0.6549)	0.1077 (0.1086)	0.0222 (0.0567)	0.0143 (0.0453)		
도·소매업	$I_{-1} \cdot$ 증특감면수혜( $D_j$ )	-0.0324 (0.0390)	-0.0379 (0.0388)	-0.0034 (0.0255)	-0.4997 (0.3827)	-0.0070 (0.0476)	-0.0254 (0.0364)	-0.0187 (0.0282)	1,971	
	$I_1 \cdot$ 증특감면수혜( $D_j$ )	-0.0120 (0.0297)	0.0167 (0.0134)	0.0057 (0.0302)	0.6223* (0.3557)	-0.0583 (0.0379)	0.0463 (0.0346)	0.0049 (0.0267)		
	$I_2 \cdot$ 증특감면수혜( $D_j$ )	-0.0001 (0.0537)	0.0122 (0.0154)	0.0231 (0.0268)	0.4244 (0.4006)	-0.0092 (0.0602)	0.0091 (0.0507)	-0.0201 (0.0378)		

주: 1.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2. 기업 수준으로 군집한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 사용함

3. 분석 기간 중 한 번이라도 동 제도 수혜를 받은 기업만 표본으로 사용함

4. 분석 기간 중 매 연도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기업만 표본으로 사용함

5. 타 제도 수혜 여부, t년도 기타 재무 변수, 기업/산업×시간/지역×시간 고정효과가 통제 변수로 사용됨

자료: 저자 작성

〈표 V-14〉 법인사업자 지역별 패널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

지역	종속변수						N	
	재무성과		투자 및 생산성		고용			
	수입금액	영업손익률	자산총계	연구개발비	노동생산성	근로자수	평균임금	
수도권								
중특감면수혜( $D_{it}$ )	-0.0484*** (0.0076)	0.0049 (0.0531)	-0.0418*** (0.0067)	-0.1816** (0.0814)	-0.0253*** (0.0076)	-0.0230*** (0.0064)	-0.0037 (0.0037)	37,129
비수도권								
중특감면수혜( $D_{it}$ )	0.0230** (0.0093)	0.0005 (0.0017)	0.0058 (0.0067)	-0.0691 (0.0956)	0.0075 (0.0105)	0.0154* (0.0089)	0.0036 (0.0058)	37,970

주: 1.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2. 기업 수준으로 군집한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 사용함

3. 분석 기간 중 한 번이라도 동 제도 수혜를 받은 기업만 표본으로 사용함

4. 분석 기간 중 매 연도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기업만 표본으로 사용함

5. 타 제도 수혜 여부,  $t$ 년도 기타 재무 변수, 기업/산업 $\times$ 시간/지역 $\times$ 시간 고정효과가 통제 변수로 사용됨

자료: 저자 작성

〈표 V-15〉 법인사업자 지역별 Stacked DID 추정 결과

지역	종속변수								N	
	재무성과				투자 및 생산성					
	수입금액	영업손익률	자산총계	연구개발비	노동생산성	근로자수	고용	평균임금		
<b>수도권</b>										
$I_{-1} \cdot$ 증특감면수혜( $D_j$ )	0.0164 (0.0220)	-0.0227 (0.0148)	-0.0182 (0.0170)	0.1304 (0.2791)	-0.0024 (0.0257)	0.0188 (0.0187)	-0.0120 (0.0155)			
$I_1 \cdot$ 증특감면수혜( $D_j$ )	-0.0177 (0.0209)	0.0011 (0.0040)	-0.0264 (0.0191)	0.1819 (0.2749)	-0.0164 (0.0248)	-0.0013 (0.0207)	0.0276* (0.0144)			5,300
$I_2 \cdot$ 증특감면수혜( $D_j$ )	-0.0237 (0.0317)	-0.0033 (0.0059)	-0.0249 (0.0279)	0.0274 (0.4213)	0.0081 (0.0338)	-0.0318 (0.0278)	0.0260 (0.0191)			
<b>비수도권</b>										
$I_{-1} \cdot$ 증특감면수혜( $D_j$ )	-0.0663*** (0.0215)	-0.0093*** (0.0044)	0.0192 (0.0177)	0.3388 (0.2703)	-0.0568* (0.0290)	-0.0094 (0.0241)	-0.0372** (0.0187)			
$I_1 \cdot$ 증특감면수혜( $D_j$ )	0.0437* (0.0237)	0.0098** (0.0048)	-0.0021 (0.0190)	-0.0675 (0.2991)	0.0389 (0.0320)	0.0048 (0.0266)	-0.0028 (0.0171)			4,000
$I_2 \cdot$ 증특감면수혜( $D_j$ )	-0.0344 (0.0351)	0.0001 (0.0069)	-0.0308 (0.0277)	-0.1149 (0.3960)	-0.0254 (0.0423)	-0.0090 (0.0334)	0.0089 (0.0232)			

주: 1.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2. 기업 수준으로 군집한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 사용함  
 3. 분석 기간 중 한 번이라도 동 제도 수혜를 받은 기업만 표본으로 사용함  
 4. 분석 기간 중 매 연도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기업만 표본으로 사용함  
 5. 타 제도 수혜 여부, t년도 기타 재무 변수, 기업/산업×시간/지역×시간 고정효과가 통제 변수로 사용됨  
 자료: 저자 작성

〈표 V-16〉 법인사업자 기업 규모별 패널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

기업 규모	종속변수						N	
	재무성과		투자 및 생산성		고용			
	수입금액	영업손익률	자산총계	연구개발비	노동생산성	근로자수	평균임금	
<b>소기업</b>								
중특감면수혜( $D_{it}$ )	-0.0038 (0.0073)	0.0005 (0.0016)	-0.0115** (0.0058)	-0.2298*** (0.0809)	-0.0010 (0.0076)	-0.0028 (0.0065)	0.0062 (0.0045)	59,059
<b>중기업</b>								
중특감면수혜( $D_{it}$ )	-0.0146 (0.0099)	-0.1490 (0.1944)	-0.0177** (0.0079)	0.0938 (0.1151)	-0.0092 (0.0111)	-0.0054 (0.0095)	-0.0098 (0.0074)	15,203

주: 1.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2. 기업 수준으로 균집한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 사용함

3. 분석 기간 중 한 번이라도 동 제도 수혜를 받은 기업만 표본으로 사용함

4. 분석 기간 중 매 연도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기업만 표본으로 사용함

5. 타 제도 수혜 여부,  $t$ 년도 기타 재무 변수, 기업/산업 $\times$ 시간/지역 $\times$ 시간 고정효과가 통제 변수로 사용됨

자료: 저자 작성

〈표 V-17〉 법인사업자 기업 규모별 Stacked DID 추정 결과

기업 규모	종속변수							N
	재무성과		투자 및 생산성		고용			
	수입금액	영업손익률	자산총계	연구개발비	노동생산성	근로자수	고용	평균임금
<b>소기업</b>								
$I_{-1} \cdot$ 증특감면수혜( $D_j$ )	-0.0259 (0.0182)	-0.0154* (0.0085)	-0.0016 (0.0158)	0.3975* (0.2333)	-0.0598** (0.0227)	0.0249 (0.0177)	-0.0230* (0.0136)	
$I_1 \cdot$ 증특감면수혜( $D_j$ )	0.0231 (0.0203)	0.0084* (0.0044)	0.0001 (0.0167)	0.0102 (0.2507)	0.0098 (0.0249)	0.0133 (0.0194)	0.0235* (0.0134)	6,509
$I_2 \cdot$ 증특감면수혜( $D_j$ )	-0.0624** (0.0271)	-0.0021 (0.0059)	-0.0111 (0.0234)	-0.2267 (0.3802)	-0.0473 (0.0308)	-0.0151 (0.0257)	0.0319* (0.0173)	
<b>중기업</b>								
$I_{-1} \cdot$ 증특감면수혜( $D_j$ )	0.1006*** (0.0313)	-0.0129*** (0.0049)	0.0496** (0.0205)	-0.2634 (0.3720)	0.0974** (0.0400)	0.0031 (0.0290)	0.0028 (0.0189)	
$I_1 \cdot$ 증특감면수혜( $D_j$ )	0.0005 (0.0309)	0.0019 (0.0050)	-0.0099 (0.0233)	0.5914 (0.4164)	0.0076 (0.0364)	-0.0071 (0.0279)	-0.0198 (0.0198)	2,690
$I_2 \cdot$ 증특감면수혜( $D_j$ )	0.0458 (0.0484)	0.0012 (0.0083)	0.0072 (0.0362)	0.9530 (0.5759)	0.0431 (0.0544)	0.0027 (0.0415)	-0.0394 (0.0314)	

주: 1.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2. 기업 수준으로 군집한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 사용함  
 3. 분석 기간 중 한 번이라도 동 제도 수혜를 받은 기업만 표본으로 사용함  
 4. 분석 기간 중 매 연도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기업만 표본으로 사용함  
 5. 타 제도 수혜 여부, t년도 기타 재무 변수, 기업/산업×시간/지역×시간 고정효과가 통제 변수로 사용됨  
 자료: 저자 작성

〈표 V-18〉 법인사업자 시기별 패널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

연도	종속변수						N	
	재무성과		투자 및 생산성		고용			
	수입금액	영업손익률	자산총계	연구개발비	노동생산성	근로자수	평균임금	
≤ 2019년								
중특감면수혜 ( $D_{it}$ )	-0.0092 (0.0080)	0.0173 (0.0560)	-0.0034 (0.0059)	-0.0957 (0.0883)	-0.0141 (0.0094)	0.0049 (0.0075)	0.0149*** (0.0056)	34,552
> 2019년								
중특감면수혜 ( $D_{it}$ )	-0.0006 (0.0072)	-0.0045** (0.0021)	-0.0013 (0.0048)	0.0464 (0.0759)	-0.0120 (0.0081)	0.0114* (0.0063)	-0.0073 (0.0048)	39,594

주: 1.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2. 기업 수준으로 군집한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 사용함

3. 분석 기간 중 한 번이라도 동 제도 수혜를 받은 기업만 표본으로 사용함

4. 분석 기간 중 매 연도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기업만 표본으로 사용함

5. 타 제도 수혜 여부,  $t$ 년도 기타 재무 변수, 기업/산업×시간/지역×시간 고정효과가 통제 변수로 사용됨

자료: 저자 작성

〈표 V-19〉 법인사업자 시기별 Stacked DID 추정 결과

연도	종속변수							N
	재무성과		투자 및 생산성		고용			
	수입금액	영업손익률	자산총계	연구개발비	노동생산성	근로자수	평균임금	
<b>≤ 2019년</b>								
$I_{-1} \cdot$ 증특감면수혜( $D_j$ )	-0.0130 (0.0157)	-0.0066 (0.0049)	0.0101 (0.0133)	0.3996* (0.2159)	-0.0085 (0.0201)	-0.0044 (0.0161)	-0.0180 (0.0130)	
$I_1 \cdot$ 증특감면수혜( $D_j$ )	0.0376 (0.0239)	0.0080 (0.0058)	0.0132 (0.0211)	-0.0721 (0.3468)	0.0286 (0.0312)	0.0091 (0.0250)	0.0344* (0.0166)	4,786
$I_2 \cdot$ 증특감면수혜( $D_j$ )	-	-	-	-	-	-	-	
<b>&gt; 2019년</b>								
$I_{-1} \cdot$ 증특감면수혜( $D_j$ )	-0.1002 (0.1174)	-0.0077 (0.0086)	0.0701 (0.1515)	0.1600 (0.4469)	-0.2278* (0.1220)	0.1276 (0.0793)	0.1773** (0.0821)	
$I_1 \cdot$ 증특감면수혜( $D_j$ )	-0.0311 (0.0271)	-0.0095** (0.0049)	-0.0473** (0.0236)	0.1968 (0.3011)	-0.0523 (0.0337)	0.0212 (0.0251)	-0.0103 (0.0198)	4,122
$I_2 \cdot$ 증특감면수혜( $D_j$ )	-0.0644* (0.0350)	-0.0191*** (0.0067)	-0.0614** (0.0309)	0.1756 (0.3885)	-0.0785 (0.0419)	0.0141 (0.0309)	-0.0007 (0.0227)	

주: 1.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2. 기업 수준으로 군집한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 사용함

3. 분석 기간 중 한 번이라도 동 제도 수혜를 받은 기업만 표본으로 사용함

4. 분석 기간 중 매 연도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기업만 표본으로 사용함

5. 타 제도 수혜 여부, t년도 기타 재무 변수, 기업/산업×시간/지역×시간 고정효과가 통제 변수로 사용됨

자료: 저자 작성

## 2) 개인사업자에 미치는 효과

### 가) 기준 분석

- <표 V-20>은 패널고정효과 식 (1)과 Stacked DID 식 (2)를 추정하여 본 조세특례 제도 수혜 여부가 개인사업자의 재무성과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냄
  - 패널 A, B, C는 각각 로그 수입금액, 영업손익률, 로그 자산총계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나타냄
  - (1), (2)열은 2원 패널고정효과 모형, (3)열은 Stacked DID 추정 결과를 나타냄
  - 분석 기간 중 1회 이상 본 조세특례 제도 수혜를 받았으며, 모든 연도 산출세액이 0 초과인 기업만 표본으로 사용함
  - 모든 열에서 기업, 산업×연도, 지역×연도 고정효과를 통제했으며, (2)열과 (3)열에서는 타 제도 수혜 여부를 통제함
  - [그림 V-4]는 <표 V-20>의 (3)열 Stacked DID 추정 결과를 시점별로 제시한 사건사 분석(event-study) 형태의 그래프임
  
- <표 V-20>의 패널고정효과 추정 결과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기업은 본 조세특례 제도 수혜로 수입금액이 약 14% 증가하고 영업손익률은 약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자산총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3)열의 Stacked DID 추정 결과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음
  - 수입금액의 경우 [그림 V-4]에서 확인할 수 있듯 수혜 이전 시점부터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간 격차가 존재했으며, 2회 수혜 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 추정 계수가 오히려 감소함
  - 영업손익률 역시 Stacked DID 추정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추정 계수도 수혜 시점 이전부터 상승 추세에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개인사업자에 대한 추정 결과에서는 법인사업자보다 패널고정효과와 Stacked DID 간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원 패널고정효과 추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된 비교군 문제가 개인사업자 표본에서 더욱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조세특례제도의 수혜는 개인사업자 기업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효과는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됨

<표 V-20> 개인사업자 패널고정효과 및 Stacked DID 추정 결과

	패널고정효과		Stacked DID
	(1)	(2)	(3)
<b>패널A: 로그 수입금액</b>			
중특감면수혜( $D_{it}$ )	0.1382*** (0.0220)	0.1396*** (0.0221)	
$I_{-1}$ · 중특감면수혜( $D_j$ )			-0.0978*** (0.0266)
$I_1$ · 중특감면수혜( $D_j$ )			0.0340 (0.0265)
$I_2$ · 중특감면수혜( $D_j$ )			-0.0353 (0.0353)
N	41,909	41,909	13,178
<b>패널B: 영업손익률</b>			
중특감면수혜( $D_{it}$ )	-0.0120* (0.0071)	-0.0124* (0.0072)	
$I_{-1}$ · 중특감면수혜( $D_j$ )			-0.0087 (0.0068)
$I_1$ · 중특감면수혜( $D_j$ )			0.0051 (0.0063)
$I_2$ · 중특감면수혜( $D_j$ )			0.0114 (0.0075)
N	22,537	22,537	3,784
<b>패널C: 로그 자산총계</b>			
중특감면수혜( $D_{it}$ )	0.1610 (0.1063)	0.1628 (0.1058)	
$I_{-1}$ · 중특감면수혜( $D_j$ )			0.2530 (0.1858)
$I_1$ · 중특감면수혜( $D_j$ )			0.0693 (0.2348)
$I_2$ · 중특감면수혜( $D_j$ )			0.6433 (0.3988)
N	22,447	22,447	3,738
타 제도 수혜여부( $S_{it}^k$ ) 통제		Y	Y
기업 고정효과	Y	Y	Y
산업×시간 고정효과	Y	Y	Y
지역×시간 고정효과	Y	Y	Y

주: 1.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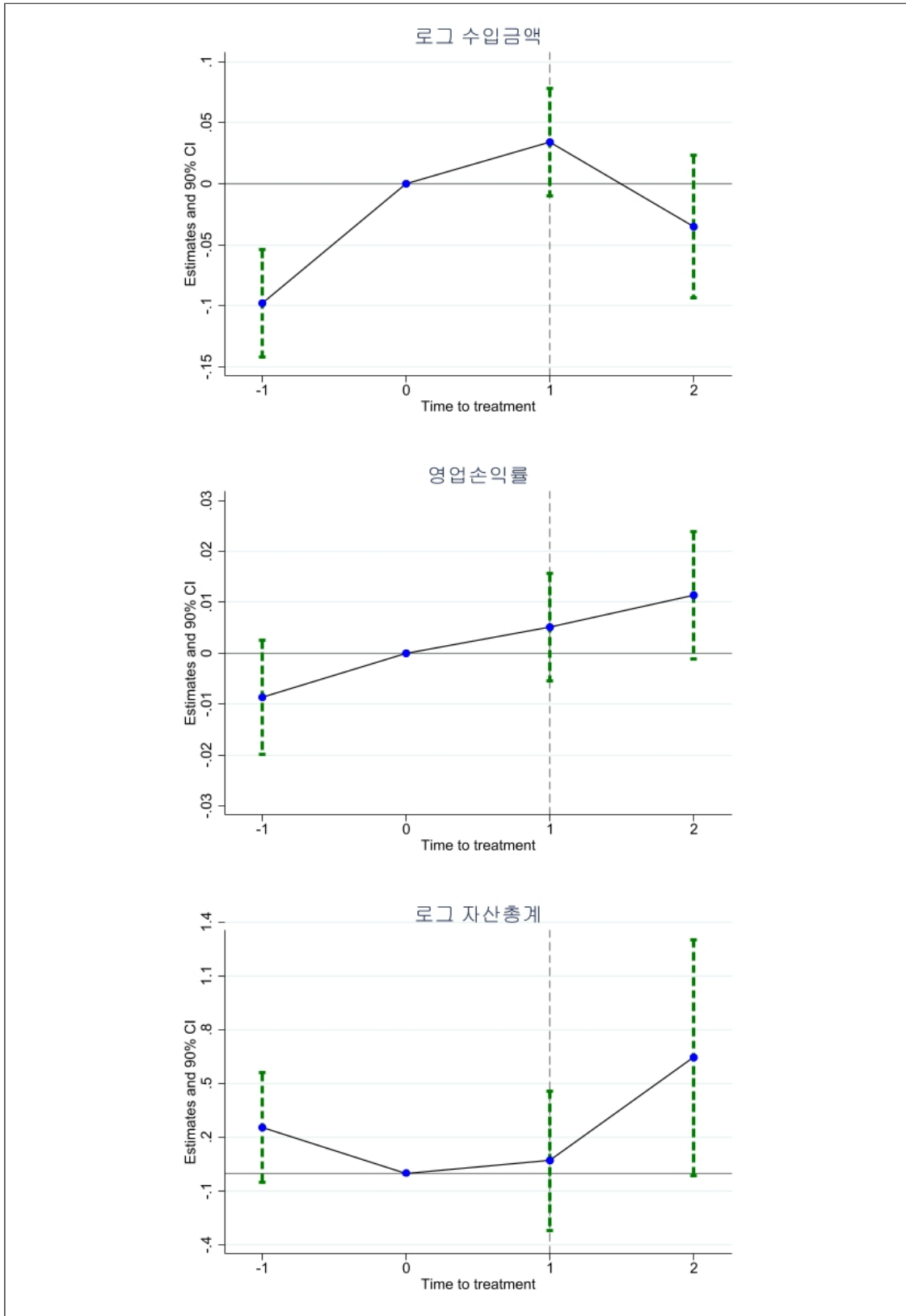
2. 기업 수준으로 군집한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 사용함

3. 분석 기간 중 한 번이라도 동 제도 수혜를 받은 기업만 표본으로 사용함

4. 분석 기간 중 매 연도 산출세액이 0 초과인 기업만 표본으로 사용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V-4] 개인사업자 Stacked DID 추정 결과



자료: 저자 작성

## 나) 이질성 분석

### (1) 산업별 효과

- 개인사업자 역시 본 조세특례의 효과가 산업별로 이질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표 V-21>과 <표 V-22>는 KSIC 표준산업분류 대분류상 표본이 1,000개 이상인 산업 및 종속변수를 구분하여 각각 패널고정효과와 Stacked DID 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나타냄
  
- <표 V-21>의 패널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에서 수입금액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5~27%의 양(+)의 효과가 나타남
  - 영업손익률, 자산총계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 양(+)의 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하지만 이 역시 앞선 추정에서와 비슷하게 <표 V-22>의 Stacked DID 추정 결과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음
  - 앞서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에서 수입금액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가 나타난 것은 이미 수혜 이전부터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사이에 격차가 존재했으며 그 추정치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Stacked DID 추정 결과에서는 건설업에서 본 조세특례 제도 수혜 이후 수입금액이 이전 트렌드와 다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약 14% 정도 증가함. 다만 2회 수혜 시 이러한 효과가 지속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효과의 이질성은 패널고정효과 모형 추정치에 추정 편향을 가져왔을 수 있음
  
- 따라서 산업별 추정 결과, 일부 산업(건설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른 산업이나 모든 추정 모형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아님

<표 V-21> 개인사업자 산업별 패널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

산업	종속변수		
	수입금액	영업손익률	자산총계
<b>제조업</b>			
중특감면수혜( $D_{it}$ )	0.2730*** (0.1018)	0.0109 (0.0070)	0.2358 (0.1838)
N	9,296	6,684	6,673
<b>건설업</b>			
중특감면수혜( $D_{it}$ )	0.0981 (0.0713)	0.0008 (0.0091)	0.2874 (0.4008)
N	5,948	1,884	1,850
<b>도매 및 소매업</b>			
중특감면수혜( $D_{it}$ )	0.0863*** (0.0168)	0.0001 (0.0035)	0.1949 (0.1457)
N	16,682	10,971	10,982
<b>운수 및 창고업</b>			
중특감면수혜( $D_{it}$ )	0.0469*** (0.0125)	0.0059 (0.0085)	0.8339 (0.6676)
N	6,842	1,127	1,099

주: 1.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2. 기업 수준으로 군집한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 사용함  
 3. 분석 기간 중 한 번이라도 동 제도 수혜를 받은 기업만 표본으로 사용함  
 4. 분석 기간 중 매 연도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기업만 표본으로 사용함  
 5. 타 제도 수혜 여부, t년도 기타 재무 변수, 기업/산업×시간/지역×시간 고정효과가 통제 변수로 사용됨  
 자료: 저자 작성

<표 V-22> 개인사업자 산업별 패널고정효과 및 Stacked DID 모형 추정 결과

산업	종속변수		
	수입금액	영업손익률	자산총계
<b>제조업</b>			
$I_{-1} \cdot$ 중특감면수혜( $D_j$ )	-0.2344* (0.1297)	-	-
$I_1 \cdot$ 중특감면수혜( $D_j$ )	0.0850 (0.0729)	-	-
$I_2 \cdot$ 중특감면수혜( $D_j$ )	-0.1668 (0.1211)	-	-
N	1,949	-	-
<b>건설업</b>			
$I_{-1} \cdot$ 중특감면수혜( $D_j$ )	-0.1832 (0.1432)	-	-
$I_1 \cdot$ 중특감면수혜( $D_j$ )	0.1379** (0.0615)	-	-
$I_2 \cdot$ 중특감면수혜( $D_j$ )	0.0590 (0.0868)	-	-
N	1,329	-	-
<b>도매 및 소매업</b>			
$I_{-1} \cdot$ 중특감면수혜( $D_j$ )	-0.1199*** (0.0285)	-0.0233** (0.0098)	0.2018 (0.2306)
$I_1 \cdot$ 중특감면수혜( $D_j$ )	0.0184 (0.0349)	0.0016 (0.0090)	-0.2141 (0.3345)
$I_2 \cdot$ 중특감면수혜( $D_j$ )	-0.0631 (0.0476)	-0.0131 (0.0085)	0.7189 (0.6549)
N	3,830	1,300	1,292
<b>운수 및 창고업</b>			
$I_{-1} \cdot$ 중특감면수혜( $D_j$ )	-0.0154 (0.0150)	-	-
$I_1 \cdot$ 중특감면수혜( $D_j$ )	-0.0038 (0.0196)	-	-
$I_2 \cdot$ 중특감면수혜( $D_j$ )	-0.0552* (0.0288)	-	-
N	3,999	-	-

주: 1.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2. 기업 수준으로 군집한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 사용함

3. 분석 기간 중 한 번이라도 동 제도 수혜를 받은 기업만 표본으로 사용함

4. 분석 기간 중 매 연도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기업만 표본으로 사용함

5. 타 제도 수혜 여부,  $t$ 년도 기타 재무 변수, 기업/산업 $\times$ 시간/지역 $\times$ 시간 고정효과가 통제 변수로 사용됨

자료: 저자 작성

## (2) 지역별 효과

- <표 V-23>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표본을 구분하여 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패널 A, B는 각각 패널고정효과와 Stacked DID 모형 추정 결과를 나타냄
  - 전반적으로 앞선 결과들과 비슷한 경향이 나타남
  
- 패널 A의 패널고정효과 추정 모형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수입금액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 12~16%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영업손익률과 자산총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효과가 나타남
  
- 하지만 역시 패널 B의 Stacked DID 추정 결과에서 이러한 결과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는 않음. 수입금액에서 수혜 이전 시점부터 상승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어 패널고정효과 모형의 결과가 본 조세특례의 효과가 아닌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구조적 차이에 의한 것임을 보여줌
  - 영업손익률과 자산총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질성을 고려하더라도 개인사업자에게 본 조세특례가 양(+)의 효과를 미쳤다고 보긴 어려움

<표 V-23> 개인사업자 지역별 패널고정효과 및 Stacked DID 모형 추정 결과

지역	종속변수		
	수입금액	영업손익률	자산총계
<b>패널A: 패널고정효과</b>			
수도권	0.1182*** (0.0212)	-0.0094 (0.0093)	0.1371 (0.1351)
N	20,307	11,899	11,849
비수도권	0.1601*** (0.0398)	-0.0155* (0.0092)	0.2272 (0.1731)
N	21,587	10,619	10,579
<b>패널B: Stacked DID</b>			
수도권			
$I_{-1} \cdot$ 중특감면수혜( $D_j$ )	-0.1062*** (0.0261)	-0.0075 (0.0099)	0.2217 (0.2468)
$I_1 \cdot$ 중특감면수혜( $D_j$ )	0.0221 (0.0252)	0.0017 (0.0076)	0.0849 (0.3244)
$I_2 \cdot$ 중특감면수혜( $D_j$ )	-0.0460 (0.0369)	0.0115 (0.0082)	0.5708 (0.5381)
N	6,799	2,353	2,318
비수도권			
$I_{-1} \cdot$ 중특감면수혜( $D_j$ )	-0.0950* (0.0538)	-0.0105 (0.0084)	0.1641 (0.2602)
$I_1 \cdot$ 중특감면수혜( $D_j$ )	0.0540 (0.0494)	0.0014 (0.0122)	0.2957 (0.3380)
$I_2 \cdot$ 중특감면수혜( $D_j$ )	-0.0335 (0.0648)	-0.0009 (0.0145)	0.9772 (0.6407)
N	6,372	1,434	1,414

주: 1.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2. 기업 수준으로 군집한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 사용함  
 3. 분석 기간 중 한 번이라도 동 제도 수혜를 받은 기업만 표본으로 사용함  
 4. 분석 기간 중 매 연도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기업만 표본으로 사용함  
 5. 타 제도 수혜 여부, t년도 기타 재무 변수, 기업/산업×시간/지역×시간 고정효과가 통제 변수로 사용됨  
 자료: 저자 작성

### (3) 시기별 효과

-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사업자의 행태 변화가 있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표 V-24>는 표본을 2019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패널고정효과와 Stacked DID 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나타냄
  - 패널 A, B는 각각 패널고정효과와 Stacked DID 모형 추정 결과를 나타냄
  
- 패널 A의 패널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에서는 2019년 이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수입금액에 평균적으로 약 5.4%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나, 패널 B의 Stacked DID 추정 결과에서 이는 수혜 이전부터 있었던 두 집단 사이의 트렌드 차이로 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영업손익률 자산총계에서는 두 모형 추정 결과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음
  
- 따라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시기에 본 조세특례의 이질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표 V-24> 개인사업자 시기별 패널고정효과 및 Stacked DID 모형 추정 결과

연도	종속변수		
	수입금액	영업손익률	자산총계
<b>패널A: 패널고정효과</b>			
≤ 2019년	0.0541*** (0.0192)	-0.0042 (0.0045)	0.1669 (0.1304)
N	24,403	13,163	13,114
> 2019년	0.0067 (0.0216)	-0.0312 (0.0218)	0.0832 (0.1976)
N	15,844	8,430	8,391
<b>패널B: Stacked DID</b>			
≤ 2019년			
$I_{-1} \cdot$ 중특감면수혜( $D_j$ )	-0.0838*** (0.0320)	-0.0084 (0.0075)	0.1317 (0.1769)
$I_1 \cdot$ 중특감면수혜( $D_j$ )	-0.0324 (0.0406)	0.0096 (0.0103)	-0.1888 (0.2972)
$I_2 \cdot$ 중특감면수혜( $D_j$ )	-0.1418 (0.0795)	0.0079 (0.0184)	0.5606 (0.7320)
N	8,405	2,288	2,247
> 2019년			
$I_{-1} \cdot$ 중특감면수혜( $D_j$ )	-	-	-
$I_1 \cdot$ 중특감면수혜( $D_j$ )	-0.0075 (0.0333)	-0.0020 (0.0119)	0.1287 (0.4382)
$I_2 \cdot$ 중특감면수혜( $D_j$ )	-0.0411 (0.0462)	0.0029 (0.0135)	0.2793 (0.5247)
N	4,562	1,410	1,393

주: 1.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2. 기업 수준으로 군집한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 사용함  
 3. 분석 기간 중 한 번이라도 동 제도 수혜를 받은 기업만 표본으로 사용함  
 4. 분석 기간 중 매 연도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기업만 표본으로 사용함  
 5. 타 제도 수혜 여부, t년도 기타 재무 변수, 기업/산업×시간/지역×시간 고정효과가 통제 변수로 사용됨  
 자료: 저자 작성

### 3. 효과성 분석 및 고용영향평가 결과 요약

- 제V장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기업의 재무성과, 투자 및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와 고용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음
  - 실증분석을 위해 국세청 제공 법인세 신고자료(2016~2023년) 및 소득세 신고자료(2015~2022)를 활용함
  - 법인세 신고자료의 경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자료와 결합하여 각 기업의 근로자 수 및 평균 소득을 이용하여 고용영향평가를 함께 수행함
  
- 본 조세특례의 수혜를 받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기초통계를 분석한 결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에서 두 그룹 간 이질성이 발견됨
  - 법인사업자의 경우 분석 기간인 2016년부터 2023년 사이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본 조세특례 평균 수혜 횟수는 약 4.3회였으며, 본 조세특례의 수혜를 받은 경우 수입금액, 산출세액, 영업손익 등이 더 높게 나타남
  - 다만 최근 3년(2020~2022년) 산출세액이 발생한 기업들로 표본을 한정하였을 때, 비수혜기업이 수혜기업보다 평균적으로 재무성과나 투자, 고용 등이 더 높은 경향이 있음
  - 개인사업자의 경우 분석 기간 동안 본 조세특례 평균 수혜 횟수는 약 1.1이며, 수혜를 받는 경우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수입금액, 산출세액, 영업손익 등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비수혜 시 자산총계가 2.5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남
  - 최근 3년(2020~2022년) 산출세액이 0 초과인 기업으로 한정해서 보았을 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수혜기업이 평균적으로 수입금액, 산출세액 등에서 더 큰 경향성을 보임
  -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에서 본 조세특례의 효과나 이를 활용하려는 기업의 특성이 이질적인 것으로 판단됨
  
- 이상의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표본을 2원 패널고정효과 및 누적 이중차분법(Staged DID) 모형에 적용하여 본 조세특례 제도 수혜의 효과를 추정함
  - 하지만 본 실증분석에서는 주요 설명변수인 해당 조세특례제도의 수혜 여부가

외생적(exogenous)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내생성(endogeneity) 문제로 인한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특히 본 조세특례제도는 산출세액이 0보다 큰 기업들만 수혜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사이에 구조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조세특례를 활용하려는 기업 또한 비수혜기업과 다른 행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출세액이 0 초과이며 분석 기간 동안 본 조세특례제도의 수혜를 1회 이상 받은 기업으로 표본을 한정하고 기업별 수혜 시기의 차이를 활용하여 제도의 효과를 식별함으로써 위 내생성 문제를 완화함
- 2원 패널고정효과의 경우, 기업, 산업×연도, 지역×연도 고정효과를 통제하여 기업, 산업, 지역 내 이질성을 통제함
- 추가적으로 수혜 시기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패널고정효과 모형 추정 시 수혜를 이미 받은 기업을 비교군으로 사용하는 ‘금지된 비교(forbidden comparison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Stacked DID 모형을 활용하고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간의 사전 공통 추세를 검증함

□ (법인사업자) 본 제도는 중소기업의 재무성과, 투자 및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고용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수입금액, 영업손익률과 같은 재무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자산총계, 연구개발비, 노동생산성과 같은 투자 및 생산성 지표의 증가로도 이어지지 않았음

○ 근로자 수 및 평균 임금과 같은 고용 관련 지표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음

○ 산업별, 지역별, 기업 규모별, 시기별 이질성 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였으며, 코로나19 시기 이전과 같은 일부 세부 표본에서 평균 임금과 같은 항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가 나타나며 이질성을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세부 표본 및 항목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일관적으로 나타나진 않음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도 수입금액, 영업손익률, 자산총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효과가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음

- 일부 패널고정효과 추정 결과에서 수입금액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가 나타나지만, 이는 Stacked DID 추정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결과는 아니며 대부분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사전 추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산업별, 지역별, 시기별 이질성 분석을 추가로 수행한 결과, 본 조세특례 수혜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세부 표본에서 역시 나타나지 않음
- 다만 본 실증분석에서는 앞서 언급한 내생성 문제가 완전히 통제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함
- 본 연구에서는 해당 조세특례제도의 수혜를 받은 기업들의 수혜 시기 차이를 이용하여 효과를 식별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혜 시기의 차이 역시 기업의 관측되지 않는 생산성과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
  - 또한 표본을 산출세액이 0 초과이고 해당 조세특례제도를 1회 이상 수혜 받은 기업으로 한정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배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실증분석을 통해 해당 제도가 기업의 재무성과, 투자 및 생산성, 고용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그 효과의 정확한 효과를 정밀하게 추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VI. 형평성 분석





## VI. 형평성 분석

- 본 장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가 조세의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특히 수평적 형평성에 집중하여 평가
  - 본 제도는 기본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제도이며, 기업은 개인과 달리 그 자체로 소득재분배의 정책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직적 형평성이 아닌 수평적 형평성을 중심으로 검토
  -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은 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납세자가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 구체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제도의 형평성 효과를 평가
  - 먼저 제도 적용에 따른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실효세율을 수입금액, 업종, 지역 등에 따라 그룹화하여 비교
  - 다음으로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활용하여 제도 적용에 따른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을 직접적으로 평가
  
- 분석 자료는 제V장 효과성 분석 및 고용영향평가에서와 같이 국세청 미시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현재와 유사한 제도하에서 제도의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해 표본을 최근 3년으로 한정
  -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각각에 대해 별도의 분석을 수행

### 1. 실효세율 변화

#### 가. 분석 개요

- 본 소절에서는 김학수 외(2020)을 참고하여, 사업자 유형별 수혜기업 및 비수혜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동 제도 수혜 여부에 따른 수평적 조세 형평성을 평가

- 1) 수입금액 구간별, 2) 업종별, 3) 수입금액 규모 및 지역별 분석을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해 각각 수행
- 이를 위해 수혜기업의 본 제도 수혜 전후 실효세율, 비수혜기업의 실효세율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
  - 수혜기업 수혜 전 실효세율:  $\frac{\text{산출세액}}{\text{과세표준}}$
  - 수혜기업 수혜 후 실효세율:  $\frac{(\text{산출세액}-\text{중특감면감면액})}{\text{과세표준}}$
  - 비수혜기업 실효세율:  $\frac{\text{산출세액}}{\text{과세표준}}$
  - 본 분석에서는 과세표준 기준 실효세율 지표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과세표준이 0보다 큰 기업으로 분석 표본을 한정

#### 나. 분석 결과

- (수입금액 규모별: 법인) 먼저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입금액 규모별 실효세율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제도 적용으로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실효세율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모든 수입금액 구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남
  - 제도 적용 전 기준으로 수혜기업의 실효세율은 11.3%, 비수혜기업의 실효세율은 11.5%로 큰 차이가 없으나 제도 적용으로 수혜기업의 실효세율이 9.4%로 하락하면서 두 그룹 사이의 실효세율 격차가 크게 확대
  - 특히 이러한 현상은 전체 수입금액 구간에서 예외 없이 나타남
    -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가장 작은 0~10억원 구간에서 감면 전 기준 실효세율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감면 후 기준으로는 수혜 법인이 비수혜 법인에 비해 1.8%p 낮은 실효세율을 보임
    - 또한 수입금액이 가장 큰 1,000억원 초과 구간에서도 수혜 전 기준 0.02%p였던 격차가 0.2%p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VI-1> 중특감면 수혜 법인 및 비수혜 법인 실효세율(수입금액 규모별)

수입금액 구간	수혜 법인 실효세율			비수혜 법인 실효세율 (C)	실효세율 차이	
	감면 전 (A)	감면 후 (B)	인하 폭 (A-B)		감면 전 (C-A)	감면 후 (C-B)
~10억	0.1014	0.0831	0.0183	0.1014	0.0000	0.0183
10~20억	0.1057	0.0873	0.0184	0.1042	-0.0015	0.0169
20~50억	0.1159	0.0967	0.0192	0.1113	-0.0045	0.0147
50~100억	0.1369	0.1138	0.0230	0.1267	-0.0101	0.0129
100~200억	0.1565	0.1380	0.0185	0.1507	-0.0058	0.0127
200~300억	0.1723	0.1555	0.0168	0.1643	-0.0080	0.0088
300~500억	0.1796	0.1630	0.0166	0.1730	-0.0067	0.0100
500~1,000억	0.1860	0.1723	0.0137	0.1861	0.0001	0.0138
1,000억~	0.1916	0.1785	0.0131	0.1926	0.0011	0.0141
전 구간 평균 (단순 평균)	0.1134	0.0943	0.0190	0.1154	-0.0020	-0.0211

주: 전 구간 평균은 전체 표본의 개별 실효세율 값의 단순 평균으로 계산  
 자료: 저자 작성

- (수입금액 규모별: 개인) 다음으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입금액 규모별 실효세율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제도 적용으로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실효세율 격차 절댓값은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입금액 구간으로 구분해 보면 대부분 구간에서 실효세율 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제도 적용 전 기준으로 수혜기업의 실효세율은 10.5%, 비수혜기업의 실효세율은 9.5%였으나 제도 적용으로 수혜기업의 실효세율이 8.9%로 하락하면서 두 그룹 사이의 실효세율 격차는 -1.0%p에서 0.6%p로 절댓값이 감소
  - 다만 수입금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1,000만~2,000만원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실효세율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확인 가능
    - 1,000만~2,000만원 구간에서 감면 전 실효세율 차이는 -0.7%였으나, 감면 후에는 -0.01%로 격차가 축소
    - 반면 다른 모든 구간에서는 실효세율 격차가 더 작은 양(+)의 값에서 더 큰 양(+)의 값으로 격차가 확대

-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본 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실효세율 격차를 대체로 확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1,000만~2,000만원 구간은 유일하게 비수혜자 개인이 수혜자 개인에 비해 실효세율이 낮아 감면 전 실효세율 격차(C-A)와 감면 후 실효세율 격차(C-B)가 모두 음(-)의 값을 취함
  - 이러한 이유로 단순 평균만을 고려하면 본 제도가 수혜자-비수혜자 사이의 실효세율 격차를 축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하지만 구간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1,000만~2,000만원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본 제도가 이미 상대적으로 낮은 실효세율을 보이고 있던 수혜 개인의 실효세율을 더욱 낮추는 것을 확인 가능

<표 VI-2> 중특감면 수혜 개인 및 비수혜 개인 실효세율(수입금액 규모별)

수입금액 구간	수혜 개인 실효세율			비수혜 개인 실효세율 (C)	실효세율 차이	
	감면 전 (A)	감면 후 (B)	인하 효과 (B-A)		감면 전 (C-A)	감면 후 (C-B)
~1,000만	0.0777	0.0693	0.0084	0.0797	0.0020	0.0104
1,000~2,000만	0.0823	0.0751	0.0072	0.0750	-0.0073	-0.0001
2,000~5,000만	0.0711	0.0595	0.0116	0.0832	0.0121	0.0237
5,000만~1억	0.0674	0.0544	0.0130	0.0947	0.0273	0.0402
1~2억	0.0798	0.0658	0.0140	0.1076	0.0278	0.0418
2~3억	0.0990	0.0843	0.0147	0.1287	0.0297	0.0444
3~5억	0.1157	0.0991	0.0166	0.1612	0.0456	0.0621
5~10억	0.1492	0.1277	0.0214	0.2037	0.0545	0.0760
10억~	0.2182	0.1875	0.0306	0.3036	0.0854	0.1161
전 구간 평균 (단순 평균)	0.1054	0.0889	0.0164	0.0950	-0.0104	0.0060

주: 전 구간 평균은 전체 표본의 개별 실효세율 값의 단순 평균으로 계산  
 자료: 저자 작성

- (업종별: 법인)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업종별 실효세율 변화를 살펴보면, 제도 적용으로 거의 모든 업종에서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실효세율 격차가 크게 확대된 것을 확인 가능
  - 예외적으로 광업은 감면 전 및 감면 후의 실효세율 차이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변경되면서 절대적 격차는 감소

○ 그 외 모든 업종에서는 제도 적용으로 실효세율 격차가 더욱 확대

<표 VI-3> 중특감면 수혜 법인 및 비수혜 법인 실효세율(업종별)

업종	수혜 법인 실효세율			비수혜 법인 실효세율 (C)	실효세율 차이	
	감면 전 (A)	감면 후 (B)	인하 효과 (B-A)		감면 전 (C-A)	감면 후 (C-B)
농업·임업·어업	0.1111	0.0880	0.0232	0.1045	-0.0066	0.0166
광업	0.1439	0.1155	0.0284	0.1275	-0.0164	0.0120
제조업	0.1190	0.0961	0.0229	0.1186	-0.0004	0.0225
전기·가스·증기 공급업	0.1053	0.0787	0.0266	0.1036	-0.0018	0.0248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업	0.1202	0.0972	0.0229	0.1124	-0.0077	0.0152
건설업	0.1106	0.0877	0.0230	0.1102	-0.0004	0.0226
도소매업	0.1096	0.0997	0.0099	0.1168	0.0072	0.0170
운수·창고업	0.1107	0.0879	0.0228	0.1112	0.0006	0.0233
숙박·음식점업	0.1094	0.0944	0.0151	0.1133	0.0039	0.0190
정보통신업	0.1175	0.0983	0.0192	0.1153	-0.0022	0.0169
금융·보험업	0.1000	0.0817	0.0183	0.1140	0.0140	0.0323
부동산업	0.1212	0.1009	0.0203	0.1249	0.0038	0.0240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0.1141	0.0930	0.0211	0.1163	0.0021	0.0232
사업지원 서비스업	0.1059	0.0862	0.0196	0.1071	0.0013	0.0209
교육 서비스업	0.1097	0.0915	0.0182	0.1109	0.0012	0.0193
보건·사회복지업	0.1340	0.1258	0.0082	0.1363	0.0023	0.0105
예술·스포츠·여가업	0.1237	0.1032	0.0206	0.1179	-0.0059	0.0147
기타 개인 서비스업	0.1081	0.0900	0.0180	0.1107	0.0026	0.0206
전 업종 평균 (단순 평균)	0.1134	0.0943	0.0190	0.1154	-0.0020	-0.0211

주: 전 구간 평균은 전체 표본의 개별 실효세율 값의 단순 평균으로 계산  
자료: 저자 작성

□ (업종별: 개인)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실효세율 변화를 살펴보면, 제도 적용으로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실효세율 격차가 확대된 업종과 축소된 업종이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운수·창고업, 건설업 등의 경우 격차가 확대되었으며, 제조업, 도소매업 등은 격차가 축소

<표 VI-4> 중특감면 수혜 개인 및 비수혜 개인 실효세율(업종별)

업종	수혜 개인 실효세율			비수혜 개인 실효세율 (C)	실효세율 차이	
	감면 전 (A)	감면 후 (B)	인하 효과 (B-A)		감면 전 (C-A)	감면 후 (C-B)
농업·임업·어업	0.1262	0.0992	0.0270	0.0956	-0.0306	-0.0036
광업	0.1615	0.1191	0.0425	0.0668	-0.0947	-0.0522
제조업	0.1308	0.1040	0.0267	0.0860	-0.0448	-0.0181
전기·가스·증기 공급업	0.0939	0.0784	0.0156	0.0846	-0.0093	0.0062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업	0.1793	0.1407	0.0387	0.1183	-0.0610	-0.0223
건설업	0.0854	0.0672	0.0182	0.0922	0.0069	0.0250
도소매업	0.1102	0.1009	0.0093	0.0735	-0.0367	-0.0274
운수·창고업	0.0735	0.0564	0.0172	0.0642	-0.0093	0.0078
숙박·음식점업	0.1007	0.0919	0.0088	0.0819	-0.0189	-0.0101
정보통신업	0.1360	0.1121	0.0239	0.0909	-0.0452	-0.0213
금융·보험업	0.1166	0.1134	0.0032	0.0870	-0.0296	-0.0263
부동산업	0.1440	0.1327	0.0113	0.1014	-0.0426	-0.0313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0.1303	0.1069	0.0233	0.1329	0.0026	0.0260
사업지원 서비스업	0.0936	0.0752	0.0184	0.0892	-0.0044	0.0140
교육 서비스업	0.1825	0.1521	0.0304	0.0808	-0.1016	-0.0712
보건·사회복지업	0.2319	0.2209	0.0110	0.2484	0.0165	0.0275
예술·스포츠·여가업	0.0836	0.0727	0.0109	0.0871	0.0035	0.0144
기타 개인 서비스업	0.1285	0.1056	0.0229	0.0753	-0.0531	-0.0303
전 업종 평균 (단순 평균)	0.1054	0.0889	0.0164	0.0950	-0.0104	0.0060

주: 전 구간 평균은 전체 표본의 개별 실효세율 값의 단순 평균으로 계산  
 자료: 저자 작성

□ (수입금액 규모 및 지역별: 법인) 법인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 및 지역별 실효세율 변화에 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비수도권) 비수도권에서는 수입금액이 적은 구간 및 가장 큰 구간(1,000억원 초과)에서는 실효세율 격차가 확대되었으며, 중간 구간에서는 실효세율 격차의 절댓값이 축소
- 즉 수입금액이 적거나 매우 큰 구간에서는 제도 감면 이후 수혜법인의 실효세율이 비수혜법인 실효세율을 큰 폭으로 하회

- 반면 중간 구간에서는 비수혜법인의 실효세율 감면 전에는 수혜법인의 실효세율에 비해 낮았으나, 감면 후에는 높아지면서 실효세율 격차의 절댓값은 감소
  - (수도권) 수도권에서는 수입금액이 낮은 구간에서는 실효세율 격차가 확대되었으며, 높은 구간에서는 실효세율 격차의 절댓값이 축소
    - 수입금액 100억~200억원 구간까지는 격차가 확대
    - 수입금액 200억~300억원 구간부터는 비수혜법인의 실효세율이 감면 전에는 수혜법인 실효세율에 비해 낮았으나, 감면 후에는 높아지면서 실효세율 격차의 절댓값이 감소
- (수입금액 규모 및 지역별: 개인)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 및 지역별 실효세율 변화에 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비수도권) 비수도권에서는 앞서 지역에 대한 구분 없이 수입금액 구간별로만 분석을 수행한 결과와 유사하게 1,000만~2,000만원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실효세율 격차가 확대
    - 즉 본 제도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수혜기업-비수혜기업 사이 실효세율 격차는 대체로 확대된 것으로 해석 가능
  - (수도권) 수도권에서는 수입금액이 가장 낮은 두 개 구간을 제외하면 실효세율 격차가 확대
    - 수입금액 0~1,000만원 및 1,000만~2,000만원 구간에서는 실효세율 격차의 절댓값이 축소
    - 나머지 모든 구간에서는 실효세율 격차가 확대
- 결론적으로 본 제도에 의해 수혜기업의 실효세율이 비수혜기업의 실효세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아지면서 두 그룹 사이의 수평적 형평성이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법인에서 더욱 뚜렷하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대체로 성립

<표 VI-5> 중특감면 수혜 법인 및 비수혜 법인 실효세율(수입금액 규모 및 지역별)

지역 및 수입금액 구간	수혜 법인 실효세율			비수혜 법인 실효세율 (C)	실효세율 차이		
	감면 전 (A)	감면 후 (B)	인하 효과 (B-A)		감면 전 (C-A)	감면 후 (C-B)	
비 수 도 권	~10억원	0.1012	0.0797	0.0214	0.1010	-0.0001	0.0213
	10~20억원	0.1055	0.0833	0.0222	0.1036	-0.0019	0.0203
	20~50억원	0.1159	0.0927	0.0231	0.1101	-0.0058	0.0174
	50~100억원	0.1355	0.1118	0.0237	0.1220	-0.0135	0.0102
	100~200억원	0.1552	0.1373	0.0179	0.1416	-0.0136	0.0043
	200~300억원	0.1719	0.1551	0.0168	0.1604	-0.0115	0.0053
	300~500억원	0.1792	0.1625	0.0167	0.1689	-0.0104	0.0063
	500~1,000억원	0.1855	0.1715	0.0139	0.1848	-0.0007	0.0133
	1,000억원~	0.1916	0.1785	0.0131	0.1922	0.0006	0.0137
	전 구간 평균 <sup>1)</sup> (단순 평균)	0.1155	0.0936	0.0219	0.1108	-0.0047	0.0172
수 도 권 <sup>2)</sup>	~10억원	0.1017	0.0866	0.0151	0.1019	0.0002	0.0153
	10~20억원	0.1059	0.0904	0.0155	0.1047	-0.0012	0.0143
	20~50억원	0.1159	0.0996	0.0163	0.1123	-0.0035	0.0127
	50~100억원	0.1388	0.1167	0.0221	0.1282	-0.0106	0.0115
	100~200억원	0.1639	0.1419	0.0220	0.1536	-0.0103	0.0117
	200~300억원	0.1782	0.1616	0.0166	0.1673	-0.0109	0.0057
	300~500억원	0.1873	0.1728	0.0145	0.1779	-0.0094	0.0051
	500~1,000억원	0.1971	0.1882	0.0088	0.1904	-0.0066	0.0022
	1,000억원~	-	-	-	0.1975	-	-
	전 구간 평균 <sup>1)</sup> (단순 평균)	0.1113	0.0951	0.0162	0.1188	0.0075	0.0238

주: 1) 전 구간 평균은 전체 표본의 개별 실효세율 값의 단순 평균으로 계산

2) 수도권 수입금액 1,000억원 초과 법인 중 본 제도 수혜기업이 없어 해당 부분은 공란 처리  
자료: 저자 작성

<표 VI-6> 중특감면 수혜 개인 및 비수혜 개인 실효세율(수입금액 규모 및 지역별)

지역 및 수입금액 구간	수혜 개인 실효세율			비수혜 개인 실효세율 (C)	실효세율 차이		
	감면 전 (A)	감면 후 (B)	인하 효과 (B-A)		감면 전 (C-A)	감면 후 (C-B)	
비 수 도 권	~1,000만원	0.0748	0.0657	0.0091	0.0788	0.0040	0.0131
	1,000~2,000만원	0.0800	0.0720	0.0080	0.0728	-0.0072	0.0008
	2,000~5,000만원	0.0718	0.0586	0.0131	0.0799	0.0082	0.0213
	5,000만~1억원	0.0674	0.0526	0.0149	0.0868	0.0193	0.0342
	1~2억원	0.0786	0.0629	0.0157	0.0929	0.0143	0.0300
	2~3억원	0.0973	0.0813	0.0160	0.1144	0.0171	0.0331
	3~5억원	0.1119	0.0938	0.0181	0.1557	0.0438	0.0619
	5~10억원	0.1486	0.1239	0.0247	0.1993	0.0508	0.0754
	10억원~	0.2185	0.1864	0.0321	0.2664	0.0478	0.0799
	전 구간 평균	0.1030	0.0850	0.0181	0.0890	-0.0140	0.0040
수 도 권	~1,000만원	0.0853	0.0788	0.0065	0.0805	-0.0048	0.0017
	1,000~2,000만원	0.0868	0.0813	0.0056	0.0765	-0.0103	-0.0047
	2,000~5,000만원	0.0700	0.0611	0.0089	0.0851	0.0151	0.0241
	5,000만~1억원	0.0674	0.0569	0.0104	0.0993	0.0319	0.0424
	1~2억원	0.0815	0.0698	0.0117	0.1173	0.0358	0.0476
	2~3억원	0.1007	0.0874	0.0133	0.1389	0.0381	0.0515
	3~5억원	0.1194	0.1042	0.0152	0.1652	0.0458	0.0610
	5~10억원	0.1497	0.1314	0.0183	0.2066	0.0569	0.0752
	10억원~	0.2177	0.1891	0.0286	0.3218	0.1041	0.1327
	전 구간 평균	0.1083	0.0938	0.0144	0.0989	-0.0094	0.0051

주: 전 구간 평균은 전체 표본의 개별 실효세율 값의 단순 평균으로 계산  
 자료: 저자 작성

## 2. 실효세율 변동계수 변화

### 가. 분석 개요

- 다음으로 본 제도가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효세율 변동계수(CV)를 활용하여 평가
  - 변동계수는 평균 대비 분포가 얼마나 옆으로 퍼져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
    - $CV = \frac{\sigma}{\mu}$ ,  $\sigma =$  표준편차,  $\mu =$  평균
  - 변동계수는 상대적 분산의 정도를 정규화해 비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표의 직관성도 높음
  - 본 연구에서는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제도 적용 전후 실효세율의 변동계수를 비교하여 제도의 수평적 형평성 효과를 평가
    - 즉 동일한 수입금액 구간에 속한 기업들은 유사한 수준의 납세 능력이 있다는 암묵적 가정을 토대로 제도 적용 전후의 수평적 형평성을 비교
  - 실효세율의 변동계수가 클수록 실효세율이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수평적 형평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

### 나. 분석 결과

- (변동계수 변화: 법인) 제도 적용 전후의 법인사업자 실효세율의 변동계수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수입금액 구간에 대해 변동계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제도로 인해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점을 시사
  - 모든 수입금액 구간에 대해 제도 적용 전 실효세율 변동계수에 비해 제도 적용 후 실효세율 변동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즉 본 제도가 수입금액으로 측정한 납세 능력이 유사한 법인 사이의 세부담 격차를 확대함으로써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 가능

□ (변동계수 변화: 개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역시, 제도 적용 이후 모든 수입금액 구간에 대해 변동계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개인사업자 역시 본 제도로 인해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사실을 확인 가능

<표 VI-7> 중특감면 제도 적용 전후 법인 실효세율의 변동계수

수입금액 구간	제도 적용 전	제도 적용 후
~10억원	0.0801	0.1454
10~20억원	0.1450	0.1712
20~50억원	0.2170	0.2239
50~100억원	0.2421	0.2501
100~200억원	0.2086	0.2167
200~300억원	0.1621	0.1688
300~500억원	0.1376	0.1468
500~1,000억원	0.1120	0.1248
1,000억원~	0.0859	0.1006
전 구간 평균 (단순 평균)	0.2311	0.2650

자료: 저자 작성

<표 VI-8> 중특감면 제도 적용 전후 개인 실효세율의 변동계수

수입금액 구간	제도 적용 전	제도 적용 후
~1,000만원	0.5626	0.5641
1,000~2,000만원	0.5818	0.5829
2,000~5,000만원	0.4919	0.5030
5,000만~1억원	0.5362	0.5806
1~2억원	0.5810	0.6361
2~3억원	0.5969	0.6464
3~5억원	0.4825	0.5289
5~10억원	0.4531	0.4966
10억원~	1.3560	1.5014
전 구간 평균 (단순 평균)	0.8493	0.8709

자료: 저자 작성

### 3. 형평성 분석 결과 요약

- 본 장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가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의 분석을 수행
  - 제도 적용에 따른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실효세율 차이 변화를 수입금액, 업종, 지역 등을 기준으로 분석
  - 변동계수를 활용하여 제도 적용에 따른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을 직접적으로 평가
  
- 분석 결과 본 제도가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효세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본 제도가 수혜기업의 실효세율을 과도하게 낮춤으로써 비수혜기업과의 실효세율 격차를 확대하는 것을 확인
    - 특히 이러한 결과는 법인사업자에서 명확하게 나타남
    - 개인사업자 역시 대체로 실효세율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을 확인
  - 변동계수 분석을 통해 본 제도의 적용 후 수평적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에서 매우 뚜렷하게 관측

## Ⅶ. 결론 및 제도 개선 방안





## VII. 결론 및 제도 개선 방안

### 1. 종합 평가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에 대한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제도 현황) 본 제도는 중소기업이 가장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조세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조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
  - (해외 사례) 해외 주요국에서는 본 제도와 같이 중소기업의 업종 등에 근거한 조세지원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며, 일부 국가에서 소기업에 대해 경감세율을 적용
    - 다만 소기업 경감세율은 대체로 매우 제한적인 범위로 적용
  - (타당성 분석)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나 본 제도의 지원 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본 제도와 중복 적용을 허용하는 조세지원제도를 설정할 때 신중한 접근이 요구
    - (정부 개입 근거) 중소기업은 시장실패에 더 취약할 수 있으며,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실질 납세협력비용이 대체로 큰 경향이 있으므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 (지원 방식) 하지만 본 제도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생산하는 기업 행태와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금융시장의 불완전 정보, 납세협력비용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타 정책 지원 수단이 더 적절할 수 있음
    - (지원 대상기업) 특히 정부의 정책적 개입 근거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유사·중복성) 본 제도와 성격이 유사한 조세지출 및 예산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본 제도에 대한 기업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떤 제도와 중복 적용을 허용할 것인가가 정책적으로 중요할 수 있음
    - 본 제도와 중복수혜를 허용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는 한편, 중복수혜를 허용하지 않으면 긍정적 기업 행태와 연계

된 제도들의 효과성이 저해되는 측면

- (효과성 분석 및 고용영향평가) 본 제도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제도의 긍정적 영향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음
  - (법인사업자) 본 제도는 법인사업자의 재무성과(수입금액, 영업손익률), 투자(자산총계, 연구개발비), 노동생산성 및 고용(근로자 수, 평균 임금)의 제고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 지역, 기업 규모, 시기 등을 기준으로 이질성 분석을 추가로 수행한 결과에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는 발견되지 않음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음
    - 산업, 지역, 시기에 따른 이질성 분석을 추가로 수행한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음
  - (해석상 유의점) 다만 본 실증분석에서는 내생성 문제가 완전히 통제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
- (형평성 분석) 마지막으로 본 제도는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효세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본 제도가 수혜기업의 실효세율을 과도하게 낮춤으로써 비수혜기업과의 실효세율 격차를 확대하는 것을 확인
  - 실효세율 변동계수를 제도 적용 전후로 비교한 결과, 본 제도의 적용 후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이 저해되는 결과가 도출

□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제도의 일몰 연장 필요성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타당성, 효과성, 형평성 분석에서의 평가 결과가 긍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해외 주요국에서도 유사한 사례는 파악되지 않음

□ 다만 본 제도는 현 시점 중소기업이 가장 활발히 활용하는 조세지원 제도로서 이들 기업의 조세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있다는 점은 고려될 필요

- 기타 조세지원 확대와 연계하지 않고 본 제도 단독으로 폐지를 결정하면, 상당수 중소기업의 실질 조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

## 2. 향후 제도 개선 및 운영 방안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
  - 단기적으로는 본 제도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되 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것을 검토
    - 평가 결과는 대체로 부정적이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타 보완 조치 없이 본 제도의 적용 기한을 단독으로 종료할 경우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에 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기업 행태와 본 제도의 혜택을 연계하거나 정책 대상자를 소기업으로 한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
    - 본 제도 개편 시 중소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이므로 제도의 근본적 개편 또는 폐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특히 본 제도의 성격을 고려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 기타 조세지원 및 법인세 세율 체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할 수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개별 제도 단위에서 평가를 수행하는 현행 조세특례 심층평가 체계 내에서 본 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종합적인 평가를 위한 별도의 추진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가. 단기적 개선 방안

- (단기적 개편안) 본 제도의 감면 한도 설정 방식, 추가 감면 적용 대상 등의 조정을 검토
  - 고용인원과 본 제도의 한도를 연계하는 현행 방식은 실효성이 낮고 제도의 복잡성을 가중하므로 단일 감면한도 적용을 고려
    - 현행 감면한도는 1억원을 기본으로 하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감소인원 1인당 500만원을 감면한도에서 차감
  - 또한 10년 이상 동일 업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감면 적용 폐지를 검토
    - 해당 조항은 특정 업종을 영위하면서 중소기업 지위를 오래 유지한 기업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성장 및 자유로운 업종 전환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

## 나. 중장기적 개선 방안

- (중장기적 개편안 1) 중소기업의 R&D, 투자, 고용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본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기타 조세지원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제도를 개편
  - (개편안 예시 1) 본 제도를 ‘기본 감면 + 추가 감면 체계’로 개편하고 추가 감면은 R&D, 투자, 고용 실적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
    - 본 제도의 기존 감면율을 축소하되 직전 3년 대비 R&D, 투자, 고용 등 실적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감면율 적용
  - (개편안 예시 2) 또는 기존 수혜기업이 본 제도 대신 투자, 고용 관련 조세지원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제도에서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 이를 위해 우선 정부의 지원 필요성이 명확한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만 본 제도와 중복 적용을 허용하고, 현재 중복이 허용되고 있는 고용 관련 지원의 중복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
    - 즉 고용에 대해서는 투자 관련 지원과 마찬가지로 본 제도와 중복 적용을 배제하되, 본 제도 대신 투자, 고용 등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추가 혜택을 부여하여 관성적으로 본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의 행태 변화를 유도
    - 다만 이를 위해서는 본 제도뿐 아니라 투자 및 고용 관련 제도의 개편도 필요
  
- (중장기적 개편안 2) 특정 기업 행태와 연계되지 않은 조세 혜택이 소기업에 한정되도록 조세지원 체계를 개편
  - 중소기업 중 중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미약하며, 해외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범위가 넓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
    - 정부의 지원 근거인 시장실패와 납세협력 부담은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더 명확하므로 중기업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조세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
      -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중기업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조세지원보다는 R&D, 투자, 고용 등과 연계된 조세지원 제도를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적절
  - 소기업에 대해서는 1) 본 제도를 유지하거나 2) 본 제도를 전면 폐지하되 법인세 경감세율을 적용하여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 가능

- 본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은 조세지출 규모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며,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은 세수입 손실은 클 수 있으나 제도의 단순성 및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

## 참고문헌

- 국세청, 『개정세법해설』, 각 연도.  
\_\_\_\_\_,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_\_\_\_\_, 「2024 중소기업 세제·세정지원제도」, 2024. 2.
-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방송스크랩』, 각 연도.
- 김빛마로·조희평·윤성만,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이상엽·김빛마로, 『소규모 법인의 효율적인 세원관리 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이상엽·김빛마로·홍우형·윤성만,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 일본 경제산업성 산업기술환경국, 「研究開発税制の概要と令和5年度税制改正について」, 2023.
- 유호림·양동·최준혁, 「중국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세제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권 제2호, 2019, pp. 73~104.
- 중소기업중앙회, 「2024년 해외 주요국 중소기업 통계」, 2024. 12.
-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2024. 8.
- \_\_\_\_\_,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시행공고(1차)」, 2020. 9. 23.
- \_\_\_\_\_,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공고(1차)」, 2021. 1. 6.
- \_\_\_\_\_,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공고(1차)」, 2021. 3. 29.
- \_\_\_\_\_,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1차)」, 2021. 8. 13.
- \_\_\_\_\_,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1차)」, 2021. 12. 23.
- \_\_\_\_\_,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시행공고」, 2022. 2. 22.

- \_\_\_\_\_,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 2022. 5. 30
- 중국 재정부, 「關於印發中小企業划型標準規定的通知(工信部聯企業 [2011] 300号)」, 2011.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2024.
- Bergner, Sören and Bräutigam, “ainer and Evers, Maria and Spengel, Christoph, The Use of SME Tax Incentives in the European Union,” *ZEW-Centre for European Economic Research Discussion*, 2017, Paper No. 17-006.
- Birch, D., “Who Creates Jobs?,” *The Public Interest*, 65, 1981, pp. 3~14.
- Birch, David G.W., “Job Creation in America: How Our Smallest Companies Put the Most People to Work,” 1987)
- Branstetter, L. G., Li, G., Ren, M., “Picking winners? Government subsidies and firm productivity in Chin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51(4), 2023, pp. 1186~1199.
- Callaway, B., Sant’Anna, P. H. C., “Differnce-in-differences with multiple time periods,” *Journal of Econometrics*, 225(2), 2021, pp. 220~230.
- Camisón-Zornoza, C., Lapedra-Alcamí, R., Segarra-Ciprés, M., & Boronat-Navarro, M., “A Meta-analysis of Innovation and Organizational Size,” *Organization Studies*, 25(3), 2004, pp. 331~361.
- Cengiz, D., Dube, A., Lindner, A., Zipperer, B., “The effects of minimum wages on low-wage job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4(3), 2019, pp. 1405~1454.
- Cleary et al., “Tax Administration and Firm Performance: New Data and Evidence for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2017. 4.
- de Chaisemartin., C., D’Haultfoeuille, X., “Two-way fixed effects estimators with heterogenous treatment effects,” *American Economic Review*, 110(9), 2020, pp. 2964~2996.
- Era Dabla-Norris, Florian Misch, Duncan Cleary, and Munawer Khwaja, “Tax Administration and Firm Performance: New Data and Evidence for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IMF Working Papr. 2017/95.
- EU, “Commission Recommendation of 6 May 2003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ext with EEA relevance) (notified under document number C(2003) 1422),” OJ L 124, 20.5.2003, pp. 36~41.
- John Haltiwanger, Ron S. Jarmin, Javier Miranda, “Who Creates Jobs? Small versus Large versus Young,”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5(2), 2013, pp. 347~361.

- Goodman-Bacon, A., “Difference-in-differences with variation in treatment timing,” *Journal of Econometrics*, 225(2), 2021, pp. 254~277.
- Hong, Jin & Feng, Bing & Wu, Yanrui & Wang, Liangbing, “Do government grants promote innovation efficiency in China's high-tech industries?,” *Technovation*, Elsevier, vol. 57, 2016, pp. 4~13.
- Laforet, Sylvie, “Size, strategic, and market orientation affects on innovation,”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Elsevier, vol. 61(7), 2008, pp. 753~764.
- Laforet, “Effects of size, market and strategic orientation on innovation in non-high-tech manufacturing SMEs,”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43(1/2), 2009, pp. 188~212.
- Laforet, Sylvie, “Organizational innovation outcomes in SMEs: Effects of age, size, and sector,” *Journal of World Business*, Elsevier, vol. 48(4), 2013, pp 490~502.
- Lignier, Philip and Evans, Chris, “The Rise and Rise of Tax Compliance Costs for the Small Business Sector in Australia (August 9, 2012),” *Australian Tax Forum*, 27(3), 2012, pp. 615~672.
- Lignier, Philip and Evans, Chris and Tran-Nam, Binh, “Tangled Up in Tape: The Continuing Tax Compliance Plight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Business Sector,” *Australian Tax Forum*, 29(2), 2014, pp. 217~247.
- OECD, “Small Businesses, Job Creation and Growth: Facts, Obstacles and Best Practices,” 1997.
- Stock, G.N., Greis, N.P. and Fischer, W.A., “Firm Size and Dynamic Technological Innovation,” *Technovation*, 22, 2002, pp. 537~549.
- Takahashi, K., Hashimoto, Y., “Small grant subsidy application effects on productivity improvement: evidence from Japanese SMEs,” *Small Business Economics*, 60, 2022, pp. 1631~1658.
- Tax foundation, “Reviewing the Federal Tax Treatment of Research & Development Expenses,” 2021.
- Weichenrieder, A.J., “Survey on the tax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draft report on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 OECD Centre for Entrepreneurship, SMEs & Local Development, 2007.
- Wing, C., Freedman, S. M., Hollingsworth, A., “Stacked Difference-in-differences”, NBER Working paper, 32054, 2024..

Woellner, R., Coleman, C., Mckerchar, M., Walpole, M. and Zetler, J., “Taxation or Vexation - Measuring the Psychological Costs of Tax Compliance”, in Evans, C., Pope, J. and Hasseldine, J. (Eds). *Tax Compliance Costs: A Festschrift for Cedric Sandford*. Sydney: Prospect, 2001.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MALL BUSINESS COMPLIANCE GUIDE: A GUIDE TO THE SBA'S SIZE STANDARDS AND AFFILIATION RULES*

Voulgaris, F., Papadogonas, T., & Agiomirgianakis, G. “Job Creation and Job Destruction in Greek Manufacturing,”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9, 2005, pp. 289~30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세청, <https://www.nts.go.kr/>

독일 경제부,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

독일 통계청, <https://www.destatis.de>

미국 국세청 IRS, <https://www.irs.gov/ko>

미국 연방 규정집, <https://www.ecfr.gov>

스페인 정부, <https://administracion.gob.es/>

스페인 중소기업청, <https://ipyme.org>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hojin/5442.htm>

일본 미야타니 정보시스템, <https://keiridriiven.mjs.co.jp>

일본 중소기업청, <https://www.chusho.meti.go.jp/zaimu/zeisei/kenkyukaihatsu/index.html>

영국 정부, <https://www.gov.uk/>

중국 국가통계국, <https://www.stats.gov.cn>

중국 정부, <https://www.gov.cn/>

프랑스 정부, <https://www.legifrance.gouv.fr/>

캐나다 정부, <https://www.canada.ca/>

하나은행, <https://www.kebhana.com/cont/mall/mall15/mall1502/index.jsp>

호주 연방법, <https://www5.austlii.edu.au>

호주 증권 및 투자 위원회, <https://www.asic.gov.au/>

OECD Stat, <https://data-explorer.oecd.org/>

Pwc, <https://taxsummaries.pwc.com/>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TEL:044-215-2114(代), [www.moef.go.kr](http://www.moef.go.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044-414-2114(代), [www.kipf.re.kr](http://www.kipf.re.kr)